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모음집 2016

1 거시금융

차이나리스크가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영현 이해은	3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의미와 시사점	임태준	6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서의 주기연계증권(ELS)	전성주 김미화	10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현황과 영향	전용식	12
일본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평가와 시사점	임태준	14
브렉시트 현실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임준환 전용식	16
초장기 국고채 도입 의미와 시사점	황인창	18
트럼프의 당선과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 방향	이승준	21
경기순환과 해약환급금	임태준 이규성	23

2 보험제도 및 정책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에 따른 고려사항	조재린 이경아	29
「보험다모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박선영 황인창	32
보행자 안전 제고를 위한 일시정지 표지판 관련 제도개선방안	최창희	35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평가와 시사점	정성희 이정택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의의와 기대효과	임 준 이성은	41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	류건식 김동겸	43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IRP 추가 납입에 미친 영향	정원석	45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 보험회사는 과연 이익을 보고 있는가?	정성희	47
민영의료보험 최소손해를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	이태열 정성희	49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	황인창	51
붕괴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최창희	53
스마트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조건	변혜원	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시사점	오승연 김미화	57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의 시사점	조영현	59
울산 지진과 국내 지진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	최창희	61
비전속 채널에 대한 감독규제 개편 필요성	박선영	64

이슈 분석 _Contents

<h2>2</h2> <p>보험제도 및 정책</p>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송운아	6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황현아	6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이 보험금 지급에 미칠 영향	송운아	72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조재린 황인창	75
	대형 법인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실효성 제고방안	변혜원 박선경	78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	정원석	81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임 준	83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	최창희 이규성 한성원	87

<h2>3</h2> <p>고령화</p>	특수지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 허용 검토에 관한 소고	정원석	93
	자녀 없는 부부가구와 의료비지출	이정택	97
	한국의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건강위험요인과 시사점	오승연	99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최근의 논란	정성희	101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	류건식 김동겸	103
	통합연금포털의 현황과 평가	김세중 김유미	105
	표준하체 연금보험 도입 필요성	김석영 이선주	107
	ISA 판매 현황 분석	정원석	109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의 공동행위 관련 쟁점	이승준	111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를 개선을 위한 납부기간 확대 방안	최장훈	113
	국민연금 대납자 소득공제 법안의 시사점	최장훈	115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 허용과 그 영향	정원석	117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	강성호	119
	정부의 최근 저출산 대책 평가	오승연	122
	연금저축 가입 현황과 맞춤형 세제 지원 필요성	정원석	124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평가와 과제	정성희	126

4

보험경영

빅데이터 분석모형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전략	기승도	131
자동차보험 CM상품 판매증가의 영향 및 시사점	기승도	134
1인 가구 대상 보험상품 제공 방안	김세중 김유미	138
최근 국내 재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	김석영	142
종신보험가입자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전략	기승도	144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보험산업의 미래	김석영 이선주	146
1인 가구 증가가 보험수요 감소를 초래하는가?	임태준 김세중	148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발표와 시사점	박선영	150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증가와 위험관리	전용식 이해은	152
MeLife의 SIFI 지정취소 소송 승소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154
알리안츠 한국법인 매각가격 논란	전용식 조재린	156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보험회사의 진출 기회	전용식 채원영	158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	조영현 이해은	160
저성장기 생명보험 마케팅 전략	기승도	162
금리인하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용운 정인영	164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	이기형 김혜란	166
보험회사의 중금리 대출사업 관련 고려사항	전용식 이해은	168
P2P보험시장 동향과 시사점	김세중 김유미	170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본질적 업무 위탁 필요성	김석영 이승준	172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	송윤아	174
건강보험의 행동적 해이 개념과 적용	오승연	177
비급여 관리 관련 논쟁	정성희	179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최창희 송윤아	182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확대와 그 배경	조영현	186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도입과 과제	김세중	190
중국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평가	정성희	193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 제고 필요	송윤아 최창희	196
인공지능의 보험판매채널 진출 의미	김석영 이선주	19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 방안과 고려사항	정원석	202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재보험 활용방안	김석영 황인창	206

1. 거시금융

- | | |
|---------------------------------|---------|
| 1. 차이나리스크가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조영현 이해은 |
| 2.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의미와 시사점 | 임태준 |
| 3.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서의 주기연계증권(ELS) | 전성주 김미화 |
| 4.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현황과 영향 | 전용식 |
| 5. 일본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평가와 시사점 | 임태준 |
| 6. 브렉시트 현실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임준환 전용식 |
| 7. 초장기 국고채 도입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 8. 트럼프의 당선과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 방향 | 이승준 |
| 9. 경기순환과 해약환급금 | 임태준 이규성 |



차이나리스크가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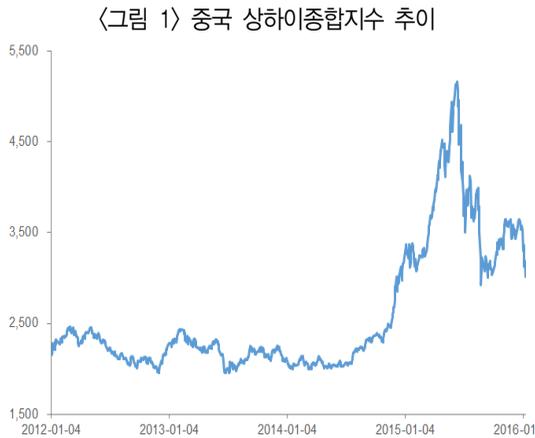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위원

요약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차이나리스크 확산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지난주 중국 당국의 시장개입으로 금융시장이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차이나리스크가 지속 또는 확대되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달러화, 엔화 등 선진국 통화가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 금융시장도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심화로 인한 자본유출로 환율 약세, 주가 하락, 채권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차이나리스크가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간접적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직접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된 이유는 국내 보험회사의 중국 투자 비중이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임. 그러나 위안화 가치하락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 및 채권의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국고채 수익률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차이나리스크 확대에 따른 간접적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차이나리스크 확산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1·2) 참조).

- 차이나리스크는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이 대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함.
- 최근 중국 주가 급락과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중국발 리스크가 발생함.
 - 위안화 가치는 금년 들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5년래에 최저 수준 기록
 - 중국 주식시장은 1월 4일과 7일 두 차례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조기 폐장
- 이에 중국의 자본유출심화와 역외 위안화 환율급등으로 중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됨.
 - 위안화 가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형성으로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과 환투기 심화
-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양상임.
 - 세계 주식시장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연초 대비 6~7%대 주가 급락을 겪고 있음.



자료: 연합뉴스포맥스.



자료: 연합뉴스포맥스.

■ ■ 지난주 중국 당국의 시장개입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진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실물경제 악화로 위안화 절하 압력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최근 투자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위안화 절하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
 - 현재 달러당 약 6.6위안인 환율이 달러당 7.0~7.25위안까지 평가절하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견해도 있음.¹⁾
- 또한 지난해 이후 불확실한 환율정책과 미숙한 주식시장 정책으로 인하여 정책과 실물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약화된 상황임.
- 한편,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외환보유고로 인하여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방어 능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12월 말 중국 외환보유고는 약 3조 3,300억 달러로 아직 큰 규모지만 2015년 한 해 동안 5,126억 달러가 감소
 - 최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외 시장에서 대량의 위안화를 매입하는 등 외환보유고의 감소세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중국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신흥국 자본유출과 선진국 자본유입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달러화, 엔화 등 선진국 통화가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 조선비즈(2016. 1. 12), “앨런 사이나이 ‘중 위안화, 달러당 7.25위안까지 추가 절하될 것’”, <http://biz.chosun.com>.

-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은 다시 원유, 철광석 등 산업생산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국내 금융시장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화로 인해 채권의 신용스프레드가 커지고 자본유출에 의한 환율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위안화 환율 약세로 조선, 철강 등 중국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이들 기업의 채권과 주식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악영향이 자본시장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음.
 -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중국 경제 성장성 둔화 및 위안화 하락이 국내 기업의 수출부진으로 연결되고 채산성이 악화되어 주가와 채권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 차이나리스크가 국내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보험회사의 중국 투자 비중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어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중국 투자를 많이 한 보험회사라 하더라도 중국 투자 비중이 총자산대비 0.3~0.6% 수준에 그쳐 직접적인 악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
- 그러나 차이나리스크 확대에 의한 간접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위안화 가치 하락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보험회사는 기업관련 대출 또는 채권의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도미노 효과에 의해 전체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회사채 시장의 신용스프레드 상승으로 저신용기업 채권에 대한 투자유인이 높아질 수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안전자산 선호로 국채수익률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금리 인상가능성을 토대로 투자전략과 상품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미 정책금리 인상을 계기로 국내 금리도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투자전략이나 상품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임. **kiri**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의미와 시사점

임태준 연구위원

요약

일본중앙은행은 2016년 2월 16일 부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발표함.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실험적 성격의 유동성 확대정책으로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인 양적·질적 통화완화정책으로는 근원인플레이션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일본중앙은행 판단의 결과임.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확대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도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목표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을 받게 될 초과지급준비금의 규모는 10조 엔에서 30조 엔 사이로 그 규모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동안의 공격적인 국채매입의 효과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유동성 확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의 실질적 취지는 엔화의 평가절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외국자본이 일부 이탈하여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엔화 약세는 일본 기업과 수출 품목이 많이 겹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일각에서는 원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진작방편의 하나로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수출부양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직접적 목표가 아닐 뿐 아니라 최근 美 금리인상이 있었던 만큼 선불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최근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¹⁾ 2016년 1월 29일 일본중앙은행(BoJ: Bank of Japan)이 사상 첫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발표함.

- BoJ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BoJ 예치금액 중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 2월 16일부터 -0.1%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함.
- 한편, 양적·질적 통화 완화 정책(QQM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²⁾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1) 전용식·채원영(2016. 1. 18),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 점검과 대응 방안」, 『KiRi Weekly』, 제368호, 보험연구원.

2) 2013년 4월 도입된 QQME 정책은 근원인플레이션을 2%를 조속히 달성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으며, 국채를 비롯한 금융 자산의 대규모 매입이 그 핵심사항임(참조: 임준환·황인창·이혜은(2014. 10),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CEO Report』, 보험연구원).

- BoJ의 장기 국채 매입 목표치는 연간 80조 엔 수준임.

■ 마이너스 금리 적용은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여유자금에 대해 보관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론상 금융기관의 대출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바 있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현재 스위스,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음.
-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규모를 축소하여 대출규모를 증대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는 데 그 일차적 목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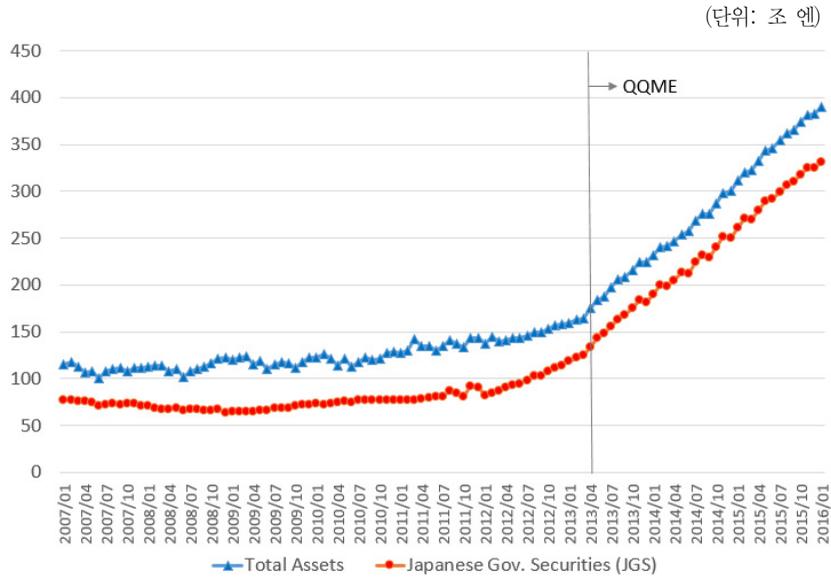
■ 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배경은 2013년 이후 지속되어온 QQME 정책(공격적 국채매입을 통한 유동성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있음.

- 1차 QQME가 처음 도입된 2013년 4월 기준 174.7조 엔을 기록하던 BoJ 총자산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1월 기준 389.6조 엔에 이르렀으며, 동 기간 BoJ 국채 보유 규모도 134.1조 엔에서 331.2조 엔으로 급증하였음(〈그림 1〉 참조).
- 이처럼 적극적인 BoJ의 공개시장조작정책³⁾에 힘입어, QQME 도입 초기에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Core CPI⁴⁾) 상승률이 2013년 4월 -0.4%에서 2014년 4월 1.5%에 도달할 때까지 급증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5년 12월 기준 0.1%까지 추락함(〈그림 2〉 참조).
 - BoJ는 근원인플레이션을 목표치를 2.0%로 설정함.
- 기존 QQME 정책에만 의존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 BoJ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임.

3)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주로 국채 매매)를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나아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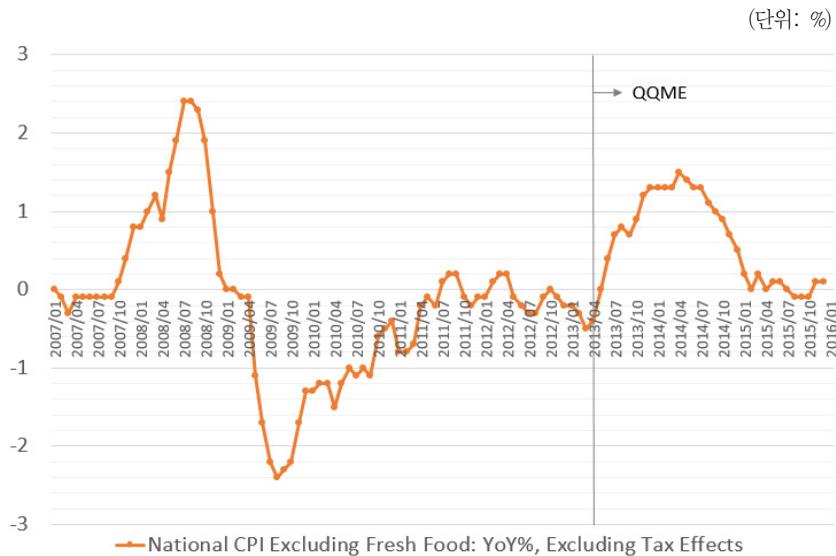
4)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소비하는 전 품목들을 지수에 포함시키는 반면, 근원소비자물가지수(Core CPI)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품이나 에너지 품목 등을 제외시킨 후 계산함. 일본의 경우에는 농산품만을 제외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농산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하여 근원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그림 1〉 BoJ 총자산 및 국채 보유 규모



자료: BoJ, Japan Macro Advisors.

〈그림 2〉 일본 근원인플레이션율: 전년 동월대비



자료: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Japan Macro Advisors.

■ BoJ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유동성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엔화 약세에 따른 단기적 환율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전에도 이미 실질금리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실제로 -0.1%의 금리를 적용받게 될 예치금은 10조 엔에서 30조 엔 사이로 그 규모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⁵⁾
- 또한, 일본 국채의 금융기관 및 개인 보유 비중이 90%를 초과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는 BoJ의 국채 매입 정책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필요 시 금리를 추가 하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BoJ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목표 인플레이션율 달성은 용이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 자본이탈로 인한 엔화 약세 효과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실질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엔화 약세는 수출 증대로 인한 경기부양의 효과를 지님.

■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엔화 약세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달러에 연동하는 대신, 13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 대비 위안화 가치를 안정화시키기로 발표한 바 있음(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위안화 환율지수).
 - 엔화의 통화바스켓 구성비중(14.7%)은 美달러화(26.4%)와 유로화(21.4%)의 뒤를 잇고 있음.
- 따라서 엔화 약세가 위안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미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 수출액은 367억 달러로 이는 작년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수치임.

■ 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발표된 이후, 일각에서는 원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진작 방편의 하나로써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수출부양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직접적 목표가 아닐 뿐 아니라 최근 美 금리인상이 있었던 만큼 선불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kiri](#)

5)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시중은행의 BoJ 예치금 총액의 규모는 250조 엔에 달함.



중위험 · 중수익 투자상품으로서의 주가연계증권(ELS)

전성주 연구위원, 김미화 연구원

요약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주가연계증권이 보험회사에 적합한 투자대상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장기에 걸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만기가 장기이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적합한 투자상품이라 할 수 있음. 대부분의 ELS상품이 3년 이하의 만기를 지니고 있고, 원금비보장형 ELS가 전체 발행액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보험회사의 투자대상으로 완전히 매칭될 수 있는 ELS 상품을 찾기는 어려움. 다만, 장외시장을 통해 보험회사의 특성에 맞게 장기 원금보장형으로 ELS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의 투자대상으로 적합한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임.

■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주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Securities)이 보험회사에 적합한 투자대상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¹⁾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90%, 10년물 금리는 2.18%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
- 현재 보험료 적립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평균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위험 · 중수익을 제공하는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중위험 · 중수익의 금융상품은 은행예금이나 국채투자에 비해 기대위험과 기대수익이 높고 주식투자보다는 기대위험과 기대수익이 낮은 금융상품을 통칭함.²⁾
-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화 상품의 한 유형인 ELS가 보험회사의 투자수요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ELS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결합하여 투자자 요구에 맞게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임.

1)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서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현금성 자산이 아닌 부동산, 사모펀드, 원자재,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s) 등 새로운 형태의 투자자산이 떠오르고 있으며 ELS는 구조화 상품의 한 유형임.

2) 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금융채, 원금형 ELS와 같은 구조화 상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장기에 걸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만기가 장기이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적합한 투자상품이라 할 수 있음.

- 대표적 보험상품인 연금상품의 경우 평균 만기가 20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원금이 보장됨.

■ 우리나라 ELS 시장의 현황을 감안할 경우 만기와 원금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투자대상으로 완전히 매칭될 수 있는 ELS 상품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 ELS 시장은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이 있으며, 원금비보장 상품이 전체 발행액의 79.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에 기초한 원금비보장형 ELS 상품의 경우 홍콩주식시장의 폭락으로 ELS 상품에 대한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ELS의 만기는 대부분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보험부채의 만기에 비해 훨씬 짧음.

- 2015년 발행된 ELS 중 만기가 3년 이상인 ELS는 2.65%(발행금액 기준)에 지나지 않음.

- 이러한 ELS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ELS 상품은 위에서 지적한 보험회사의 적합한 투자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자본금의 일부 혹은 당기순이익인식증권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원금보장형 ELS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다만, 장외시장을 통해 보험회사의 특성에 맞게 장기 원금보장형으로 ELS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의 투자대상으로 적합한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임.

- 장외시장이란 발행사인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인 보험회사를 위해 ELS의 만기구조, 원금보장의 유형, 수익구조 등 보험회사의 투자수요에 적합하도록 ELS 상품을 설계하기 위한 시장임.

- 장외시장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ELS 상품을 제공하는 증권회사에 비해 높은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대한 상대방 신용위험(counter-party risk)에 노출될 수 있음.

- ELS는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무담보 후순위 채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발행사인 증권회사가 부도날 경우 투자원금 전부를 손해볼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kiri](#)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현황과 영향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상업은행들의 부실대출비율은 2012년 4/4분기 0.95%에서 2015년 4/4분기 1.67%로 상승하였음. 중국 정부는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해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부실대출채권 유동화 증권을 보험회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원인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이며, 기업의 수익성과 대출상환능력 악화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함.

■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Non Performing Loan)비율은 2012년 4/4분기 0.95%에서 2015년 4/4분기 1.67%로 상승하였고, 규모는 4,929억 위안에서 1조 2,700억 위안으로 증가함.

- 중국 정부가 발표한 부실대출비율은 1.67%이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부실대출비율이 6% 이상일 것으로 추정함.
 -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원리금 상황이 연체된 대출이 부실대출로 분류됨.
 - 중국 은행들은 90일 이상 원리금 상황이 연체되었더라도 담보와 보증 가치에 따라 부실대출을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부실대출비율보다 낮을 수 있음.¹⁾

■ 부실대출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임.

- 2009년 중국 경기부양정책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과 그림자 금융 증가로 은행의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도 2008년 9.6%, 2009년 9.2%에서 2010년 10.6%로 상승함.
- 2009년 경기부양정책 시행 이후 투자 증가는 철강, 조선, 중화학공업 산업의 생산규모 확대에 이어졌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요 감소로 인해 이들 산업의 기업 수익성이 악화됨.

1) 중국 은행의 대출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정상(Pass), 요주의(Special Mention),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손실(Loss) 등으로 구분되며 '고정' 이하 대출이 부실대출로 분류됨(DBS Group 2015, 10. 7).

- 중국 기업 2,87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이자보상배율²⁾이 1 이하인 기업의 비중은 20.6%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의 비중은 14.4%임.³⁾

■ 중국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중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기업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상업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1~2014년 1.3~1.4%에서 2015년 1.1%로 하락함.
 - 전체 부실대출의 55%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5대 은행(공상, 건설, 중국, 농업, 교통은행)의 이익 증가율은 2014년 5.1~8.2%에서 2015년 1.1%로 하락함.
- 중국은 부실대출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1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13년 말 283%에서 2015년 말 181%로 하락함.
 - 2016년 1/4분기 기준으로 공상은행 141%, 건설은행 152%, 중국 은행 149%를 기록함.
-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발행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가 올해 22개로 지난해 21개를 넘어섰으며, 특히 국유기업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음.

■ 중국의 과도한 기업부채⁴⁾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중국 정부는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출자전환(Debt Equity Swap)을 추진하고 부실대출채권 유동화 증권(ABS)을 보험회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IMF는 중국 정부의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기업부채위험은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기업부채 조정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 자본 유출, 내수 위축 우려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확대, 원-위안화 직거래 확대, 중국 보험회사의 우리나라 보험회사 인수 등으로 중국의 경제불안이 우리나라 실물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가 오히려 위험 대출 증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전이될 수 있음.⁵⁾ **kiqi**

2) 영업이익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

3) IMF(2016. 4),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4) 기업부채는 비금융기업들이 국내에서 조달한 신용(Credit)으로 정의되는데 은행 대출, 채권 등임.

5) Zhang Dayong et al.(2016), "Non-Pefroming Loans, Moral Hazard and Regulation of the Chinese Commercial Banking System",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63.



일본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평가와 시사점

임태준 연구위원

요약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2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였으나, 3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오히려 0.3% 하락하였음. 기축통화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가치 하락 및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신흥국 경제위기 등으로 증폭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 증대로 이어져 엔화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일본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불거진 일본 통화당국의 환시장 개입을 둘러싼 미·일 간 입장 차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통화당국은 추가적 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지난 2월 일본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이후에도 원화평가절상이 실현되지 않았던 만큼,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환율방어에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 일본 중앙은행(BoJ: Bank of Japan)은 지난 2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할 목적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0.1%)를 도입하였으나,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16년 3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도 동월 대비 0.3% 하락함.

■ 설상가상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꾸준히 평가절상되어 2016년 1월 말 달러당 120엔을 상회하던 엔·달러 환율은 5월 23일 현재 110엔대까지 하락함.

● 일반적으로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이후,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중앙은행이 연이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바 있음.

- 이는 자국 통화가치의 상대적 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의 대응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¹⁾

1)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스위스는 유로존에 속한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로화가 아닌 자국통화를 법적통화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님.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및 확대에 의한 외화 유입은 이들 국가의 (유로화 대비)통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임형석(2016. 4), 『중앙은

- 최근에 관측되는 엔고현상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신흥국 경제위기 등으로 증폭된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판단됨.
 - 즉,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엔화 평가절하압력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인한 엔화 수요 증대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효과가 미약함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보인 일본 외환당국의 환시장 개입에 대한 미·일 간 입장 차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G7 회원국들은 경쟁적 통화평가절하에 대한 자제 노력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일본이 제기한 ‘무질서하고, 일방적인’ 엔고현상에 대해서는 미·일 간 극명한 입장차이가 확인됨.
 -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인 2.0%에 근접하였고, 단기적으로 실업률 또한 자연실업률에 근접한 완전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대표적 경상수지 적자국인 일본의 환율방어정책에 부담감이 큰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통화당국은 다른 정책수단이 바닥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통해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BoJ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할지라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환율방어에 뛰어들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 BoJ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도입된 지난 2월 이후에도 엔화 대비 원화가치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BoJ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원·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판명됨.

Kiri

행 마이너스 금리정책(NIR) 평가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브렉시트 현실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브렉시트(Brexit) 현실화로 영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음. 브렉시트 여파로 EU 탈퇴가 다른 국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상당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할 것임. 이러한 여파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원화 가치 하락 및 주가 폭락과 더불어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리 하락 추세는 이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내 보험회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해외자산 운용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상품 설계단계에서부터 금리위험을 관리하고 자산 측면에서 금리위험을 헤징하는 소위 매크로 헤징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매크로 헤징은 금리위험액을 경감시키므로 금융감독자는 요구자본산출액에서 금리위험경감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현재 완전 환위험헤징을 하고 있는 해외자산운용에서도 향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부분 환헤징전략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폭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6월 24일 영국 파운드화는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인 파운드당 1.3467달러 수준으로 급락함.
 - 또한, 일간 기준으로 전일대비 약 7.3% 하락하였는데, 동 수치를 연율화하면 1,825% 수준임.
- 일본 엔화 및 미국 달러화 가치는 전일대비 각각 6.7%, 3% 상승하였는데, 이는 금융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엔화 및 달러화를 매입하였기 때문임.

■ 또한, 브렉시트 여파로 다른 회원국(덴마크, 프랑스 등)의 EU 탈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상당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공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정도는 투표 자체의 결과보다는 EU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EU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으로 유럽 단일 예금보험공사 설립 및 그리스 국가부채 관리 등과 관련된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가 상존하고 있음.
- 브렉시트 현실화로 유로화체제 유지에 상당한 회의론이 제기되어, 향후 유로화에 대한 헤지펀드의 투기적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여파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원화가치 하락 및 주가 폭락과 더불어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리 하락 추세는 이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원화가치 및 주가 하락과 이에 따른 금리 하락은 브렉시트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원화 및 주식을 투매하고 안전자산인 국채나 현금으로 도피하는 현상의 결과임.
 - 원화가치는 6월 24일 3시 기준 달러당 1,179.9원으로 전일대비 29.7원 폭락하였음.
 - 주식시장의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전일대비 장중 17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40% 이상 폭등함.
- 향후 외환시장, 주식시장 및 국채시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하락 추세가 보다 강해질 것임.

■ 이에 국내 보험회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해외자산 운용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안전자산 선호경향 확대로 국채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 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차역마진 부담가중은 보험회사의 자본확충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설계단계에서부터 금리위험을 관리하고 자산 측면에서 금리위험을 헤징하는 소위 매크로 헤징(macro hedging)¹⁾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매크로 헤징은 금리위험액을 경감시키므로, 금융감독자는 감독차원에서 요구자본산출액에서 금리 위험경감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매크로 헤징은 현재 감독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헤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감독자가 이를 인정해 주면 보험회사의 매크로 헤징 유인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해외자산운용은 대부분 채권 또는 채권형 투자를 통해 이루어져 완전 환위험헤징을 하고 있는데, 향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부분 환헤징전략(currency overlay)²⁾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Kiri

1) 보험부채에 내재하는 금리위험을 자산 측면에서 금리스왑, 스왑선 등 파생상품을 통해 헤징하는 형태를 매크로 헤징이라 함.
 2) 부분 환헤징전략이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강세달러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임.



초장기 국고채 도입 의미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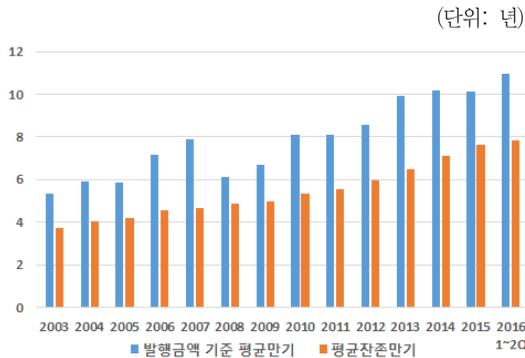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2016년 8월 기획재정부는 50년 만기 국고채 시범 발행을 검토하고 있음을 발표함. 초장기 국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부의 장기 재정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 및 채무관리 능력 제고, 장기 국채 공급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수요 충족 등임. 마지막으로 초장기 국고채 도입이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은 자산-부채 듀레이션의 효율적 관리 및 투자 다변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임.

- 2016년 8월 기획재정부는 초장기 국고채 신규 발행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여 50년 만기 국고채의 시범 발행을 검토하고 있음을 발표함.
 -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 등 국가 재정수요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고채 만기 확대 필요성이 높아짐(〈그림 1〉 참조).
 - 2000년 10월부터 10년 만기 국고채가 발행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20년 만기 국고채가, 2012년 9월부터 30년 만기 국고채가 각각 발행되었음.
 - 최근 장기금리(30년물)가 1.5% 이하로 하락하는 등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어 자금조달비용 측면에서 신규 초장기채 육성에 적절한 시기로 판단함(〈그림 2〉 참조).
 -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대비 금융수요 증가로 인해 연금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연기금 및 보험회사의 장기 투자 자산 수요가 증가함.
 - 또한, 향후 보험부채 시가평가 재무회계 및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가 중요해져 장기 투자 자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향후 기획재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발행안을 결정할 예정임.

〈그림 1〉 연도별 국고채 평균만기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2〉 국고채 장단기 금리 및 금리차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 초장기 국고채 도입의 기대효과는 첫째, 정부 측면에서 장기 재정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 및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채무관리 능력 향상임.

- 초장기 국고채 발행은 국채만기를 장기화하여 차환위험¹⁾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장기 재정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도움을 줌.
- 또한, 만기 다양화를 통해 상환부담을 분산시켜 재정운용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두 번째 기대효과로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장기 투자 자산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거나 다양한 장기 투자 자산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임.

- 초장기 국고채 발행은 장기 국고채의 주요 투자자인 기관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다 장기인 투자 자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
- 또한, 장기 국채시장이 활성화되면 장기 지표금리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금리기간구조²⁾가 확대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기 금융상품(회사채 및 구조화 상품 등) 발행 및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국채금리 기간구조는 금융상품 가격산정에 기준금리 역할을 담당하는 시장 인프라 성격을 지님.

1) 차환(借換)위험이란 채권 만기연장 시 수반되는 위험을 의미함.

2) 채권의 수익률은 만기, 표면이자율, 세금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와 같은 채권수익률의 결정요인 중 다른 요소는 모두 같고, 잔존만기(time to maturity)만 다른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를 금리기간 구조라고 함.

■ 초장기 국고채 도입이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은 자산-부채 듀레이션의 효율적 관리, 장기 우량 회사채 발행 가능성 증대로 인한 투자 다변화,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 할인율 산출 시 신뢰성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임.

- 보험회사는 장기 국고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자산 듀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를 감소시켜 금리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현재 국내 보험회사(특히, 생명보험회사)의 부채 평균 듀레이션은 자산 평균 듀레이션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 하락 시 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보다 커 순자산가치(자산-부채) 하락으로 이어짐.
- 국채 만기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채권발행시장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여 장기 우량 회사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회사는 장기 우량회사채 투자를 통한 투자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
 - 장기 우량회사채는 자산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신용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음.
-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는 금리기간구조의 왜곡완화 및 장기 국채시장 유동성 증가를 통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 할인율 산출 시 무위험 금리인 국채금리를 기초로 하는데, 유동성이 풍부하여 시장금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는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모형을 통해 산출함.
 - 최근 연기금과 보험회사의 장기 투자 수요가 확대되지만 장기 국채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아 금리 기간구조의 왜곡현상³⁾이 발생하는데,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로 동 왜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임.
 - 2016년 도입된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에서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경우 30년물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유동성이 풍부하여 시장금리를 신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20년으로 평가함.
 - 반면, 장기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이 기간이 50년임. [kiri](#)

3) 장기국채에 대한 고평가로 인해 장기금리 하락 압력이 생기면, 장단기 금리차를 줄이게 되고 이는 금리기간구조를 평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됨.



트럼프의 당선과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 방향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미국 금융규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의 폐기 또는 축소가 예상됨. 이에 따라 동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대규모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도드-프랭크법의 폐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지만 하던 금융규제 기초를 흔들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최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자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경제정책 목표로 삼음.
 - 본고를 통해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금융규제 완화와 미국 대규모 비은행 금융그룹(SIFI) 규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봄.
- 트럼프 당선자의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대표적 공약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기초로 제정된 도드-프랭크법¹⁾의 폐기 또는 축소라고 볼 수 있음.
 -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미국의 금융회사 주가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도드-프랭크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금융규제 강화를 위해 2010년 제정되었음.

1)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트럼프 당선자는 이 법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를 지나치게 옥죄면서 미국의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특히 수도 워싱턴의 관료주의가 금융시장을 통제하면서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채널로 봄.

● 금융 안정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²⁾)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³)을 신설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강력한 금융규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특히,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FSOC에 미국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비은행 금융그룹을 SIFI⁴)로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SIFI로 지정된 대규모 비은행 금융그룹⁵)은 대규모 은행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준비제도)의 감독대상이 되어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됨.

■ 그러나 비은행 금융그룹의 지정 및 이들에 대한 강화된 감독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저항을 받아왔으며, 특히 SIFI 지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제기되었음.

● 이에 FSOC는 이에 대한 보완책⁶)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2016년 초 미국 연방지방법원⁷)은 MetLife 금융그룹과 FSOC 사이의 SIFI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인 MetLife의 손을 들어줌.⁸)

■ 트럼프의 당선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상·하원의 구성으로 봤을 때 도드-프랭크법의 존립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변화폭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볼커룰(Volcker Rule) 폐지 등 은행규제 완화 중심으로 도드-프랭크법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대형 비은행 금융그룹의 SIFI 규제에도 변화가 예상됨.

■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폐기 또는 축소 등 미국 금융규제의 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 일변도 이던 국제적 금융규제의 기초를 흔들 수도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등 해외 금융규제 변화를 주시하고 향후 보험회사 시스템 규제를 도입한다면 미국 SIFI 지정과정의 문제점 등 미국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음. [KiRi](#)

2)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3)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4)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5) 현재 미국 보험그룹 중 AIG, MetLife, Prudential 등이 SIFI로 지정되어 있음.

6) FSOC(2015. 2. 4), "Supplemental Procedures Relating to Nonbank Financial Determinations".

7) Federal District Court for District of Columbia, 미국 수도 워싱턴 지역 관할 지방법원.

8) 이승준(2016. 4. 11), 「MetLife의 SIFI 지정취소 소송 승리의 의미와 시사점」, 『KiRi Weekly』, 379호, 보험연구원.



경기순환과 해약환급금

임태준 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

요약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경기변동과정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자주 인용되고 있음. 하지만 경기변동이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이 장기적 추세를 중심으로 순환변동하는 현상을 뜻하므로,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약환급금에서 장기추세를 제거한 해약환급금의 순환변동요인을 살펴봐야함.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순환변동요인(cyclical component)을 산출한 결과, 해약환급금은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추세보다 감소하고 경기하강 국면에서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됨. 또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의 순환변동요인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이는 보험가입자의 해약행위는 경기와 반경기순환적(counter-cyclical) 관계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경기하강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해약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함. 보험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해약이 증가할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보험회사는 경기불황기에 해약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 해약환급금 규모는 경기순환(business cycle; 경기변동)과정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흔히 인용되고 있음.¹⁾
 - 특히, 경기하강 국면에서 재정상태가 악화된 가입자가 계약을 해약한 결과, 보험 해약환급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보험산업 해약환급금을 경기순환(경기변동)과정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성장추세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그 이유는 경기순환이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이 장기적 추세를 중심으로 순환변동하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임.

1) 본고에서 해약환급금은 생명보험산업 해지 및 효력상실환급금 총액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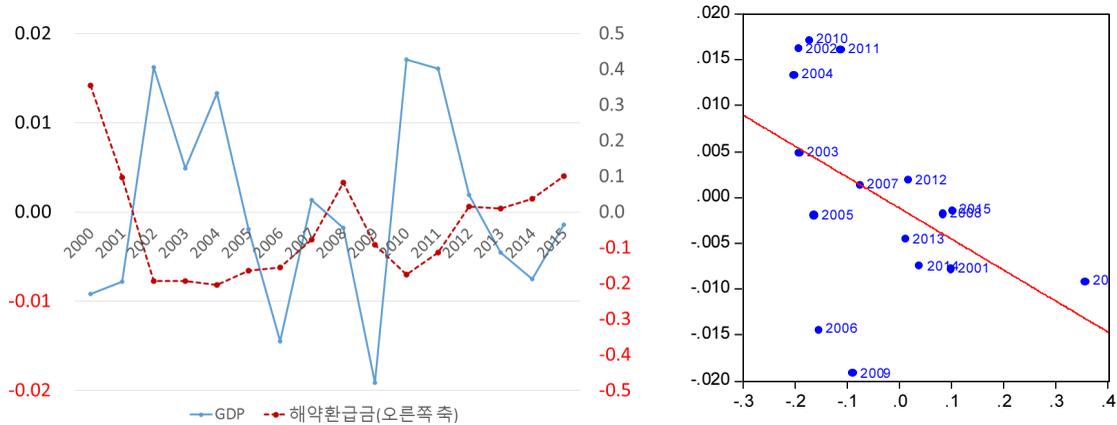
■ 본고에서는 국내총생산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순환변동요인(cyclical component)을 산출하여 경기 변동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추이를 살펴봄.

- 국내총생산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시계열 자료는 로그를 취한 후, 장기적 추세를 제거하기 위해 HP 필터를 적용하였음.²⁾
 - 이 때 시계열의 계절성(seasonality)을 고려하여, 연간 자료를 활용함.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순환변동요인은 경기상승 국면에서 하락하고 경기하강 국면에서 상승하는 패턴이 관측됨(그림 1) 참조).

- 실질국내총생산의 순환변동요인이 저점에서 고점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경기상승 국면으로, 고점에서 저점으로 하락하는 구간을 경기하강 국면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국내총생산의 순환변동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0.47임.

(그림 1) 해약환급금의 순환변동요인 추이(2000~2015년)



■ 한편, 보험산업 지표 중 경기순환 국면에서의 가계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목적으로는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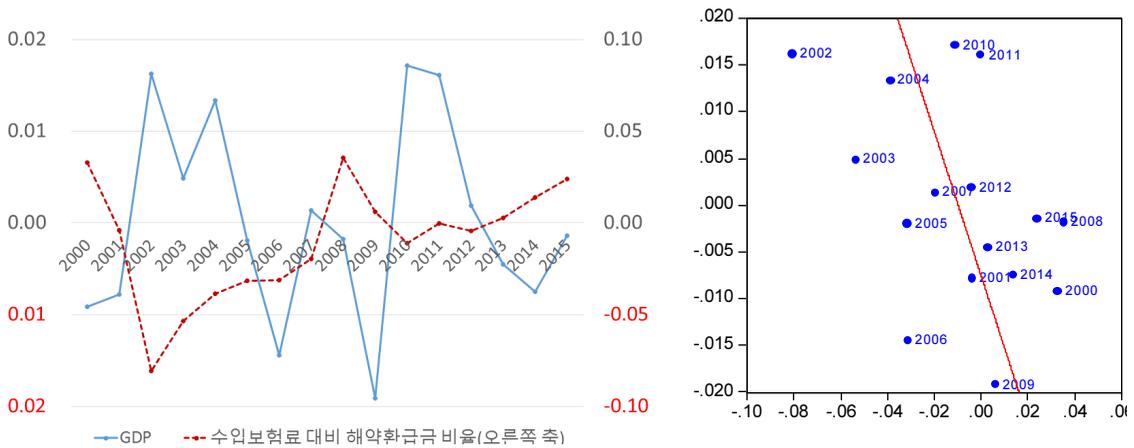
2) HP 필터(Hodrick-Prezcott filter) 적용은 시계열 자료에서 장기적 추세(trend)를 제거하기 위해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임.

●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경기하강 국면의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 감소를 모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임.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유사하게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의 순환변동요인 또한 경기상승 국면에서 하락하고 경기하강 국면에서 상승하는 패턴이 관측되었음(〈그림 2〉 참조).

●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과 국내총생산의 순환변동요인 간의 상관관계수는 -0.45 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그림 2〉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의 순환변동요인 추이(2000~2015년)



■ 이러한 결과는 보험가입자의 해약행위는 반경기순환적(counter-cyclical)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경기하강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해약이 추세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보험회사의 예상보다 해약이 증가할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경기하강 국면에 보험가입자의 해약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불황기에 특히 해약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kiri](#)

2.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1.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에 따른 고려사항 | 조재린 이경아 |
| 2. 「보험다모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박선영 황인창 |
| 3. 보행자 안전 제고를 위한 일시정지 표지판 관련 제도개선방안 | 최창희 |
| 4.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평가와 시사점 | 정성희 이정택 |
|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의의와 기대효과 | 임 준 이성은 |
| 6.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 | 류진식 감동겸 |
| 7.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IRP 추가 납입에 미친 영향 | 정원석 |
| 8.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 보험회사는 과연 이익을 보고 있는가? | 정성희 |
| 9. 민영의료보험 최소손해율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 | 이태열 정성희 |
| 10.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 | 황인창 |
| 11. 붕괴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 최창희 |
| 12. 스마트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조건 | 변혜원 |
|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시사점 | 오승연 김미화 |
| 14.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의 시사점 | 조영현 |
| 15. 울산 지진과 국내 지진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 | 최창희 |
| 16. 비전속 채널에 대한 감독규제 개편 필요성 | 박선영 |
| 17.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 송윤아 |
| 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황현아 |
| 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이 보험금 지급에 미칠 영향 | 송윤아 |
| 20.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 조재린 황인창 |
| 21. 대형 법인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실효성 제고방안 | 변혜원 박선영 |
| 22.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 | 정원석 |
| 23.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 임 준 |
| 24. 기습기 살균제 사태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 | 최창희 이규성 한성원 |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에 따른 고려사항

조재린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원

요약

최근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변액보험(=변액종신+변액연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신규 편입됨. 그러나 변액보험 관련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대상의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상의 어려움, 그리고 예금보험료 산출식의 불확실성 등 문제점을 갖고 있음. 따라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보장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조치, 그리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금자보호법 개정(2015년 12월)으로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신규 편입됨.¹⁾

- 변액보험은 그 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신규 편입됨.
- 이에 따라 변액보험도 일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보험금대지급, 계약이전의 예금자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의한 예금자보호 대상과 예금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서 규정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서로 상이함.

-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음(예금자보호법 제2조 2항 다호).
- 한편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에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1) 변액보험 최소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은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후 2015. 11. 3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 12. 22(화) 공포됨. 시행은 6개월 이후부터이며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임.

-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변액보험계약에서 약관에 따라 실적에 관계없이 최저한도로 보장하는 금액으로서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2015. 12. 2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 예금자보호 대상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증수수료”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보장보험금”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임.

■ 예금자보호 대상에 대한 상이한 규정은 상이한 해석을 초래해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음.

-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은 계약자가 최소보험금을 보장받는 대가로 납부한 최저보증수수료 혹은 보험회사가 최저보증을 위해 적립한 보증준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최저보증수수료 혹은 보증준비금으로 해석될 경우,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가 최저보증수수료 혹은 보증준비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을 최저보증보험금이라고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최저보증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이 영업정지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건(만기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한 계약 중 적립금이 최소보험금보다 적을 경우 최소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되어 지급되는 금액임.
- 보증준비금은 최저보장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으로 계약자 몫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장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존재함.

-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보장함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변액보험 전체가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으로 오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변액보험 예금보험료 산출과정에서 일반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

- 일반 보험계약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므로 예금보험료는 아래의 산출식에 의해 결정됨.
 - 전통적인 예금보험료 산출식: $\text{예금보험료} = 15/10,000 \times (\text{책임준비금} + \text{수입보험료}) / 2$
 - 반면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금 성격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 대상임.
 - 변액보험 해지 시 최저보증수수료 및 보증준비금을 환급할 필요가 없음.
 - 일반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미경과보험료+보험료적립금)은 아직 보장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자 몫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변액보험의 최저보장수수료는 이미 보험회사가 최소보험금 지급보장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보험회사의 몫임.
 - 따라서 변액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액보험 예금보험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관련 예금자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변액보험 관련 예금자보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조치, 그리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kiri](#)



「보험다모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박선영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정부의 핀테크 육성책과 맞물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지난해 11월 23일 첫 시연회를 가진 이후,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긍정적인 평가는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확대 되고 향후 사업비 절감효과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임. 하지만 현행 「보험다모아」 모형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원스톱 서비스 결여, 가격 비교기능의 실효성 의문,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유인 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향후 「보험다모아」가 실질적인 소비자 채널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상품 비교에서부터 가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현,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 검색조건 분류, 고객 니즈에 맞는 검색조건 세분화, 그리고 「보험다모아」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자 및 운영자에 대한 유인 제공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http://www.e-insmarket.or.kr>)를 출범시켰음.

- 「보험다모아」는 소비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가격 인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원스톱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접속-검색-비교-구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보험다모아」의 벤치마크 사업모형은 국내 온라인 펀드슈퍼마켓과 외국의 가격 비교 사이트인 보험 에그리게이터(agggregator) 모델을 꼽을 수 있음.
 - 에그리게이터란 여러 가지 보험상품의 비교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로 영국의 “Confused.com”, “MoneySuperMarket.com”, “gocompare.com”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보험다모아」는 생·손보험회 공동 주관으로 운영되며 상품별 가격 비교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지난해 출범 초기 총 33개 보험회사, 217개 상품으로 시작된 「보험다모아」에 최근 들어 가격경쟁력이 있는 사이버마케팅(CM) 상품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실손,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 및 보장성·저축성보험 등의 비교가 가능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CM 전용상품이 초창기에는 1개사(삼성)에서 최근 들어 5개사(롯데, 메리츠, 삼성, 현대, KB)로 확대됨.

■ 현행 「보험다모아」 모형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원스톱 서비스 결여, 가격 비교 기능의 실효성 의문,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유인 결여 등으로 요약됨.

- 첫째, 현재 「보험다모아」의 주요 기능이 보험회사 웹사이트로 연계시키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요원한 상태임.
 - 실질적인 구매는 개별 보험회사나 텔레마케팅(TM) 채널을 재차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이 존재함.
-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구분이 너무 단순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검색할 수 없어 가격 비교 기능의 실효성도 의문시 됨.
 - 「보험다모아」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실제 구입단계에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가격정보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셋째, 비상업적 단체인 협회가 운영하고 있어 「보험다모아」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결여되어 있음.
 - 「보험다모아」가 단순히 가격 비교 기능만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데, 현재에는 이러한 유인이 낮음.

■ 「보험다모아」가 실질적인 소비자 채널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고객들이 상품 비교에서부터 가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함.
- 둘째,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검색 조건을 분류하고, 고객 니즈에 맞게 검색 조건을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상품 비교가 가능해야 함.

-
- 일례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종 선택 시 배기량뿐만 아니라 제조사, 모델, 연료방식, 변속기 선택 후 특정 차종 선택 기능 등 소비자 니즈에 맞는 추가검색 기능이 요구됨.
 - 궁극적으로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들의 단순한 열거가 아닌 고객이 원하는 보장내용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여러 회사의 상품들이 제시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셋째, 「보험다모아」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자 및 운영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보험다모아」가 실질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가격 비교 기능뿐 아니라 판매 및 온라인 자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해외 펀드슈퍼마켓, 보험 에그리게이터 등의 신 채널은 자문서비스와 융합되어 펀드, 보험, 주식 등 개인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랩 플랫폼(Online Wrap Platform)으로 진화하고 있기도 함.
 - 상업적 마인드를 갖는 전문업체가 「보험다모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kiri](#)



보행자 안전 제고를 위한 일시정지 표지판 관련 제도개선방안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2013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횡단보도·교차로 일시정지 표지판의 설치와 이에 대한 관리 미흡을 꼽을 수 있음. 미국·영국 등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큰 액수의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교통·경찰 당국은 보행자 보호 제고를 위해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 확대, 과태료·범칙금·벌점 강화 및 단속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국가 중 높은 편이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과거에 비해 증가폭이 줄어들었으나 여타 OECD국가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아직도 높은 편임.¹⁾
 - OECD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높은 순서): 미국(503.3건), 일본(494.4건), 오스트리아(455.5건), 한국(428.8건), 벨기에(369.8건), 영국(225.3건)
-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1명으로 OECD국가 중 3위로 매우 높음.
 - OECD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높은 순서): 칠레(12명), 미국(10.3명), 한국(10.1명), 폴란드(8.7명), 룩셈부르크(8.4명), 그리스(7.9명), 일본(4명), 영국(2.8명)
- 교통사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봤을 때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음.²⁾
 - OECD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높은 순서): 한국(38.9%), 칠레(38.9%), 일본

1) 한국도로교통공단(2015), 『2014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p. 34.

2) 한국도로교통공단(2015), 『2015년판(2013년 통계)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p. 20, p. 43.

(36.2), 폴란드(34%), 미국(14.2%)

-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약 24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 GDP의 1.8%, 국가예산의 9.7%에 맞먹는 규모임.³⁾

■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이처럼 높게 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일시정지 관련 현행 제도를 꼽을 수 있음.

- 운전자 의식수준, 국가 경제수준, 도로시설, 제도 등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높은 교통사고율이 초래됨.
 - 예산 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다수 존재하는데, 예컨대 2014년 현재 서울시 3만 2천 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없는 곳이 72%를 차지함.
- 현행 법규상 일시정지 표지판 앞 차량의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벌점 없이 3~7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됨.⁴⁾
- 더불어 현재 교통표지판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또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08년 기준으로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1,400만여 건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3.09%), 무면허운전(1.37%), 신호위반(12.18%), 중앙선침범(0.54%), 과속(62.99%), 안전운전 의무위반(0.61%), 기타(0.02%) 등으로 나타나, 교통표지판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⁵⁾
- 현재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함.⁶⁾
 - 현행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일시정지 등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⁷⁾되어 있기 때문임.

3) 한국도로교통공단(2015), 『2014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p. 83.

4)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 범칙금: 경찰관에 의한 단속

5) 도로교통공단(2013), 『교통법규위반 유형별 단속현황』.

6) TBS교통방송(2016. 1. 27),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아슬아슬’”.

7)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시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해야 함.

- 특히, 신체 능력 또는 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⁸⁾

■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은 한국보다 강한 수준의 보행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 뉴욕 주 『차량·교통법』 제26장 1142절(Vehicle and Traffic Law, Article 26, Section 1142)⁹⁾은 운전자의 일시정지 표지판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있음.¹⁰⁾
 - 뉴욕 주는 일시정지 표지판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경우 200달러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함.¹¹⁾
 - 미국 뉴욕 주의 109 경찰서 관할지역 교통법규 위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빈도가 가장 높은 10개 위반 사례 19,398건 중 빈도가 높은 순서는 표지판 위반(37.67%), 안전벨트 미착용(17.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10.25%), 불법 선풍(8.62%), 무면허운전(6.09%) 등으로, 교통표지판 위반에 대한 단속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¹²⁾
- 영국은 1988년 발효된 『도로교통위반법(Road Traffic Offenders Act 1988)』¹³⁾을 근거로 일시정지 표지판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벌점·과태료(최대 1,000파운드)를 부과함.¹⁴⁾

■ 교통당국은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⁵⁾

-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교통·경찰 당국은 ① 일시정지 표지판 위반에 대해 범칙금·과태료·

8) 에이블뉴스(2015. 8. 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두려움에 떠는 장애인들”.
 제주신보(2015. 11. 2), “횡단보도서도 보행자는 멈추고 자동차는 ‘쌍쌍’”.
 경기일보(2015. 11. 20), “스쿨존 하세월·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아이들 불안한 등하교”.
 광남일보(2015. 11. 2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험천만”.
 JTBC(2016. 1. 20),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노인’...보행 환경 체험해보니”.
 9) <http://ypdcrime.com/vt/article26.htm#t1142>.
 10) 단,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
 11) <http://www.trafficticketviolationattorney.com/Traffic-Violations/Stop-Sign-Violations.shtml>.
 12) 한국일보(2015. 1. 5), “지난해 플러싱 일대 운전자 교통법위반”.
 1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8/53/pdfs/ukpga_19880053_en.pdf.
 1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1661/dg_191955.pdf;
<http://www.thisismoney.co.uk/money/cars/article-1708393/How-fight-parking-ticket.html>.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관행도 운전자의 보행자 위협 운전이 일조하고 있으나 동 제도 도입 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아래 판례 참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검은 옷을 입고 주위를 살피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사망한 피해자에게 10%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대선지법 2014나10618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만 4세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과실 20%를 인정(손해배상소송 2015나2005963).

별점 강화, ②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학교 주변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일시 정지 표지판 설치 확대, ③ 일시정지 표지판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과태료·범칙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보행자 안전을 제고해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04~2013년 자동차보험 연평균 합산비율¹⁶⁾은 107%이고, 자동차보험회사는 2014년에만 보험 영업수지에서 1조 1,3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¹⁷⁾ **kiri**

16) (발생손해액[보험금 포함]+순사업비)/수입보험료, 자동차보험영업수지는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 서비스 참조.

17)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 서비스 참조.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평가와 시사점

정성희 연구위원, 이정택 연구위원

요약

미국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의료보험혜택 확대, 의료비 통제 등)를 위해 2010년부터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함. 제도개혁의 주요 효과는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및 저소득층·빈곤층의 건강보장 강화를 통한 의료보험 혜택 확대임. 또한 책임진료 의료연합체(ACO) 도입 및 의료 성과중심 지급체계 확대로 의료비 관리 효과가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오바마케어로 통칭되는 미국 건강보험개혁법¹⁾은 의료접근성 제고, 의료품질 향상, 의료비 통제를 주요 목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미국은 높은 의료비 지출²⁾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보험자가 많고³⁾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의료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의회는 2010년 3월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켰음.
 - 향후 2020년까지 1조 달러 상당의 재정 투입을 통해 미국인의 건강보험 수혜율을 전체 인구의 95%⁴⁾까지 높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비 증가 억제 등 미국 건강보험 제도개혁 추진으로 최근 들어 실제 의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그림 2) 참조).

-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00년 12.5%에서 2010년 16.4%로 10년 동안 3.9%p 증가하였으나 개혁 이후 3년간 16.4%에서 정체되는 양상임.⁵⁾

1)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16.4%, 인당 의료비 8,700달러 수준임.

3) 2010년 이전까지 건강보험 무보험자는 5,000만 명으로 이는 전 국민의 18%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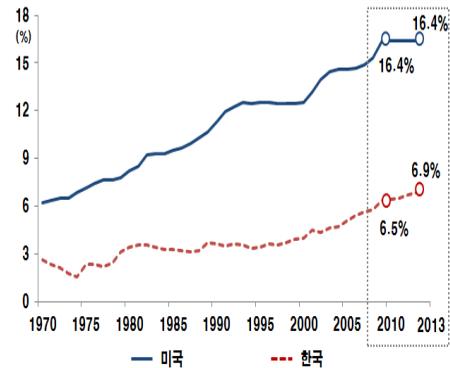
4) 무보험자 3,200만 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함.

- 보험가입 의무화, 저소득층 공적건강보험(Medicaid) 적용범위 확대⁶⁾, 차상위 빈곤층의 건강보험 지원⁷⁾ 등 의료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무보험자의 비중이 줄어들음.
 - 무보험자의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5년 13%로 감소함.⁸⁾
- 노인 인구의 의료비 관리를 위해 노인공적건강보험(Medicare)에 책임진료 의료연합체(ACO: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⁹⁾ 도입과 의료성과 중심의 지급체계(포괄지급제, Bundled Payment)¹⁰⁾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더불어 ACO 및 성과중심 지급체계는 민영 건강보험시장으로 확산되는 추세

〈그림 1〉 미국 건강보험 제도개혁 주요 내용과 의료비 영향



〈그림 2〉 국가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자료: OECD Health Expenditure.

특히, 의료보험 혜택자의 확대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의료비 증가세 둔화는 건강보험 제도개혁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평가됨.

- 미국의 경제성장, 인구고령화, 건강보장 확대 등으로 향후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의료비 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완결될 경우 의료비 증가 추세는 지금보다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음. [kiri](#)

5) 의료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ACO 도입 및 성과중심 지급체계 확산에 따른 영향을 들 수 있음. ACO 도입 및 성과중심 지급체계 확산으로 통원·1차 진료 중심 의료이용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응급의 고액의료비는 감소함에 따라 전체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PwC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5).

6)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100%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4년부터 133%까지로 대상을 확대.

7) Medicaid 대상에서 제외된 연방빈곤수준 133~400% 대상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8)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1997~2015).

9) 다양한 의료공급자(일반의, 전문의, 병원 등)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으로 의료비 절감 및 의료품질 관리에 대한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공유함.

10) 질병·진단명에 따라 의료비를 정액 지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의의와 기대효과

임준 연구위원, 이성은 연구원

요약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음.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인지보고나 심사의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임.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노력이 우여곡절 끝에 2016년 3월 2일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음.

-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통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피해 대상 범위가 일반 사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형법을 통해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에 한계가 있었음.
 - 이번에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보험사기 방지가 가능해졌음.

■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형량의 강화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음.

- 기존 형법(제347조)의 경우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한편, 고액의 보험사기범이나 계속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음.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두 번째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으로,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음.

-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 시 건별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소비자보호 조항에 해당됨.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규제당국의 공문이나 협조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인지보고나 심사의뢰 등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임.

- 우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특별법 제정은 무엇보다도 잠재적 보험사기범에게 우리 사회가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전에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kiri](#)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선임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적립부족 상황에 처해 있음. 퇴직연금 관련 재무건전성 규제조치는 의무적립비율, 적립금 과부족 관련 이행조치, 미이행 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우리나라 건전성 규제조치가 국제적 권고기준에 미흡하여 근로자 수급권이 건전성 측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의무적립비율은 적립금 적정수준의 70%에 불과하여 30% 적립부족 상태에 있음.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적립액 평가 및 퇴직연금 부족 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퇴직연금의 적기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소적립금 수준을 조속히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실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기준에 미달 시 추가부담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적기시정조치 위반 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조치¹⁾에도 불구하고 적립부족 상황에 처해 있음.

- 퇴직연금 관련 재무건전성 규제조치는 의무적립비율, 적립금 과부족 관련 이행조치, 미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포함함.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부족상태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최소적립비율이 연금부채의 10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70%에 불과함.
-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인 기업이 도산할 경우 30%의 적립부족(미적립채무)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

1) 정부는 2014년 8월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DB형 최소 사외적립비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인상하는 한편, 일반금융상품과 별개로 DC형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한도(5천만 원)를 설정함.

〈표 1〉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관련 규제

구분	한국	외국	
		미국	일본
최소 적립 비율 (의무적립비율)	70% · 2020년까지 100% 상향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 2006년 이후부터 적용	100%
특징	미적립채무 30% 존재	부담금 완전 사외적립(미적립채무 없음)	

자료: 일본 기업연금법(2014); 미국 ERISA법(2014) 참조.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DB형 퇴직연금의 건전성 검증기준(적기시정조치)이 마련되었지만, 적립과부족 시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적기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 반면, 미국 등은 세제혜택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립 최고한도를 설정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미이행 시 벌과금 부여, 급여 삭감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표 2〉 퇴직연금의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제

구분	한국	외국	
		미국	일본
적립 부족 시	- 최소적립금의 95% 미달 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방안 제출	- 최소적립금의 90% 미달 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 부족분 5년 내 납입	- 최소적립금의 90% 미달 시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 · 부족분 7년 내 납입
적립 초과 시	- 향후 부담금과 상계 처리	상계 처리 인정	
	- 연금부채의 50% 초과 시 반환가능 적립최고한도 미설정	- 부채초과금 반환가능 적립최고한도 설정(세제혜택을 이용한 조세회피 고려)	- 부채초과금 반환가능
제재조치	없음	존재(세금 등 벌과금 부여, 적립부족 심각 시 급여삭감 등)	

자료: 일본 기업연금법(2014); 미국 ERISA법(2014) 참조.

■ 따라서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최소적립금 수준을 100%로 조속히 상향 조정해 적립부족분(미적립채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적립금이 최소적립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적립부족 시), 추가부담금을 조기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적립초과현상 해소를 위해 최대적립한도 설정과 같은 장치마련도 요구됨.

● 이와 더불어 적기시정조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조치(벌과금 부여 등)를 취해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kiri](#)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IRP 추가 납입에 미친 영향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2015년 퇴직연금 및 IRP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및 IRP 추가 납입은 2014년 대비 7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대부분의 추가 납입은 IRP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추가 납입자들이 주로 이용한 금융권역은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고 증권사의 성장 또한 두드러졌음. 이는 금융권역별 고객접근성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됨.

■ 정부는 2015년부터 400만 원이던 연금저축¹⁾과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²⁾ 합산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 원으로 상향하였음.

●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는 400만 원으로 동일하나, 퇴직연금과 IRP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300만 원 증가된 효과가 있음.

■ 세제혜택 한도 상향으로 퇴직연금 및 IRP 추가 납입금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2014년 1,232억 원 수준이던 추가 납입금은 2015년 1조 387억 원으로 743% 증가하였음.

● 금융기관의 IRP 홍보에 힘입어 2015년 추가 납입금 중 91%가 개인형 IRP³⁾로 납입됨.

〈표 1〉 퇴직연금 및 IRP 추가 납입금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가율 (B-A)/A
	DC	기업 IRP	개인 IRP	합계(A)	DC	기업 IRP	개인 IRP	합계(B)	
납입금액	403	15.9	813	1,231.9	892	34.9	9,460	10,387	743

자료: 금융감독원, 각 분기별 퇴직연금 영업실적 보고서 재구성.

1) 개인연금은 납입 시 세제혜택이 있는 세제적 개인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 연금보험으로 나뉨.

2) 퇴직연금과 IRP의 사업자 납입분과 구분하여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 납입이라 함.

3) IRP는 개인의 퇴직연금 연속성을 위한 개인형 IRP와, 퇴직연금을 설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기능을 제공하도록 도입된 기업형 IRP로 나눌 수 있음.

■ 퇴직연금 및 IRP 추가 납입 유치는 은행의 지배력 강화와 증권사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추가 납입이 가장 활발했던 2014년과 2015년 4분기 금융권역별 추가 납입금을 비교해 보면 금액 기준으로 은행이 4,414억 원 증가하여 전년도 동 분기 대비 509% 성장하였음.
 - 전년도에 72%이던 개인형 IRP에 대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77%로 확대되었음.
- 증가율에서는 전년도 동기 대비 720% 성장하여 1,246억 원의 추가 납입을 유치한 증권사의 성장이 두드러짐.
- 반면, 2014년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이던 생명보험회사는 2015년 4분기 204% 증가하는 데 그쳐 511억 원의 추가 납입을 유치함.

〈표 2〉 퇴직연금 및 IRP의 금융권역별 추가 납입금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4년 4분기				2015년 4분기				증가율 (B-A)/A
	DC	기업 IRP	개인 IRP	합계(A)	DC	기업 IRP	개인 IRP	합계(B)	
은행	228	16	625	868	303	19	4,959	5,282	509
생보	55	0.2	113	168	100	0.3	411	511	204
손보	13	0	7.6	21	19	0	76	94	348
증권	86	0.1	66	152	140	0.1	1,107	1,246	720
합계	382	16.3	811.6	1,209	562	19.4	6,553	7,133	490

주: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추가 납입 통계는 2014년 4분기부터 제공되어 이를 2015년 동 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각 연도 4분기 퇴직연금 영업실적 보고서 재구성.

■ 보험회사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은행과 증권사에 비해 IRP 추가 납입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금융권역별 고객유치 전략의 차이는 고객 접근성, 금융회사별 판매채널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은행 지점 수는 6,420개⁴⁾, 증권사 지점 수는 약 1,216개⁵⁾로 내방고객에 대한 IRP 마케팅에 있어 지점 수가 적은 보험회사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kiri**

4) 금융감독원(2015), 『은행경영통계』.

5) 금융투자협회(2015), 『회원사현황』, http://www.kofia.or.kr/member_status/m_15/sub0202.do.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 보험회사는 과연 이익을 보고 있는가?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동 주장은 실제 보험 통계가 아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 진료 형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이 결여됨. 보험회사의 실제 지급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보장성 강화 영역에 대한 실손 보험금의 총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조치로 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실증적 자료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최근 연구보고서¹⁾에 따르면 공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²⁾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013~2017년 기간 동안 총 1.5조 원³⁾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 보험 통계가 아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 진료 형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이 결여됨.

●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율, 지급률 등에 대한 정보를 실제 지급된 실손보험금 통계를 사용하는 대신 설문조사 결과와 의료패널 통계를 토대로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위험유형정보와 실제 의료이용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동일한 성이나 연령대에서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의료이용성향 등에 따라 실손의

1) 보건사회연구원(201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보고서.

2)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은 2013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 확대를 추진함.

3)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소요 예산액은 11조 원으로 예산액의 13.5%에 해당함.
(정책별: 4대 중증질환(1조 원, 13.2%) > 선택진료(4천억 원, 15.2%) > 상급병실(1천억 원, 11.6%)).

료보험의 실제 청구내역과 지급보험금 간 편차가 발생함.

- 보장성 강화로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 가능한 비급여에 대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급여로 전환된 항암제 대신 고가 비급여 약제⁴⁾ 또는 치료를 시행하거나, 비급여 항목인 뇌혈류초음파나 심혈관유도 초음파 비용을 이전보다 인상함.

■ 보험회사의 실제 지급통계⁵⁾에 따르면 오히려 보장성 강화 영역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의 총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의 가장 큰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⁶⁾이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음.
 - 이는 보장성 강화 대상⁷⁾의 의료비 감소 폭보다 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 의료비⁸⁾의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임.
 - 4대 중증질환의 전체 본인부담금에서 보장성 강화 대상은 10%대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함.
- 상급병실료의 경우에서도 보장성 강화 대상인 4인실이 급여화되었으나 비급여인 1~3인실의 병실료가 증가하여 전체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음.

■ 따라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조치로 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실증적 자료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의료공급자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급여로 남아있는 부분의 진료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총액은 변화하지 않을 수 있음. [kiri](#)

4) 이문셀-엘씨: 항암면역세포치료제로 1회 투여 비용이 500만 원, 통상 연간 5회(2,500만 원) 투여를 권장.

자다신: 항암면역제제로 1회 비용이 10~30만 원, 1주일에 2~3회를 기간 제한 없이 장기간 투여.

5) 보험업계 대표성을 가진 보험회사의 2013~2014년 실손의료보험 지급통계임.

6)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과 공단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7) 초음파진단료, MRI진단료 등.

8)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투약 및 주사료 등.



민영의료보험 최소손해율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민영건강보험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민영의료보험의 최소손해율 제도가 인용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오바마케어 도입과 함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과는 성격상 많은 차이가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임.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책임보험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보다도 공보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최소손해율 제도 도입 주장은 양국 민영의료보험 간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리한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됨.

■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 논란과 관련하여 미국 민영의료보험 사례가 인용됨에 따라 양자 간의 특성을 정확히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가능성¹⁾과 미국 민영의료보험 최소손해율 제도²⁾에 근거하여 민영건강보험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됨.
 - 2013~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로의 단계적 편입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제기됨.
- 특히, 민영의료보험 중심인 미국에서 보험회사의 수익 제한을 위해 최소손해율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됨.

■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이후 공공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과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표 1) 참조).

1) 정성희(2016. 4. 11),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 보험회사는 과연 이익을 보고 있는가?」, 『KiRi Weekly』, 제379호.

2) MLR(Minimum Medical Loss Ratio) rule: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 대상으로 판매된 건강보험상품의 손해율이 80%(단체는 8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분 만큼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줘야 함.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을 허용함에 따라 전자청약이 보편화되었음. 그러나 피보험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법규정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임기만료 폐기됨. 이러한 기존 전자서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및 상법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음. 한편 사생활 침해 등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관련 기술의 표준화,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생체정보 이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함.

■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을 허용함에 따라 전자청약 업무가 시행됨.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¹⁾
- 2011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비용 절감을 통한 보험료 절감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확인방법에 전자서명을 추가함.²⁾

■ 이후 태블릿(tablet)을 통한 전자청약이 보편화되었으나, 피보험자 생명보호 등 도덕적 위험 방지를 강조한 상법규정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임.

- 현재, 17개 생명보험회사가 태블릿을 통한 전자청약을 활용 중이고, 손해보험회사도 대형사의 경우 전체 계약의 약 20~30%가 전자청약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1)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 의무의 중요 사항 등).

● 그러나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은 불가함.

■ 이에 피보험자 동의 방식을 서면 외에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2012년 12월 발의되었으나,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 전자서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사시 위조 여부 판정을 위한 필적 감정도 곤란하여, 위조 등 사고의 대비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음.³⁾
- 또한, 타인의 공인인증서와 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습득한 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음.⁴⁾

■ 이러한 기존 전자서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및 상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음.

- 최근 공공, 의료 및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신체 데이터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생체인식기술⁵⁾이 새로운 보안 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 예) 지문의 특징정보를 추출·암호화·분할하고, 분산 보관 후 유사시 본인확인을 하는 기술
-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은 본인 확인에 있어 자필 서명보다 정확하고,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일반 전자서명의 단점을 보완함.
- 또한, 생체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정보만 추출 후 암호화, 분할 과정을 거쳐 분산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강화됨.
- 따라서 보험회사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관련 기술의 표준화,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생체정보 이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 요구됨. [kiri](#)

3)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4)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5) 신체의 고유한 특성(지문, 홍채, 망막, 정맥 등)이나 행동적인 특성(목소리, 필체, 체형, 걸음걸이 등)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



붕괴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지난 20년간 붕괴사고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 보험제도가 붕괴사고 손해 담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거나 붕괴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않음. 이로 인해 대형 붕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정부당국은 붕괴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법제화 및 보험가입 의무화, 기존 의무보험에 붕괴담보 추가, 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붕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 리스크 관리 미흡한 상태임.

- 1995년부터 2014년 사이 일어난 3,449건의 붕괴사고로 1,033명의 사상자, 3,306명의 부상자, 3천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¹⁾
- 붕괴사고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 규모가 크지 않고 관련 제도가 미흡함.

■ 피보험자 자신에게 붕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동산종합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있으나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²⁾

- 2014년 기준으로 동산종합보험 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15,137건, 230억 원, 풍수해보험 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12,036건, 115.6억 원으로 보험 규모가 크지 않음.
- 풍수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손해만을 담보하고 동산종합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발생한 붕괴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피보험자 자신에게 발생하는 재산 손해만을 보상함.³⁾

1)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참조. 본고에서는 건설현장 및 공공 시설물 붕괴사고는 다루지 않음.

2) 보험개발원, 『2015년 손해보험 통계연보』 참조.

3)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인터넷 사이트(<http://www.safekorea.go.kr/idsiSFK/index.jsp>), 동산종합보험은 손해보험회사 약관 참조.

■ 특수건물과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붕괴담보특약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게서 대형 붕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움.

- 특수건물 소유주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각각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화재로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붕괴 손해 담보는 기본담보에서 제외되어 있음(〈표 1〉 참조).

〈표 1〉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근거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무·임의	의무보험	의무보험
담보 대상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 담보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 담보
담보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로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손해 보상 의무화, 붕괴담보특약 가입 가능	다중이용업소가 화재·폭발로 타인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 보상, 붕괴담보특약 가입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각 법규 참조.

■ 정부당국은 대형 붕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붕괴 리스크가 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법제화하고 붕괴담보를 포함하는 배상책임보험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과 다중이용업소 중 붕괴 리스크가 큰 건물에 대해 붕괴 손해 담보를 추가해 대형 붕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해 대형 붕괴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물·시설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사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건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 보험가입 대상 선정 기준 제정이 필요함. **kiri**



스마트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조건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최근 주요국에서는 정부주도로 복잡한 정보와 데이터를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형태의 정보공시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변형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선택엔진의 개발을 촉진함. 국내 금융 분야에서도 소비자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돕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의 협력, 선택엔진이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의 데이터 집적, 정보 보안 관련 조치 등과 같은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주요국의 정보공개정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

● 미국 오바마 정부의 Open Government와 영국 카메론 연립정부의 투명성 및 데이터 공개 관련 노력은 정부 보유정보 공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¹⁾

■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는 복잡한 정보를 소비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시의적절하게 공개하는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또는 midata라는 전자공시체계를 도입함.²⁾

● 소비자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RECAP(Record, Evaluate, and Compare Alternative Prices)이라는 전자공시체계가 제안된 바 있음.³⁾

● 미국 정부는 스마트공시, 영국정부는 midata라는 이름으로 RECAP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 스마트공시는 정보의 조직화, 단순화, 지수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검색과 의사결정을 돕는 선택엔진(choice engine)의 개발을 촉진함.

1) 이 밖에도 EU의 Open Data Strategy(2011), 호주의 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2009) 등이 있음.

2) 스마트공시는 에너지, 교육, 금융, 통신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https://www.data.gov/consumer/smart-disclosure-policy> 참조.

3) Thaler and Sunstein(2009),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Penguin Books.

- 선택엔진이란 소비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정보들을 종합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변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음.⁴⁾
- 금융분야에 적용된 선택엔진의 사례로는 미국 BrightScope와 영국의 Gocompare.com이 있음.⁵⁾
 - BrightScope는 401(k) plan을 분석하여 각 상품의 점수를 산출, 펀드의 순위 분포를 제공하여 상품비교를 돕는 서비스임.
 - Gocompare.com은 소비자의 실제 거래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하여 제시하며, 특정 상품으로 이동할 때의 금전적 혜택 또는 비용을 추정하여 제공함.

■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공시가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정부, 금융회사,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선택엔진 개발자 간의 공조가 필요할 것임.
- 선택엔진이 상품 계약조건, 서비스 이용 관련 자료 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집계되어야 할 것임.
 - 미국 SEC는 2009년부터 기업, 뮤추얼 펀드, 신용등급회사들이 정보를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형태로 보고하도록 함.
- 또한, 정보보안에 관련된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비자정보를 암호화하여 필요한 분석에 사용한 후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는 Gocompare.com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정보를 적절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 공시를 위해 스마트공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정부 보유 데이터의 공유 활성화와 더불어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공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⁶⁾
- 이를 위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형식의 데이터 집적, 정보보안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선택엔진 개발자들이 스마트공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장애요인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kiri**

4) Thaler and Tucker(2013, 1~2), "Smarter Information, Smarter Consumers", *Harvard Business Review*.

5) <https://www.brightscope.com/> 및 <http://www.gocompare.com/money/midata/>.

6) 정부3.0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개방·공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시사점

오승연 연구위원, 김미화 연구원

요약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무·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전체 장기요양 기관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법안의 통과로 그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리목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심사 및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허위·부당청구가 감소하고 기관의 재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한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개정법률에서 제시한 인건비 지급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5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음.

-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재무·회계기준 적용 대상 기관을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확대, 둘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급, 셋째, 3년마다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실시 등임.

■ 동 개정안의 통과로 그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심사 및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이 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개설된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은 영리목적의 개인 기관들임.¹⁾

1) 이처럼 개인 기관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관 설립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한 결과임.

- 개인 기관은 전체 재가요양기관의 80.2%(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²⁾
-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법인 기관보다 더욱 빈번하게 허위·부당청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11년 97억 원에서 2014년 178억 원으로 증가하였음.³⁾
- 현지조사의 조사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의 비중을 보면 개인 기관(83%)이 법인 (55.6%)보다 훨씬 높음(<표 1>참조).

(표 1) 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별 부당청구 유형

(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	현지조사 기관 수	부당기관 수(%)	조사기관 청구금액	부당금액(%)	기관당 부당금액
합계	921	665(72.2)	480,581	17,833(3.7)	27
개인	558	463(83.0)	206,413	10,270(5.0)	22
법인	363	202(55.6)	274,168	7,563(2.8)	37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3. 3),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 적발”.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개정법률에는 요양급여의 일정부분을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 동안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은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정부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요양급여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음.
- 요양급여 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비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건비가 하향 수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개정법률에서 제시한 인건비 지급규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⁴⁾
 - 더불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ri**

2) 선우덕(2015. 11. 30),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9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3. 3),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 적발”.

4)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해 수급자 및 가족의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는 요양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의 시사점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한도규제의 폐지를 입법예고함. 이번 규제 변화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명확하게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개정안 중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폐지이며, 수익제고·자산투레이션 확대·위험분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파생상품 거래한도 폐지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 활성화 및 수익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동일 법인 발행채권·주식 소유한도 폐지와 동시에 RBC제도에 집중리스크를 반영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는 지금보다 더욱 분산하여 투자할 가능성이 높음. 사후적 규제 패러다임 하에서 보험회사는 더욱 엄격한 자산운용원칙 준수와 체계적이고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 ■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한도규제의 폐지를 입법예고함.
 - 동일 법인 발행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폐지 예고함.
 - 단, 대주주·계열사에 관한 자산운용 한도규제와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한도규제 변경
- ■ 이번 규제 변화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명확하게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도규제의 폐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보험회사의 다양한 자산운용전략 실행 및 리스크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폐지이며, 수익제고·자산투레이션 확대·위험분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는 국내 저금리 환경 극복을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이미 일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비중은 현행 30% 한도에 육박한 상태임.

- 일부 선진국의 장기금리가 더 높은 현상¹⁾ 및 다양한 투자대상 존재로 확대 추세 지속 예상
- 2000년대 초반부터 저금리 환경에 직면했던 대만 생명보험회사들도 2015년 8월 말 기준 55.7%²⁾까지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림으로써 자산다변화 확대 및 운용수익 제고

■ 파생상품 거래한도 폐지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 활성화 및 수익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에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이용한 적극적 리스크관리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한도규제였음.

- 특히, 국내 대형 보험회사는 글로벌 보험회사³⁾와 같이 파생상품을 이용한 다양한 금리·신용·주식 리스크관리 전략을 실행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동일 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폐지와 동시에 RBC제도에 집중리스크를 반영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는 지금보다 더욱 분산하여 투자할 것으로 보임.

● 향후 RBC 요구자본 산출 시 집중리스크가 반영될 경우, 위험대비 기대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분산 투자하는 것이 자본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게 될 것임.

- 미국 RBC의 경우 상위 5개 보통주에 대해서는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채권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산투자 유인을 높임.

■ 사후적 규제 패러다임 하에서 보험회사는 더욱 엄격한 자산운용원칙⁴⁾ 준수와 체계적이고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 해외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국가별 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환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거래 위험 등 위험 종류별로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kiri](#)

1) 한 예로서 국제 30년물의 경우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70bp 가량 높은 상황임.

2) Reuters(2016. 1. 20), "Fitch: Rising Interest Rates to Ease Taiwan Life Insurers' Negative Spreads".

3) Castries and Claveranne(2010), "Derivatives: an insurer's perspective", *Financial Stability Review* 참조.

4) 보험업법 제104조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익성 확보 및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함.



울산 지진과 국내 지진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지난 5일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과거 문헌에 따르면 국내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6.8%에 불과하고 지진 손해를 보상하는 공공·민간 보험 가입 실적 이 미미함. 미국, 터키, 일본 등은 지진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정부 당국은 지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고려한 지진보험 제도 도입과 지진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지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난 5일 울산 해역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5위 수준인 규모¹⁾ 5의 지진이 발생했음.²⁾

- 규모 5의 지진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부실한 건물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음.³⁾
- 울산 지진 발생 이후 주변 지역에서 상수도관 파열, 싱크홀 발생 등의 피해가 지진의 여파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⁴⁾

■ 과거 문헌에 따르면 한국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어 국내에서 강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⁵⁾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지진은 재발 주기가 길어 최근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⁶⁾

1) 리히터 지진계에 기록된 지각의 진동 수치를 기준으로 측정된 지진 규모이며, 이하 동일한 기준임.

2) 기상청 보도자료(2016. 7. 5), “울산 동구 동쪽 해역지진 발생 현황” 참조.

3) 기상청 기상백과(<http://web.kma.go.kr/communication/encyclopedia/list.jsp?schText=%C1%F8%B5%B5>) 참조.

4) SBS 뉴스(2016. 7. 7), “지진 여파?... 상수도관 터지고, 땅도 꺼진 부산” 참조.

5) 기상청(2012),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 참조.

- 예를 들어 1989년 미국 북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미화 60억 달러 피해 발생⁷⁾)은 동 지역에서 발생한 1906년 대지진(미화 61.9억 달러 피해 발생⁸⁾) 이후 83년 만에 발생한 것이었음.

■ 국내에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내진설계⁹⁾가 적용된 건물 비중은 낮은 편임.

- 한국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1980년대에 들어서야 도입하기 시작해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중이 낮음.
 - 전국 건축물 중 6.8%, 서울시 건축물의 26%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음.¹⁰⁾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험의 판매 실적은 매우 저조함.¹¹⁾

- 지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의 2014년 현재 계약건수와 보험료가 각각 12,036건, 115.6억 원 수준임.¹²⁾
- 민간보험회사가 화재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2014년 현재 계약건수와 보험료가 각각 2,187건과 8천 4백만 원으로 화재보험 가입자 중 0.14%만이 동 특약에 가입함.

■ 현재 국내에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 건물에 대해 지진 및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¹³⁾

- 따라서 지진 및 붕괴 리스크가 큰 건물에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6) 기상청은 1978년부터 지진 관측을 시작했음.

7) USGS, San Andreas Fault, "Comparison of the Bay Area Earthquakes: 1906 and 1989" 기준 금액.

8) 2015년 기준 환산(https://en.wikipedia.org/wiki/1906_San_Francisco_earthquake) 참조.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은 시설물이 정해진 지진파의 가속도에 대해 이를 견뎌내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음.

10) YTN(2016. 7. 7), "“국내 지진안전 건축물 6.8%에 불과”... 부산·대구·서울 최하위권”; TV조선(2016. 4. 20), “대피소 엉망, 내진 설계는 부족 ‘서울 지진 무방비’” 참조.

11) 보험개발원, 「2015년 손해보험 통계연보」 참조.

12) 2012년 ‘풍수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진피해 담보가 풍수해보험에 포함되었음. 현재 정부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85% 보조해 줌.

13) 최창희(2016), 「붕괴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참조.

■ 미국, 터키, 일본 등은 자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진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⁴⁾

- 미국의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는 민간보험회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진 리스크를 주정부가 CEA를 통해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지진보험 가입현황은 2013년 보험료 규모 기준으로 약 미화 16억 달러에 달함.¹⁵⁾
- 터키는 모든 주택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진보험 리스크를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라는 보험풀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민간보험회사인 Garanti Sigorta가 동 보험풀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터키는 지진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지진 피해에 대비하고 있음.
- 일본은 임의보험인 지진보험을 민간손해보험회사가 모집하고 보험 리스크를 손해보험회사, 재보험 회사, 지진재보험회사, 정부 등이 분산해 보유하는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지진보험 가입현황은 가입건수 기준으로 2014년 1만 6,489건이고 가입 보험금액 기준으로 약 143조 엔 규모임.¹⁶⁾

■ 정부당국은 다음과 같이 지진 리스크 관리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아래와 같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진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 지진보험과 같이 민간보험회사들이 모집,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국가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터키의 지진보험과 같이 지진보험과 기금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과 노후 건물에 대해 지진 및 붕괴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kiqi**

14) 이기형(2016), “주요국 지진보험 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지진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 최창희(2016), “한국의 지진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 개선 방안”,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6년도 제1회 정책 세미나 자료 참조.

15)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2015 Insurance Factbook」 참조.

16) 일본 보험료산출기관 통계(http://www.giroj.or.jp/disclosure/toukei/toukei_h26_02.pdf) 참조.



비전속 채널에 대한 감독규제 개편 필요성

박선영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추세 속에 전속 채널 일변도의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규모가 큰 특정보험모집인(대형 GA와 유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 대형 비전속 대리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 일본 사례는 판매 채널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큼. 비전속 채널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전속 채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비교 추천 근거 서면화 의무 등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를 제안하는 바임.

- 우리나라에서 최근 규제 사각 지대에 있는 비전속 채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대형 판매 채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우리나라에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대리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대형 대리점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2/4분기 기준 전체 보험대리점 4,721개 가운데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대리점은 46개사, 소속 설계사 100~499명인 중형 대리점 수는 143개사임.
 - 이 가운데 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대리점은 10개사로 이들 소속 전체 설계사 수가 6만 4,217명에 이룸.

- 전속 채널 위주의 감독규제 환경 속에서 대형 비전속 대리점의 경우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중사자의 한 형태로 전속 설계사 등과 동일한 감독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음.
 - 보험업법상 모집중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자(보험업법 제2조 제12호)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등을 지칭함(보험업법 제83조 1항).

- 비전속 대리점의 경우 전속 설계사와 달리 복수 보험회사의 상품을 제시하고 비교 추천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가 크에도 전속과 비전속을 구분하는 분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비전속 채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대형 비전속 대리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큼.

- 일본 개정 보험업법(제303조)은 “규모가 큰 특정보험모집인”을 명시하여 처음으로 법률상 대형 보험대리점제도¹⁾를 도입하고 이들을 금융청의 직접 감독 대상으로 포섭함.²⁾
 - 이밖에 복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비전속 대리점에 대해서는 비교 추천 시 특정상품을 제안하는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서면화하도록 함.³⁾

■ 우리나라에서도 전속 채널 위주의 감독 정책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확대된 비전속 채널이 규제 사각 지대에 놓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일본 사례를 토대로 판매 채널제도 개편을 검토할 수 있음.

- 전속 대리점과 비전속 대리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비전속 대리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비교 추천 근거 서면화 의무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향과 계약내용 합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서면화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이 같은 기록은 향후 고객과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시비를 가리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kiri**

1) 우리나라의 대형 GA와 유사함.

2) “규모가 큰 특정보험모집인” 즉, 대형 특정보험대리점의 기준(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36조의 2)은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15개 이상 체결한 대리점, ② 둘 이상의 소속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소비세 제외)와 보수 등 기타 대가의 총액이 10억 엔 이상인 자(전속 대리점은 제외) 등이 해당됨.

3) 일본 개정 보험업법 제294조의 2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와 의향파악의무를 일컫음.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는 뇌전증 환자로,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나 이상사고를 냈으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함. 이로써 경찰이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의심해 볼 만한 기회를 상실함. 「도로교통법」상 경찰신고의무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채 보험처리로 종결됨.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를 걸러내는 방안으로 교통사고 경찰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경찰인력 부족 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 되는 교통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최근 부산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는 뇌전증 환자로,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이상사고를 냈으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함으로써¹⁾, 경찰이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의심해 볼만한 기회를 상실함.

-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운전면허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가진 자는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결정함(법 제88조).
 - 동법에 따르면 뇌전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임(법 제82조, 시행령 제42조).
 - 수시적성검사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가운데 운전이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가진 경우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함.
-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이나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정신질환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음(법 제90조).
 -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적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이 이에 해당함.

1) 중앙일보(2016. 8. 2),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광란의 질주 운전자 뇌전증 환자?…과거 3차례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찰신고를 의무로 규정하지만, 신고 없이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교통사고가 2014년 기준 약 80%(905,822건)에 이릅니다.²⁾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 등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함.
- 그러나 1991년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일지라도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함.
- 대법원 판례 이후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중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신고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보험처리로 종결하는 경향이 있음.

■ 「도로교통법」 제82조의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는 비정상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경위 파악을 통해 가해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및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음.

- 최성혜 외(2014)에 따르면, 치매진단을 받은 운전자 272명 중 1년 후에 108명에 대해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환자가 59명(54.6%)에 이릅니다.³⁾
- 일본에서는 고령자·치매 환자의 역주행 등으로 인한 이상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⁴⁾

■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인식하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⁵⁾, 이러한 방안의 비용이 적지 않음.

-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함(법 제89조 제1항).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정신질환 또는 시력 장애로 징집 면제된 자,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자 등이 있음.⁶⁾

2)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포함하면 교통사고 신고율은 더 낮아짐.
 3) 최성혜 외(2014), 「치매 환자들의 운전실태: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 연구」, 『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vol. 13 no. 4, pp. 83~88.
 4) MBC(2016. 1. 16), “日 고령화에 ‘치매 운전’ 늘어...75세 이상 운전자 치매검사”.
 5) 연합뉴스(2016. 8. 2), “警, 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 확대한다”.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관련 별표4.

- 민감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수시적성검사 대상 확대는 사생활 침해의 비용이 따름.
 - 2002년 경찰청은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총 진료일수가 180일 이상인 환자들의 의료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한 바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감한 의료정보 공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찰청장 징계까지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치매, 정신질환, 뇌전증, 알콜중독증 등이 있는 자는 편견과 불이익으로 인해 질환은폐 및 진료 기피 경향이 있어, 민감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수시적성검사 대상 확대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따르면, 2011년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7.6%, 진료율은 15.8%임.⁷⁾
- 아울러, 수시적성검사의 대상보다는 검사내용이 적격성을 가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법상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제도를 점진적으로 활성화하여 사고이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를 걸러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찰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와 경찰 간 사고정보 공유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함. [kiri](#)

7) 보건복지부(2011), 『2011년도 정신질환 역학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역사업 보고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함으로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로 인해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인명경시풍조가 만연해졌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부분 개정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고, 대물사고에 대해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음.
 -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소가 제한되고, 예외적인 경우¹⁾에만 기소가 가능함.
 - 교특법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교특법에 의한 기소 제한으로 인해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피해자 보호도 오히려 약화되며, 인명경시풍조 등 교특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 사상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재물손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특법에 의해 기소가 면제됨.
 - 교통사고 가해자는 마땅히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특법으로 인해 교통사고 범죄가 사실상 비범죄화됨에 따라 물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 결국, 교특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1) 예외적인 경우는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기타 11개 중대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임.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안전교통포럼에서 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2016년 7월 20일)된 바 있으며, 동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됨.

- (제1안) 교통법 전면 폐지 방안
 - 교통법을 전면 폐지하되, 전과자 양산, 사법기관 업무 증가, 종합보험 가입유인이 사라짐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발생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 상해의 정도가 경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방안, (ii) 경미한 사건에 적용할 간이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iii)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이원적 책임²⁾을 유지하되 책임보험금 한도(1억 5천만 원)를 상향하거나, 자배법의 배상 한도를 “모든 손해”로 통일하여 일원화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마련
- (제2안) 종합보험 면책을 물적 피해에 한정하는 방안
 - 도로교통법 제151조³⁾ 위반 시, 즉 대물사고의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제한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제3안) 전치 2개월 이상 등 중상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방안
 - 현행 교통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보다 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 (제4안) 처벌 특례조항을 확대하는 방안
 - 현재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구역(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하는 방안

■ 교통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인 바, 교통법의 입법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에 대한 폐지·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 독일, 미국은 교통사고 범죄를 다른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교통법과 유사한 제도는 찾아보기 어려움.⁴⁾

2) 현행 자배법은 일반 자동차와 여객 운송용 자동차 등을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한도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음.

3)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일본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형법 제211조)로 처벌하고 있고, 독일은 형법상 과실치사죄(형법 제222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30조), 교통위험죄(형법 제315조c), 음주운전죄(형법 제316조)로 처벌하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형법에 의해 중죄로 처벌하고 있음(박상식(2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p. 116 참조).

- 우리나라도 1982년 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동법에 대한 위헌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⁵⁾, 기소가 면제되는 특례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음.
- 교통법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도입된 것이나, 현재는 대부분의 자동차 보유자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특례법의 입법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통법을 폐지 내지 개정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교통법 전면 폐지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도로교통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형법 규정의 실효성을 회복하고, 교통사고, 특히 인명 사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법의 폐지 내지 개정이 필요함.
- 다만, 교통법 전면 폐지는 수사기관의 업무 폭증 및 전과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전면 개정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부분 개정이 바람직함.
- 이러한 개정은 일반 예방적 효과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kiri](#)

5) 현재 1997. 1. 16. 90헌마110결정(합헌), 현재 2009. 2. 26. 2005헌마764결정(위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이 보험금 지급에 미칠 영향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9월 30일 시행 예정임. 특별법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보류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보험금 지급지체가 가능한 합법적인 사유가 현행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것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의 명문화 및 확대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짐.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의 적용 및 구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 바,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를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오는 9월 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종전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법정형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벌금형 상한이 상향된 정도에 불과함.²⁾
 - 보험사기죄에 대해 기존 형법상 사기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벌금 상한을 5천만 원으로 높이고,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다소 강화함.
 - 상습범과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이는 기존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분리하여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9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9월 30일 발효 예정임.

2)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함(특별법 제2조 제1항).

■ 특별법은 보험금 지급보류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대한 범위 확대 (현행 보험약관 규정 대비)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임.³⁾

- 「상법」 제658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함.
- 다만, 현행 생명·실손·질병상해 보험약관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의 경우
 - 보험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⁴⁾
- 더불어,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합법적인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정되는 사유가 다음과 같이 현행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것보다 확대됨.⁵⁾
 -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경우
 -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 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⁶⁾
 - 기타 보험금 청구가 다른 보험금 청구건에 비추어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와 함께, 특별법은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함.

- 특별법 제1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⁷⁾

3) 금융위원회는 2016년 6월 2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 충분한 의견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 시행 예정임.
 4) 특별법 제5조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2조.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특별법 제6조 제1항).
 7) 특별법 제15조.

■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의 명문화 및 확대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현행 약관상으로 보험금 지급 보류가 가능하나 민원 발생 또는 여론 악화 등의 부담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관련 조사 및 수사 중인 경우에도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후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조사기간 및 재판기간 중에 보험금을 소진해버리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려서 환수에 어려움을 겪음.
-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는 제한적임.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계약자 등과의 쌍무관계에서 약관규정을 근거로 계약자 등의 동의하에 보험사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관계자의 진술서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⁸⁾, 이로써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 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 여부를 오판하여 수사의뢰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 적용 및 구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를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 바,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kiri**

8) 「보험업법」 제162조.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조재린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IFRS4 2단계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함. 국내 보험회사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제안은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수용한다면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10월 한국회계기준원(KAI)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함.
 - IFRS4 2단계는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회계기준으로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도입 시 부채가치 증가, 재무변동성 확대 등 보험회사 자본관리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IFRS4 2단계 도입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최종 기준서는 2017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3년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도입시기는 2021년으로 예상
 - 따라서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요청이 수용된다면 IFRS4 2단계 도입시기는 현재 예상보다 2년 연기된 2023년이 될 것으로 전망
- 국내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의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 현재 국내 주식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회사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함.¹⁾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K-IFRS 적용 회사의 범위에 속함.²⁾
- K-IFRS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고 있음.³⁾

■ K-IFRS의 제정·개정(이하 '제정')절차는 크게 'IFRS 제정 참여' 단계와 'IFRS 채택절차' 단계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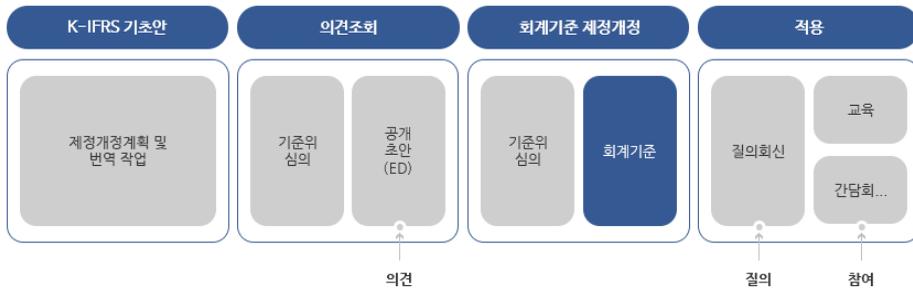
- 'IFRS 제정 참여' 단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 제정 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제시하는 단계임(〈그림 1〉 참조).
 - IFRS 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필요 시 국제 공조 추진
- 'IFRS 채택절차' 단계는 'IFRS 제정 참여' 단계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확정된 IFRS 제정안에 대해 번역 작업 및 심의 과정 등을 거쳐 K-IFRS를 채택하는 절차임(〈그림 1〉 참조).

〈그림 1〉 K-IFRS 제정개정 과정 1: IFRS 제정 참여



주: PIR(Post Implementation Review): 사후이행검토.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그림 2〉 K-IFRS 제정개정 과정 2: IFRS 채택절차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1) 외부감사법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의 2조(회계처리기준의 적용).
 3) 외부감사법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제4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IFRS4 2단계 도입 연기에 대한 요청은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번 제안을 수용한다면 IFRS4 2단계 도입 연기는 ‘IFRS 채택절차’ 단계 이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관련 법 개정 및 IFRS 전면도입국 지위 변화 없이 도입 연기가 이루어짐.
 - 이번 제안의 수용여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결정함.
-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제안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수용한다면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제안은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IFRS4 2단계 최종 기준서 확정 이후 도입시기 연기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제적 신인도 하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의 도입시기 연기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kiri](#)



대형 법인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실효성 제고방안

변혜원 연구위원, 박선영 연구위원

요약

최근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음. 동 조치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소비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금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항목 및 형태의 표준화, 고객익향파악 및 비교추천사유 기록 의무화 등의 보완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대형 법인대리점 영업행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상품비교가능성 제고 및 특정 회사상품 구매 강요행위의 금지조치가 마련될 예정임.¹⁾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했던 상품비교설명제도를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확대 적용함(2017년 4월 1일 시행).
 - 상품비교설명제도란, 대리 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또한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기준을 마련하였는데,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²⁾

■ 동 개정 규정은 대형 법인대리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감소시키고, 독립대리점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상품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 동 조치는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2015. 8. 27)”의 연장선상에 있음.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9. 27),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2) 이 밖에도 보험회사와 대형 법인대리점 간의 부당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함.

-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방안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의 순서로 제시됨.
 - 기존 판매채널 규제가 대형 법인대리점과 일반 전속설계사 간의 특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대형 법인대리점의 특성을 반영한 판매채널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금번 조치가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의 필요가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상품비교설명 의무 이행은 소비자의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첫째,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태와 항목으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보험상품 선택을 위해 비교해야 할 핵심 비교항목을 정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에도 보험료, 보장위험, 상품의 장·단점 등을 가지고 상품비교를 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항목이 있지는 않음.
 - 단기간적으로 저축성 상품 비교는 방카슈랑스에서 사용하는 항목들을 참고하여 핵심 비교항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보장성 상품 비교에 보장범위지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³⁾
 - 장기적으로는 판매자가 조건검색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상품들을 선정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핵심 비교항목 정보도 검색 플랫폼이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집적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비교상품 중 특정 상품을 추천권유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최근 독립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추천한 상품들 중에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함(보험업법 제294조1항,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의2조3항4호)⁴⁾.

3) 보장범위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보장금액이나 보장기간 등 보장수준이 높은 보험상품일수록 보장범위지수는 높아짐.
 (보장범위지수) = $\frac{(\text{해당 상품의 순보험료})}{(\text{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

-
- 영국 감독규정도 보험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소비자의 의향과 필요를 확인하고 의향확인서(statement of demands and needs)를 제공하도록 함(ICOBS 5.2.2).
 - 투자형,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적합성보고서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 추천권유 여부, 추천권유를 한 경우 해당 상품의 추천사유를 기재하여야 함(COBS 9.4.7). **kiri**

4)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판매채널에 대해 소비자의 의향을 파악하고 소비자가 이에 맞는 보험상품을 구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향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보험업법 제294조의2).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음. 환류세제의 내용은 기업소득을 가계로 이전시키고 이전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당기순익에서 투자, 임금인상분, 배당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금이 과도할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하지만, 보험회사 소득에 대한 환류세제 적용은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세제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보험회사의 현금보유에 대한 과세는 미래 위험에 대비한 충분한 지급여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회계연도에 법인세 부과 시 납부환류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공제 방식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企業所得 還流稅制, 이하 “환류세제”)가 시행 중 임.

- 환류세제의 핵심은 당기순익의 일정액을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잉여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임.
- 환류세제의 도입목적은 투자, 임금 인상, 배당 증대를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함임.
 - 기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배당 등의 형태로 가계로 되돌아가도록 하여 국민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임.

■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특성에 따라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과세대상기업은 기업 특성에 따라 아래 과세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 ㉠ [당기순익 × 60~80%(α)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 ㉡ [당기순익 × 20~40%(β)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 기업의 특성상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 방식을,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투자로 인정되는 항목은 차량, 운반구 및 기계장치 그리고 업무용 부동산 등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개발비 상표권 등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됨.
-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한 유·무형의 고정자산 활용 비중이 크지 않은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환류세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 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큼.
- 또한, 고용자 우위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환류세제 적용의 효과가 임금 상승보다는 투자 혹은 배당 확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보험회사 소득에 대한 환류세제 적용은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세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 향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안전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특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은 고정자산에 투자하여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함.
- IFRS17 회계기준 강화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추가부담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함.
 - 보험회사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내에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급여력 및 회계기준 강화로 인해 보험회사 자본 확충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불식시키기 위해 환류세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납부한 환류세액에 대해 차기 회계연도 법인세 부과 시 동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공제(tax carry forward)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을 위한 자본금 보유는 제조업의 재고 확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류세 납부액을 지급여력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kiri](#)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임준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실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이전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실을 분담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부재함. 반면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를 가지고 있음. 해외사례 가운데 비례형의 일본식이나 절충형의 캐나다식 등이 향후 국내 손실분담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시 참고해볼 만한 방식임.

■ 지난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상품 자유화 조치로¹⁾ 인해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그 결과 경쟁력이 취약한 보험회사의 시장퇴출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보험산업 퇴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볼 것이 필요한 시점임.

■ 퇴출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시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도산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모든 손실을 부담케 하는 것인데, 이는 보험소비자의 정보획득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방안임.

● 반대로 극단적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전혀 손실분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²⁾

1)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발표를 통해 보험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고, 그 동안 상품개발이나 상품가격 결정 등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사전규제들을 폐지 내지 완화 하였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0. 19).

2) OECD(2013), "Policyholder Protection Schemes: Selected Considerations",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 보험계약자가 전혀 손실을 부담하지 않게 되면 건실한 보험회사를 선택할 유인이 없어져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됨.

- 따라서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되, 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일정 부분은 보험계약자도 분담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등에 담겨져 있음.

- 우선, 예보법은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되는데, 이 법에 의하면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자에게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³⁾
- 이러한 예보법의 통합적인 손실분담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보험상품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첫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방식에 해약환급금과 지급보험금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현행 5,000만 원 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기준에서 보면 너무 낮은 수준임.⁴⁾
 - 두 번째 문제점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도산하면 보험계약을 종료하고 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대신에 도산하지 않은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⁵⁾ 예보법에는 계약이전 방식과 관련된 조항이 없음.
- 한편, 금산법에는 금융당국이 계약이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을 포함한 계약이전의 구체적인 조건 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없음.⁶⁾

■ 주요국의 경우 보험계약자 손실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생명보험에 국한하여 소개하고자 함.

- 손실분담제도의 유형은 아래 표에서처럼 정액형과 비례형, 그리고 절충형(정액형+비례형)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31.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4) 주요국의 경우 지급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경우를 구분하여 한도를 설정함.

5)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기간 중간에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되어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또는 심지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음. 왜냐하면 이전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비해 연령이 높아짐으로써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하기 때문임.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우선,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 정액형 방식인데,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지급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경우를 구분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임.
 - 계약이전 시의 계약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개별 건별로 상황에 따라 손실분담 정도가 달라짐.⁷⁾⁸⁾
-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삭감비율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캐나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커질수록 삭감비율이 증가함.
 - 단순한 형태를 띠는 비례형의 일본식은 규제집행비용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면, 절충형의 캐나다식은 정책수용도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표 1〉 주요국의 생명보험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

구분	유형	구체적 내용
미국(뉴욕주)	정액형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30만 달러까지,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10만 달러까지 보장
일본	비례형	이전대상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의 최소 10%를 삭감한 후 계약이전 (즉,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 비율은 최소 10%)
캐나다	절충형	종신보험인 경우 사망보험금은 20만 캐나다 달러와 보험금의 85% 가운데 큰 금액을 보장, 해약환급금은 6만 캐나다 달러와 환급금의 85% 가운데 큰 금액을 보장

자료: OECD(2013), "Policyholder Protection Schemes: Selected Considerations",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31.

■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보험회사 가운데 여러 곳이 도산하였는데, 도산 보험회사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 없이 계약이전을 하였고, 그 비용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조달하였음.⁹⁾

- 만약 계약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험계약자 손실분담 방식이 사전에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IMF 당시처럼 보험계약자 손실분담 없이 부실 보험회사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음.

7) 류근옥(2010), 「보험회사 파산 시 선진국 예금보험기관의 보험금지급 사례 연구」, 『금융안정연구』, 제11권 제1호, pp. 55~97.

8) 미국의 경우 계약이전 시의 손실분담 방식은 정액형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액형이라고 볼 수 없으나, 금전 지급 시의 지급한도는 법에 구체화되어 있지만 계약이전 시의 삭감비율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정액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9) 즉, 부실 보험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다수 국민의 세금을 통해 도산비용을 조달함.

-
- 왜냐하면, 보험회사 도산 이후 금융당국이 부실 정도를 감안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 삭감 비율을 결정할 경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사전에 계약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손실분담 방식의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비례형의 일본식이나 절충형의 캐나다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kiri](#)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

최창희 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 완화, 위자료 상향 조정 등 제조물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따라 PL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들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부합하는 PL보험상품을 개발해 시장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일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이 PL보험¹⁾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하여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음.

● 2016년 11월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세류에게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동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하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²⁾

■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되었음.³⁾

-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의 3~1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수배상임.
- 입증책임 완화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원고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해 주어 소송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임.⁴⁾

1) 제조물 관련 손해배상책임(PL)을 보상하는 보험을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이라 함.
 2) 조선일보(2016. 11. 16), “소송 이기고도 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참조.
 3) 백재현(2016. 5. 30), 김관영(2016. 6. 8), 최명길(2016. 6. 29), 오제세(2016. 7. 1), 조정식(2016. 7. 21), 한정애(2016. 7. 21), 서영교(2016. 8. 5) 등이 대표 발의;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참조.
 4) 예를 들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15)은 피해자가 1. 해당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을 보인 경우

- 대법원은 올해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가중된 위자료⁵⁾를 부과하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⁶⁾을 발표하였음.
 - 제조물 사고와 같이 영리적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 위자료를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영리적 불법행위에 가중사유⁷⁾가 있을 시 6억 원을 가중(총 9억 원 부과)

■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따라 PL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경제주체들의 수익 변동성을 증가시켜 리스크 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관련 보험 수요를 증가시킬.
 - 일본 법원은 2005년 이후 자전거 사고에 대해 높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했는데 2008년 이후 5년 간 연간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25% 감소하였고 관련 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⁸⁾
 - 손해배상책임이 강한 미국의 2012년 1인당 연간 민사 손해배상액은 한국의 32.3배이고, 1인당 연간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한국의 35.8배 수준임.⁹⁾
- 따라서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따라 PL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들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부합하는 PL보험상품을 개발해 시장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PL보험 약관에 통상의 손해를 초과하는 가중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본담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일반 제조물 사고¹⁰⁾를 보상하는 PL보험의 경우 배상금액 상향에 따라 요율을 조정해 동일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음.
- 만일 PL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보험회사들은 가중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 중 피고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의 손해배상 발생을 인정하는 입증책임 완화를 제안했음.

- 5) 이하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부과되는 위자료를 ‘가중된 위자료’라 지칭하기로 함.
- 6) 대법원 보도자료(2016. 10. 24),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참조.
- 7) 고의, 중과실,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불법행위, 영리에 따른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해당 재화·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재화·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 8) 2005~2013년 사이 일본 법원은 자전거 사고 피고에게 4~1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했음; 최창희·정인영(2015),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IV장, p. 90 참조.
- 9) 2012년 한국과 미국의 1인당 손해배상액은 각각 12,800원, 413,420원이었고 1인당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각각 10,200원, 365,040원이었음; 최창희·정인영(2015), p. 62 참조.
- 10) 가중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

- 보험은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므로 가중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보험 담보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¹¹⁾
- 단, 과거 금융위원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보험에 대해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서 보험계약자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 판매를 허용한 사례가 있음.¹²⁾
- 또한 보험회사들은 한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외국 회사들의 보험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영문약관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수출기업들은 대부분 상품이 소비되는 지역에서 PL보험을 가입함. **kiqi**

11)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음; 김동훈(2011), 『보험론』, 학현사, p. 39.

12) 금융위원회(2015), 「신용정보법」 제43조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 제공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fsc/index.do>) 참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형태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확대 보장 특별약관’으로 판매하고 있음.

3. 고령화

- | | |
|--------------------------------------|---------|
| 1.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 허용 검토에 관한 소고 | 정원석 |
| 2. 자녀 없는 부부가구와 의료비지출 | 이정택 |
| 3. 한국의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건강위험요인과 시사점 | 오승연 |
| 4.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최근의 논란 | 정성희 |
| 5.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 | 류진식 김동경 |
| 6. 통합연금포털의 현황과 평가 | 김세중 김유미 |
| 7. 표준하체 연금보험 도입 필요성 | 김석영 이선주 |
| 8. ISA 판매 현황 분석 | 정원석 |
| 9.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의 공동행위 관련 쟁점 | 이승준 |
| 10.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납부기간 확대 방안 | 최장훈 |
| 11. 국민연금 대납자 소득공제 법안의 시사점 | 최장훈 |
| 12.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 허용과 그 영향 | 정원석 |
| 13.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 | 강성호 |
| 14. 정부의 최근 저출산 대책 평가 | 오승연 |
| 15. 연금저축 가입 현황과 맞춤형 세제 지원 필요성 | 정원석 |
| 16.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평가와 과제 | 정성희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 허용 검토에 관한 소고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2015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납입시 300만 원까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이에 반해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공무원 및 사학연금 개혁으로 인해 저소득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연금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금개혁에 따른 특수직역연금액 감소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보전하여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상대적으로 특수직역연금 수령액이 낮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 추가납입을 통해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14년까지 사적연금가입자는 연금계좌로 분류되는 DC형 퇴직연금계좌와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의 본인 기여금에 대해 최대 400만 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아 왔음.
 - 예를 들면,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200만 원 그리고 DC형 퇴직연금계좌에 200만 원을 불입할 경우 두 계좌 납입액의 합인 총 400만 원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았음.
- 2015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DC형 퇴직연금계좌 혹은 IRP계좌에 그리고 연금저축을 합친 연금계좌의 본인기여금 세제혜택 한도가 700만 원으로 확대되었음.
 - 단, 연금저축만의 세제혜택한도는 4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IRP에 본인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 700만 원 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200만 원 그리고 DC형 퇴직연금계좌에 2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인의 IRP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세 계좌 납입금액의 합인 700만 원에 대해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증가한 2015년 IRP 적립금 납부를 통해 적립되는 퇴직연금 추가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여타 납입방식의 추가적인 적립금액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올해부터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형 IRP계좌의 추가적립금의 규모는 전 분기 대비 최대 186% 성장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퇴직연금가입자들은 추가적립을 위해 개인형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15년 9월의 경우 개인형 IRP 추가적립금 납입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15년 12월에는 연말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위한 추가적립금 납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제도 유형별 퇴직연금 추가적립금 증감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DC형 퇴직연금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금액 합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4.12월	146	-	5.7	-	248	-	400
'15.3월	127	-13	2.3	-59.6	709	185.9	839
'15.6월	119	-6.3	4.3	87	1,091	53.9	1,215
'15.9월	119	-0.3	8.3	93	1,104	1.2	1,232

자료: 금융감독원, 각 분기별 퇴직연금 영업실적 보고서 재구성.

■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민들은 IRP를 이용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자영업자의 경우 2017년부터 IRP 가입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IRP를 이용하여 노후자금을 준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¹⁾
 - 퇴직연금제도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의무화되어 모든 근로자는 IRP 가입이 허용됨.
 - 미국·일본 등의 경우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는 물론 공무원연금의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개혁과 함께 공무원의 IRP 가입을 허용하였음.

■ 본고에서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이 가입하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 허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1) 공무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2조1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근로기준법 2조1항)가 아닌.

- 이하 본고에서 지칭하는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자를 지칭함.
- 특수지역연금 가입자의 IRP를 통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지역연금 가입자의 연금급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많다고 보기 때문이나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일정부분 해소되었음.
 - 특수지역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진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
 - 과거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낮은 기여율과 높은 연금지급률²⁾을 적용 받기 때문에 IRP 가입 허용을 통한 추가적인 세제혜택 부여의 당위성은 낮았음.
 - 하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입한 일반국민(이하, 일반 가입자)과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일정부분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가입자의 기여율은 증가하고 연금지급률이 감소하여 일반 가입자와 공무원 가입자 간 차이가 완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가입자의 기여율은 17.3%(국민연금+퇴직연금)인데 반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기여율은 18% (개혁 후)로 증가함.³⁾
 - 본인부담금 기준으로는 일반가입자 4.5%, 공무원가입자 9%로 공무원의 본인부담금 수준이 더 높음.
 - 연금지급율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1\% + \beta$ (수익률에 따른 값)이고,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7% 수준으로 감소하여 사적연금을 이용한 추가적인 노후소득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약 40%는 월 2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⁴⁾
 -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지역연금의 수익비⁵⁾ 측면에서의 “국민연금+퇴직연금” 대비 비교우위는 감소했으며, 직업안정성 및 장기가입으로 인한 상대적 장점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2016년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 근무시 예상되는 연금액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177만 원, 9급의 경우 134만 원 수준으로 감소⁶⁾하였고 이에 따라 공무원 역

2) 연금지급률이란 해당 연금에 1년 가입했을 때 증가하는 소득대체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연금지급률이 1%인 국민연금에 1년 가입할 경우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1% 포인트 증가함.

3)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16년}16% → ^{17년}16.5% → ^{18년}17% → ^{19년}17.5% → ^{20년}18%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됨.

4)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2014. 10. 7).

5) 수익비 = (수령한연금의 현재가치/납입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

시 사적연금을 이용한 추가적인 노후소득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 지급개시연령, 유족연금 등 여타 소득보장 기능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혁되었음.

〈표 2〉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 가입자 비교

대상자 연금	일반국민		공무원		비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혁 전	개혁 후	
기여율	9%(4.5%)	8.3%(0%)	14%(7%)	18%(9%)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기여율 차이가 거의 없어짐
연금지급률	1%	수익률에 따름	1.9%	1.7%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다르나 지급률의 차이 역시 줄어들거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
수급개시연령	65세	55세	60세	65세	수급개시연령 동일
유족연금	60%	없음	70%	60%	유족연금 지급률 동일
소득재분배기능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 존재

주: 괄호안의 숫자는 본인부담비율임.

■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 측면에서의 비교우위가 일정부분 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측면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IRP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무원의 IRP 가입 허용 대상은 예상연금 수령액이 적은 최근 공무원 임용자 및 하위직 공무원부터 점진적으로 IRP 가입 허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등은 IRP 가입 허용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 또한,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kiri](#)

6) 인사혁신처(2015), “공무원연금 이렇게 바뀔니다”.



자녀 없는 부부가구와 의료비지출

이정택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 가구 구조는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의료비 지출 특징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이 자녀 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임. 이러한 관계에 따르면,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자신들을 부양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건강유지를 위해 의료 소비를 많이 하고, 노년의 의료비를 위해 저축 및 민간의료보험·간병보험·장기요양보험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 우리나라는 최근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1990년 4.5%에서 2010년 15%로 증가하였고,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는 57.3%에서 37.0%로 감소함.¹⁾
- 이는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2025~2030년에는 2000년대 중반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연구보고와 일맥상통함.²⁾

■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자녀 있는 부부가구 대비 높은 수준의 의료비 지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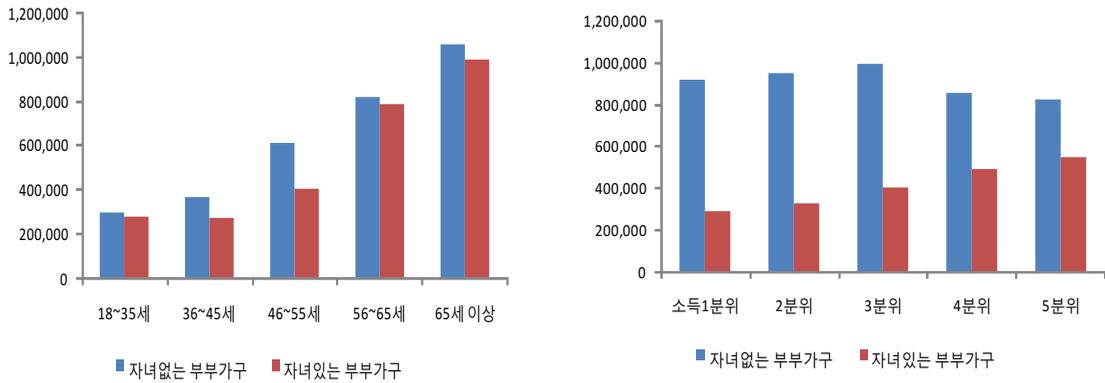
-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평균 923,792원, 자녀 있는 부부가구는 평균 461,220원 각각 지출함.³⁾
-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자녀 있는 부부가구보다 크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가구 소득 분위별로 볼 때,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자녀 있는 부부가구보다 높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남.⁴⁾

1) KOSIS 국가통계포털.

2) OECD(201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3) 2012년 의료패널을 이용하였고 연간 개인의료비 구성항목은 응급·외래·입원 의료비와 의약품비로 구성됨.

〈그림 1〉 의료비 지출 비교: 자녀 없는 부부가구와 자녀 있는 부부가구



자료: 2012 의료패널.

■ 이는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자녀 부양을 위한 소비 대신 자신을 위한 소비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일 수 있음.

- 36~55세까지 자녀에 대한 소비지출 부담이 큰 연령에서 두 가구사이의 의료비 격차는 큼.
- 자녀 있는 저소득층은 자녀 소비지출 부담으로 자신을 위한 의료소비를 줄이는 반면, 자녀 있는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자녀 부양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의료지출을 많이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증가할수록 민영의료보험 수요 또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노년에 자식이 없어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의료지출을 많이 하고, 노년의 의료비를 위해 저축 및 민영의료·간병·장기요양보험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 따라서 저출산·만혼에 따른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증가 추세는 의료비 지출과 민간의료보험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kiri**

4) 소득 1분위 계층은 최하위 20%, 5분위 계층은 최상위 20%에 속하는 소득 계층임.



한국의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건강위험요인과 시사점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질병부담은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임. 한국에서 식습관,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행태적 위험이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신진대사적 위험이 건강행태적 위험보다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행태적 위험을 관리하는 건강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함.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우리나라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을 초래하는 건강위험요인의 1, 2, 3위가 식습관, 음주와 약물 복용, 흡연으로 모두 건강행태적 위험(behavioral risks)인 것으로 나타남.¹⁾

- 질병부담은 WHO가 정의한 개념으로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이나 장애로 줄어드는 수명연수와 건강생활연수를 집계한 수치로 질병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임.²⁾
- 건강위험요인에는 건강행태적 위험 외에도 신진대사적 위험(metabolic risks)³⁾과 환경·직업적 위험(environmental/occupational risks)이 있는데, 우리나라 10대 건강위험요인에 낮은 신체 활동 수준을 포함하여 5가지 건강행태적 위험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10대 건강위험요인 중 건강행태적 위험이 전체 질병부담의 34.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신진대사적 위험이 29%를 차지함.

1)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 Institute of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가 국가별 질병부담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가장 최근의 결과는 2013년 기준임.

2) 질병 발생 건수나 사망 건수만으로는 질병에 의한 실제부담을 잘 표현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질병 발생 건수로 감기 100건과 암 100건은 동일한 수치지만 그 사회적 부담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

3) 신진대사적 위험은 인체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분 섭취, 에너지 생산 및 배설의 과정이 원활히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위험요인들을 말함.

■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에서는 신진대사적 위험요인이 질병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일본의 경우 신진대사적 위험이 전체 질병부담의 24.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건강행태적 위험이 20.8%를 차지함.
- 식습관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남.

〈표 1〉 한국과 일본의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건강위험요인 Top 10

순위	한국			일본		
	건강위험요인	유형	비중(%)	건강위험요인	유형	비중(%)
1	식습관	○	11.6	식습관	○	12.3
2	알코올 및 약물복용	○	9.6	수축기 고혈압	△	9.0
3	흡연	○	8.5	흡연	○	8.6
4	수축기 고혈압	△	7.1	높은 공복혈당	△	5.7
5	높은 체질량지수(BMI)	△	7.1	알코올 및 약물복용	○	5.1
6	높은 공복혈당	△	6.6	높은 체질량지수(BMI)	△	4.7
7	대기오염	□	2.9	낮은 신체활동 수준	○	3.0
8	낮은 신체활동 수준	○	2.8	낮은 사구체여과율(GFR)	△	2.6
9	직무상 위험	□	2.3	대기오염	□	2.5
10	아동 및 모성의 영양실조	○	2.1	높은 콜레스테롤	△	2.3

주: 1) ○: 건강행태적 위험, △: 대사적 위험, □: 환경적·직업적 위험.
 2) 위험요인의 비중은 전체 시간적 손실 중에 각 요인이 초래한 시간적 손실의 비중을 의미함.

■ 건강행태적 위험을 관리하여 이로 인한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 건강행태적 위험은 학력이나 직업 계층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건강생활습관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됨.⁴⁾
- 최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또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kiri**

4) 김동진 외(2015),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최근의 논란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인상 근거로 사용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첫째, 실제 경험 통계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둘째, 보험상품의 손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내포함. 보험회사의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합산비율, 건강보험공단 방식 모두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율을 활용할 수 있으나, 포함되는 비교 대상 변수를 정확히 적용하여야 불필요한 논란을 축소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된 것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사용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분석 결과 2014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총보험료¹⁾ 기준 손해율은 80.2%(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 96.6%)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 제시한 손해율이 과다하다고 주장함.²⁾

■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 경험 통계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보험상품의 손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

- 첫째, 건강보험공단이 인용한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참조 통계를 근거로 하여 가공된 수치로, 실제 위험보험료보다 과대 계상된 수준임.
 -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인위적으로 억제되어 왔기 때문에 경험 통계에 기반한 위험보험료가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³⁾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기인함.

1)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의 재원이 되는 부가보험료를 합한 금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보고서(보건사회연구원(201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 방안』)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건강보험공단이 손익을 판단하기 위해 산출한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총보험료”이나, 정확한 기준인 “(지급보험금+실제 사업비)/총보험료”⁴⁾를 적용해야 함.
 - 자동차보험을 예로 보면, 2014년 총보험료 기준 손해율이 88.5%이나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이익을 시현했다고 평가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비 지출금액까지 포함한 합산비율은 108.3%로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됨.

(그림 1) 손해율 및 합산비율 산출방식 비교



■ 보험회사의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상기의 기준 모두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손해보험업계 13개사,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2014년도 실적 기준⁵⁾).

-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은 122%로 산출되어 공단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료 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보험금 지급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실제 지급보험금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 실손의료보험의 합산비율은 부가보험료를 모두 집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18%, 단독실손의료보험의 실제 사업비 집행률⁶⁾을 적용할 경우 무려 130%대로 추정됨.
- 건강보험공단 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02%로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구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손해율, 합산비율 등 다양한 비율을 활용할 수 있으나, 포함되는 비교 대상 변수를 정확히 적용하여야 불필요한 논란을 축소할 수 있을 것임. [kiri](#)

3) 보험업계 통계에 기반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위험률.

4) 합산비율이 100% 이상이면 보험상품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

5)	위험보험료	총보험료	지급보험금
	13,942억 원	16,590억 원	16,971억 원

6) 2014년 기준 175.5%,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가입 시 보장내용 설명, 중복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판매비 및 보험금 지급 시 실손보상을 위한 조사비용, 갱신안내비용 등을 위해 높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타 상품보다 사업비 집행률이 높음.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선임연구위원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여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 동 제도 도입 시 투자운용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하는 수탁자의 권한은 증대되어 엄격한 수탁자책임이 요구됨. 미·일 보험회사들은 수탁자책임 강화에 따른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국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기금형 제도 도입과 연계된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이 신탁법상 신탁의 형태로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됨.
 -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실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개정안에서는 노·사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방향 등을 결정하며, 자산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러한 기금형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운용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하는 수탁자(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권한이 증대됨에 따라 엄격한 수탁자책임(Fiduciary Liability)이 요구될 것임.
 - 이에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찍이 기금형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에리사(ERISA)법에서는 신중한 관리자 원칙(Prudent Man Rule)에 기초하여 수탁자¹⁾에게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수탁자책임에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수탁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함.
 - 이와 더불어 신중한 관리자 원칙(주의의무)을 위반한 수탁자를 보호하거나 책임을 경감하는 수탁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모두 무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 특히, 수탁자가 수탁자책임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연금급부보증공사 등 정책당국뿐 아니라 근로자나 수급권을 가진 퇴직자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 규정은 개인의 경우 수탁자책임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수탁자 행위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는 정부로 하여금 연금수급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임.

■ 이러한 수탁자책임 강화 등으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사례²⁾가 빈발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제공함.

-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AIG, Chubb, Hanover 등이, 일본에서는 손보재팬(Sompo Japan) 등이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위험을 인수하고 있음.
 -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손해보험의 통일된 표준약관보다는 Hanover 등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는 주요 손해보험회사가 자사의 약관을 개발·사용하는 형태임.

〈표 1〉 미·일의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내용 비교

구분	미국	일본
피보험자 범위	· ERISA법상에서 규정된 수탁자	· 사용자, 기금관리기관 등 수탁자
담보손해 (불법행위)	· ERISA법상의 수탁자책임, 제도관리상의 과실, 부적절한 공시 등	· 수탁자의무 위반, 경영상 오류, 태만, 사무착오 및 누락 등
보상범위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을 보상한도로 보상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등
보상한도액	· 보험계약금액	· 1사고 당 3억 엔, 1억 엔, 5천만 엔 중 택일

자료: Hanover 및 손보재팬(2015).

■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는 미·일 등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금형 제도와 연계된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kiri](#)

1) 미국 등은 수탁자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지명 및 신탁수탁자, 펀드매니저 등)는 모두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일본의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사례로는 일본 방직업 후생연금기금 소송, 동경실업 후생연금기금 소송 등을 들 수 있음.



통합연금포털의 현황과 평가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금융감독원은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는 통합연금포털이 개인의 종합적인 노후 대비 수준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는 원래의 취지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됨. 향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이 보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추가적인 연금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회적인 정보 확인보다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16년 4월부터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함.¹⁾

- 이번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 개시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사적연금 정보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 시기,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음.
 - 동시에 국민연금공단 내 “내연금” 사이트에서도 사적연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통합연금포털은 그동안 공적연금과 연계되지 않아 종합적인 노후 대비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공단, 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연금가입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며, 2016년 4월 말 현재 약 1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며, 퇴직연금·개인연금 관련 정보는 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 등이 구축한 사적연금 DB를 통해 제공됨.
- 통합연금포털은 포털 가입자와 연금정보 제공기관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만을 중개하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현황과 함께 적립금, 예상연금액 등의 정보를 가입자에 제공함.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4. 1),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
- 2016년 4월 말 현재 통합연금포털 가입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2015년 말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2016년 4월 말까지의 누적 조회자 수는 약 66만여 명으로 나타남.²⁾

■ 연금가입 정보 제공 확대는 통합연금포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통합연금포털은 제한적인 시뮬레이션 방식과 연금정보를 제공한다는 한계점을 지님.

- 스웨덴의 경우 개인이 연금수익률, 임금상승률, 연금수령나이 등을 바꾸면서 추정연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함.³⁾
 - 통합연금포털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수익률은 세 가지 시나리오, 개인연금수익률은 두 가지 시나리오의 선택이 가능하며, 개인연금은 연금개시 연령 가정 변경이 제공되지 않음.
- 덴마크의 경우 연금포털과 연금취급자 간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여 연금사업자가 재무컨설팅 및 상품안내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⁴⁾
 - 통합연금포털은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주택연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통합연금포털도 해외사례를 참고한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이용자의 실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와 같이 추정연금액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 외에 세제비적격 연금상품과 주택연금 등 추가적인 연금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개인의 적절한 연금가입정보 확인 빈도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공적·사적 연금 관련 제도 및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알림을 통해 연금정보의 재확인 유도가 가능할 것임. [kiri](#)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5. 13), “5월 13일부터는 통합연금포털에서 사학연금 정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보건복지부(2011. 12), 『公·私연금 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고려대학교.

4) 금융위원회(2013. 12),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표준하체 연금보험 도입 필요성

김석영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요약

최근 유병자 보험이 활성화되면서 표준하체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연금보험은 판매되지 않고 있음. 2013년 말 기준 주요 만성질병 유병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유병자의 생존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표준하체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표준하체 연금상품은 요율산출 및 상품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회사가 개발에 소극적임.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표준하체 연금상품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상품 설계가 필요함.

■ 최근 유병자 보험이 활성화되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표준하체¹⁾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음.

● 보험시장이 포화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층 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 보험상품(고혈압, 당뇨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등)이 개발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 주요 만성질병 유병률은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고 있으며 유병자의 생존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표준하체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60대의 절반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술의 발달로 중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생존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가 일반적인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보다 양호한 사람들의 사망률을 적용받아 불리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므로 연금가입을 기피할 수 있음.
-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40대 29.6%, 50대 25.0%, 60대 12.2%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률이 하락하고 있어 연금가입 활성화를 위해 표준하체 연금보험의 개발이 필요함.

1) 유병자와 같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 정상적인 사람보다 건강상태가 떨어지는 상태인 사람.

〈표 1〉 2013년 기준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단위: %)

유병률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폐쇄성폐질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40대	28.5	10.7	10.2	4.4	12.1	8.0	6.2	0.8
50대	41.3	30.6	16.3	9.0	13.5	26.8	14.9	3.7
60대	48.5	48.8	28.5	22.1	18.8	34.5	36.7	10.8

자료: 보건복지부, 2013 국민건강통계.

■ 표준하체 연금상품 개발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율산출 및 상품개발의 어려움과 요율 변동성이 매우 높아 보험회사가 개발에 소극적임.

- 기존 연금상품에 불만이 있던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음.
- 그러나 표준하체의 정의에 맞는 경험자료 부족으로 정확한 연금사망률 산출과 새로운 언더라이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한 가지 질병에 의한 표준하체로 한정할 경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 질병에 의한 표준하체로 정할 경우 정확한 사망률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 기존과 다른 언더라이팅이 요구됨에 따라 새롭게 언더라이팅 체계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의료기술 발달에 의한 수명연장은 유병자에게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의 장수리스크는 정상체의 장수리스크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의 상대생존율²⁾의 경우 1993~2013년 동안 남성은 31.9%에서 58.2%, 여성은 51.7%에서 67.3%로 증가하여³⁾ 유병자의 수명연장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표준하체 연금상품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상품 설계가 필요함.

- 장수리스크와 표준하체의 범위 설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연금사망률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2)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을 추정한 것으로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관찰생존율을 일반인구의 기대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임.

3) 국가암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ISA 판매 현황 분석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ISA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 10주가 지나고 금융업권별로 가입형태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은행 고객은 신탁형 가입형태를, 증권회사 고객은 상대적으로 일임형 가입형태를 각각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보험회사는 ISA 판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ISA 판매로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정부는 올 3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였는데, 동 계좌는 계좌 내 금융상품 이동이 자유롭고 만기 해지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ISA 도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각 금융업권에서 ISA 가입이 시작되어 약 10주가 지난 현재 업권별로 시장점유율과 가입형태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표 1〉 ISA 가입 현황

(단위: 명, 억 원, 원)

구분	신탁형			일임형			합계		
	가입자 수	금액	인당 금액	가입자 수	금액	인당 금액	가입자 수	금액	인당 금액
은행	1,695,145	10,370	611,747	104,286	944	905,203	1,799,431	11,314	628,754
	90.80%	67.00%	-	74.40%	79.30%	-	89.70%	67.90%	-
증권	170,075	5,088	2,991,621	35,902	247	687,984	205,977	5,334	2,589,610
	9.10%	32.90%	-	25.60%	20.70%	-	10.30%	32.00%	-
보험	991	14	1,412,714	(미취급)			991	14	1,412,714
	0.10%	0.10%	-				0.00%	0.10%	-
합계	1,866,211	15,471	829,006	140,188	1,191	849,573	2,006,399	16,662	830,443

주: ISA가 출시된 3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주간 가입현황임.
 자료: 금융투자협회 보도참고자료(2016. 5. 23), "ISA 가입현황" 재구성.

- 첫째,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은행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증권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가입자 수 기준으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약 90%로 여타 금융업권을 압도하고 있음.
 - 이는 6,420개¹⁾에 이르는 은행 지점 내방고객에 대한 마케팅에서의 우위 때문으로 보임.
 - 증권회사의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약 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인당 가입금액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일인당 가입금액은 증권회사가 258.9만 원으로 은행 62.8만 원의 4배 이상인데, 이는 금융투자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증권회사 ISA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둘째, 가입형태에서는 본인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할 수 있는 신탁형을 선택한 고객이 금융회사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맡기는 일임형을 선택한 고객보다 많았음.
 - 가입자의 93%가 신탁형을 선택했으며, 일임형의 경우는 은행 고객보다 증권사 고객이 선택한 비중이 높았음.
 - 고객들은 증권사에 자산운용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셋째, 보험회사의 경우 현재 2개사²⁾가 ISA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ISA 가입 확대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장점유율은 가입자 수 기준 0.01% 미만, 금액기준 0.1%로 미미한 수준임.
 - 이는 ISA 판매로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ISA 판매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임.
 - ISA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탁 판매자격 획득³⁾ 및 전산 설치비용 투입 등 상당한 고정비용이 지출됨.
 - 반면, ISA 개선을 위해서는 고객이 보험회사의 지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접근성 측면에서 타 업권에 비해 불리함.

- 현재 보험회사는 ISA 가입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나, 간접투자 및 자산관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ISA 제공에 관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함.
 - 향후 고객의 니즈 변화 및 ISA 시장 확대 추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kiri](#)

1) 금융감독원(2015), 『은행경영통계』.

2) 미래에셋생명과 삼성생명.

3) 현재 신탁판매자격을 갖춘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5개사, 손해보험회사 1개사임.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의 공동행위 관련 쟁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움직임이 있음. 그러나 표준약관 변경이 금융감독 목적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그 취지 내에서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에 따랐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는 행정당국 또는 감독당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부 시술이 보장에서 제외되자, 보험회사의 담합 여부를 의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됨.¹⁾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레이저 시술이 보장에서 명시적으로 제외²⁾되자 개원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임.
- 본고는 최근 이루어진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변경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담합) 관점에서 살펴보고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여부를 고찰해 봄.
 - 보험약관은 보험업법에 근거한 상품규제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며, 금융감독원이 그 내용을 정하는 표준약관은 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 목적을 위하여 약관내용을 표준화한 것임.
-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개별 법령의 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필요최소한의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1) Doctor's News(2016. 5. 18), “비급여 실손보장 축소... 범정부 논의 착수”.

2) 질병·상해 손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간주)로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변경함.

- 단, 과거 판례³⁾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근거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표준약관 변경이 금융감독 목적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그 취지 내에서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그 원인으로 비급여 의료비 비중 증가⁴⁾ 문제가 지적되자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손해율을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보임.
- 이번 표준약관 변경은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여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⁵⁾과 정책방향이 일치함.

■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따르는 행위와 별도로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 여부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음.

- 표준약관 변경 과정에서⁶⁾ 보험회사들이 자신들 사이의 의사교환 내지 합의 내용을 감독당국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청원하는 경우, 이를 부당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는 행정당국 또는 감독당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표준약관 변경의 주체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약관 변경 이전의 단순한 청원행위만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임.
- 미국의 경우도 노어-페닝턴 면책이론에서 경쟁자가 공동으로 법 제정 또는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순수한 청원⁷⁾이나 로비⁸⁾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더라도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함. [kiri](#)

3) 대판 2006. 11. 23. 2004두8323, 대법원은 손해보험회사들의 긴급출동 폐지 공동행위가 보험업법에서 인정한 상호협정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함.

4) 보험개발원(2016. 2), 「실손의료보험 통계분석결과 및 시사점-비급여 의료비 청구 및 지급실태 중심」, 『CEO Report』, 2016-01.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5. 18),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개최”.

6)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 변경 시 보험회사나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음.

7) Eastern Railroad Presidents Conference v. Noerr Motor Freight, Inc., 365 US 127(1961).

8) United Mine Workers v. Pennington, Inc., 381 US 657(1965).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납부기간 확대 방안

최장훈 연구위원

요약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 4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질소득대체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의 실제가입시점의 지연과 납부 예외 등에 기인함. 따라서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 연장, 추후납부와 크레딧제도 등 기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¹⁾ 4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질 소득대체율²⁾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표 1) 참조).

-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최대납부가능기간의 절반수준에 해당되는 실질납부기간을 적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임.
 - 예컨대, 1957년생의 경우 최대납부가능기간을 29년으로 가정하고 산출된 소득대체율은 43.6%이지만, 실질납부기간인 11.7년을 토대로 산출된 실질소득대체율은 19.4%임.

〈표 1〉 출생연도별 예상 실질소득대체율

(단위: %)

출생연도	1955~59	1960~64	1965~69	1970~74	1975~79	1980~
최대납부가능기간 ¹⁾	29년	34년	39년	42년	42년	42년
소득대체율 ²⁾	43.6	49.1	54.4	55.9	52.1	49.9
실질납부기간 ³⁾	11.7년	14.9년	18.5년	22.3년	25.6년	26.7년
실질소득대체율 ³⁾	19.4	22.5	26.2	29.5	30.7	29.8

주: 1) 최대납부가능기간은 출생연도별 중앙값을 기준으로 계산함(예, 1957년생의 최대납부가능기간=국민연금제도 시행연도인 1988년도 연령인 31세에서 59세까지의 기간).

2) 소득대체율은 최대납부가능기간을 국민연금 연금액산식에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3) 최기홍·신승희(2014),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의한 계층별 특성치의 통계적 추정』, 국민연금 연구보고서.

1)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급여액의 비율.

2)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대체율.

■ ■ 실제납부기간이 최대납부기간보다 짧은 이유는 국민연금의 실제가입시점 지연과 납부예외 등에 기인함.

- 국민연금의 가입시작연령은 18세로 보고 있으나 실제 가입시점은 이보다 상당히 늦어져 실질적인 납부기간이 줄어들음.
 - 고등교육의 확대(대학·대학원 진학)로 청년기의 일정부분을 적용제의 상태에서 보냄.
 -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취업률의 감소로 납부기간 확대에 기여하지 못함.³⁾
- 국민연금 가입을 하더라도 고용불안정 등으로 상당부분을 납부예외상태⁴⁾에서 보냄.

■ ■ 따라서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 연장, 추후납부와 크레딧제도 등 기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늦어진 가입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가입기간을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에 맞추어 연장하도록 조정한다면 실질소득대체율 상승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임.
 -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나, 의무가입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59세를 유지하고 있음.
- 추후납부제도⁵⁾의 보완을 통해 납부예외상태에 있었던 기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추후납부의 경우 실제로 납부한 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계산하고 있으나, 납부해야 했던 과거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면 추후납부제도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임.
- 출산·군복무크레딧⁶⁾제도 강화로 국민연금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출산크레딧은 현 둘째 자녀 이상에서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도록 범위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⁷⁾
 - 군복무크레딧은 현 6개월에서 병역의무기간의 반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kiri](#)

3) 우혜봉·한정림(2013),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이력과 급여수준 분석』, 국민연금 연구보고서.
4)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태임.
5) 추후납부는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6)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12~50개월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7) 실제로, 현행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1인당 3년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7월 법안 발의된 상태임.



국민연금 대납자 소득공제 법안의 시사점

최장훈 연구위원

요약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대납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적연금시장은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동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 사적연금시장 안정을 위한 세금 혜택 확대, 그리고 새로운 세수 확보 및 정부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임.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대납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세법 등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음.
 -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로서,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 등임.
 - 최근 20대 국회에서 임의가입자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이러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특히, 임의가입자의 약 80%가 여성이므로, 전업주부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은퇴 후 남편의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같이 살기에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동 방안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논란과 사적연금시장의 축소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인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형평성 논란을 유발시킬 수 있음.
 -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경우 임의가입자의 최소 월 납입보험료인 89,100원에 과세표준 세율 15%(24%)를 적용하더라도 1인당 연 16만 원(26만 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¹⁾
 -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연 16만 원(26만 원)의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사적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환으로 사적연금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가입자 소득공제 법안은 사적연금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
 - 사적연금 가입자의 감소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동 법안의 목적을 퇴색시킬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동 법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 사적연금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혜택 확대, 그리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임.

- 동 방안은 근로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해 동 법안에 소득공제와 보험료 지원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료 지원금 선택권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사적연금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연금계좌의 연 7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 세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세수 확보와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층의 감소로 정부 재정지출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장·단기적 입장에서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kiri**

1)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짐. 2015년 3월 기준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최저 8만 9,100원에서 최고 36만 7,2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 허용과 그 영향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자산 운용 및 연금수령 선택범위가 한층 다양해짐. 또한 최근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금 수령 시 종신형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종신형 연금 수령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보험회사로 이동할 수 있어 생명보험회사는 지급기 연금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금계좌 이체 관련 법률 규정이 개정¹⁾· 시행되어 만 55세 이상 은퇴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²⁾과 세제적격 연금저축³⁾ 간 적립금 이전 시 과세이연이 허용됨.⁴⁾

● 이러한 법률 개정은 과세이연을 허용하여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임.⁵⁾

■ 동 법률 개정 이전에는 IRP의 노후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이를 일시금 인출로 보아 적립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하였음.

● 예컨대, 은행의 IRP에 있는 적립금을 종신형 연금 수령을 위해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경우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연금저축 적립금을 IRP로 이전할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기타소득세(세율 15%)를 과세함.

●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고용주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율 6~38%의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본인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였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4 제2항 신설.

2)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조기퇴직할 경우 은퇴 시점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운용하고 은퇴 시점에는 퇴직연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능을 하는 계좌임.

3) 연금저축은 연금자산 확보를 위해 개인이 임의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며, 세제혜택을 제공함.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7. 13),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5) 국가법령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신·구법 비교 설명.

- 연금저축에서 IRP로 자금 이전 시에도 적립금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인해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연금자산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운용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가입자는 은퇴자산의 운용지시가 가능한 IRP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자산을 모아놓고 본인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반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 운용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금저축을 통해 자산 운용을 금융회사에 일임할 수 있음.

■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을 허용함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수령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음.

-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생명보험회사 그리고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음.
- 하지만,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이 제공할 수 있음.
 - 반면, 여타 금융기관들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제공하는 확정형 연금만을 제공함.

■ IRP적립금을 생명보험회사로 이전 시 걸림돌이던 세(稅) 부담이 사라져,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IRP에 예치되어 있던 적립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로 이동할 수 있음.

- 퇴직급여 대상자의 절반(48%)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⁶⁾
- 또한, 최근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한 연금저축 가입자의 적립금 수령형태를 분석한 연구⁷⁾에 따르면 대다수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종신형 연금 수령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 논문에 따르면 연금지급시기가 도래한 연금계약자의 79%가 종신형을 선택하였음.
-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종신형 연금수령을 원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으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 허용은 가입자의 자산운용과 연금수령에 있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생명보험회사에는 수령기 연금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kiri

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 7. 17), “직장인, 노후대비엔 퇴직급여 중요하지만... 은퇴 전 사용 경험 91.6%”.
7) 이경희(2013), 「세계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지급옵션 선택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2호,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

강성호 연구위원

요약

노후준비가 덜 된 퇴직직전세대에 대한 추가적 연금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납부제도(catch-up plan)’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 50세 이상자에 대해 다른 연령층보다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연금자산 축적을 강화하여 왔음. 이러한 점에서 퇴직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따라서 우리나라도 퇴직직전세대에 대해 추가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현행 연금세액공제 대상금액(연간 700만 원)을 증액하거나 여기에 적용되는 공제세율을 높여주는 탄력적 세제정책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노후준비가 덜 된 퇴직직전세대(베이비부머와 50세 이상 가입자 포함)에 대한 추가적 연금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부모 및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적 부양부담과 함께 공적 연금의 미성숙, 사적연금의 가입 저조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실정임.¹⁾
 - 이들 세대의 연금 가입률을 보면, 공적연금 86.3%, 퇴직연금 27.9%, 개인연금 51.9%로 공적 연금을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저조하고²⁾ 급여수준 또한 낮음.³⁾
- 또한 베이비부머의 자산구성을 보면, 부동산에 편중되어(부동산 자산 비중 76%, 금융 자산 비중 21%⁴⁾) 노후소득의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⁵⁾

1) 보건복지부 국민인식조사(2011)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중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53.7%로 나타남; 김경아·김현수(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참조.

2) 정경희(2012),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생활 전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조.

3) 공적연금은 미성숙으로, 퇴직연금은 짧은 도입기간과 중도인출 등으로, 개인연금은 낮은 유지율로 인하여 급여수준이 낮음.

4) 통계청(2010), 가계금융조사 원자료.

5) 김경아·김현수(2013); 금재호·송영남·전영준·김병덕·이윤경(2013),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노동연구원.

■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호주에서 시행 중에 있는 퇴직연금의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⁶⁾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추가적 연금자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추가납부제도는 퇴직직전세대인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고, 납부액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미국의 추가납부제도⁷⁾는 두 가지 유형의 코호트⁸⁾와 퇴직연금 형태별로 차등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의 추가납부제도는 50세 이상 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Age 50 + Catch-Up)와 퇴직(65세) 前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Special 457 Catch-Up)로 구분됨.⁹⁾
 - 50세 이상 경제활동자에 대해서는 연간 \$6,000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퇴직(65세) 前 가입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전 3년 이내에 \$36,000¹⁰⁾까지 납부할 수 있음.
- 이 중 50세 이상 경제활동자에 대한 추가 납부액은 퇴직연금 형태별로 차등화됨.¹¹⁾
 - IRA(개인형 퇴직계좌) 중 전통형과 Roth IRA¹²⁾는 연간 \$1,000(2016년)¹³⁾까지 추가 소득공제됨.
 - 401(k), 403(b) 등¹⁴⁾은 연간 \$6,000(2016년)¹⁵⁾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함.
 - SIMPLE(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¹⁶⁾는 연간 \$3,000(2016년)¹⁷⁾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함.

6) 호주의 경우는 'catch-up payments'로 표현하고 있음.

7) 'Part of the Restoring Earnings to Lift Individuals and Empower Families(RELIEF) Act of 2001'에 근거하며, 2002년부터 시행됨(<http://www.money-zine.com/financial-planning/retirement/401k-contribution-and-catch-up-limits/>).

8) 두 가지 유형의 코호트는 '50세 이상 경제활동자인 가입자'와 '63~65세 가입자'를 의미함.

9) https://www.nrsforu.com/iApp/tcm/nrsforu/learning/library/catch-up_contributions.jsp.

10) https://www.nrsforu.com/iApp/tcm/nrsforu/learning/library/irs_rules.jsp.

11)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cola-increases-for-dollar-limitations-on-benefits-and-contributions>.

12) IRA는 이직 시 퇴직연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활성화되었으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공제됨. 이 중 전통형 IRA는 보험료에 소득공제되나, Roth IRA는 보험료가 아닌 퇴직연금에 비과세하는 특징이 있음.

13) 기본 기여한도 \$5,500(2016년)에 추가하여 \$6,500까지 세제혜택을 받음.

14) 401(k)는 일시금 혹은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전형적 퇴직연금이며, 403(b)는 비영리단체의 근로자, 병원단체연합회, 자영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음(홍범교·박수진·정경화(2013),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이러한 401(k)형태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DC형으로 운영되며, 보험료는 소득공제 됨. 여기서 수치와 영문자는 법조항을 의미함.

15) 기본 기여한도인 \$18,000(2016년)에 추가하여 \$24,000까지 세제혜택을 받음(<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contributions>).

16) 10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임(홍범교 외 2013).

17) 기본 기여한도인 \$12,500(2016년)에 추가하여 \$15,500까지 세제혜택을 받음.

■ 호주의 추가납부제도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퇴직연금(superannuation pension) 가입자를 구분하지만, 두 집단 모두에 적용되는 특징이 있음.¹⁸⁾

- 호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액이 \$500,000¹⁹⁾ 이하이면서 연간 한도인 \$25,000를 채우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연간 한도 차액만큼 추가납부(catch-up payments)할 수 있음.
 - 2017년 1월 이후부터 모든 가입자가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기본납부액은 연간 최고 \$25,000이며, 적용세율은 15%로 저율 과세되므로 그만큼 세제혜택이 발생함.²⁰⁾
- 특히, 50세 이상은 \$35,000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나, 50세 미만은 \$30,000까지 가능함.

■ 앞의 선진국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직전세대에 대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추가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가납부제도는 기존의 연금세제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퇴직직전세대의 연금자산 확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퇴직직전세대를 대상으로 현행 연금세액공제 대상금액(연간 700만 원²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공제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안 1] 공제 대상금액인 연간 700만 원²²⁾ 범위 내에서 연령별로 차등적용함(예: 25~35세 400만 원, 36~45세 600만 원, 46~55세 800만 원, 55세 이상 1,000만 원).
 - [방안 2] 공제 대상금액은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제세율²³⁾을 20% 이상으로 함.
 - 단, 역진적 세제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대상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예: 총소득기준 연간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대상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연금수령(예: 최소 1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음. **키리**

18) Budget Submission 2016-2017, SMSF Association(Australia); https://www.australiansuper.com/campaigns/federal_budget_2016.

19) 호주 달러 기준임(이하 동일). 2016년 9월 7일 기준 840.63원임.

20) 호주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18,200까지는 면세되고, \$18,200~\$37,000에서는 최저세율인 19%가, \$180,00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45%가 적용됨(<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

21) 연금저축(연간 400만 원 한도)과 IRP 납부액을 합한 금액.

22) 대상자의 노후보장 수준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5%, 5,5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정부의 최근 저출산 대책 평가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정부는 최근 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긴급보완대책으로 고소득층까지로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둘째 자녀부터의 남성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다자녀 우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출생아 2만 명 + α 대책」을 발표함. 이번 긴급보완대책은 단기간의 출산율 하락에 주목하여 주로 지원금이나 우대 제도와 같이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단기적 출산율 등락에 대응한 정책이 반복되면 근본적 대책이 등한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안정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혼인, 출산,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보다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보완대책으로 「출생아 2만 명 + α 대책」을 발표함.

- 올해 1~5월까지 출생아 수가 18만 2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만 명 감소했음.
- 이번 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① 첫 자녀 장려를 위한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보완(남성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등), ③ 보육 주거 등에서의 다자녀 우대 강화 등이 제시됨.¹⁾

■ 첫 자녀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 의료비를 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지원금 정책의 경우 저소득층만큼 고소득 계층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분명함.

- 설문조사에 따르면²⁾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8. 25), “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히 추진한다.”.

2) 김은정(2013),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의 이유는 소득계층이나 모(母)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출산행태를 고려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음.
-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인데, 애초에 남성의 육아휴직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직장문화에서 수당 인상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여 짐.
 - 육아를 가족의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사회 규범과 직장 문화하에서는 남성들이 육아 휴직 권리를 사용하기 어려움.
 -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남성 육아휴직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진 선례들은 밴드웨건 효과³⁾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긴급보완대책과 같이 단기적인 출산율 등락에 대응한 정책이 반복되게 되면, 장기적 시계를 갖는 근본적 대책이 등한시될 수 있음.
 - 「출생아 2만 명 + α 대책」은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이나 우대 제도와 같이 단기 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안정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혼인, 출산,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보다 근본적 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육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최근 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은 만혼·비혼으로 인한 혼인건수 감소와 자녀 없는 부부가구 증가 등 가족형성 패 턴의 변화로 볼 수 있음.
 - 만혼·비혼의 원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등 고용문제,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등이 있음.
 - 인구정책⁴⁾의 방점이 출산율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인구조절정책에서 고용과 주거 등 인구대응정책 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키리**

3) 어떤 행위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쉽고 빠르게 그 행위나 생각이 전파되는 현상임.

4) 인구정책은 크게 인구조절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구조절정책으로는 가족정책(출산)과 이민정책이, 인 구대응정책으로는 주택, 교육, 고용, 사회보장정책 등이 해당됨.



연금저축 가입 현황과 맞춤형 세제 지원 필요성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최근 연금저축 납입액, 적립금 수령 형태 및 금액 등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음. 그 특징을 요약하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월평균 28만 원으로 적고 수령기간 역시 6.4년으로 짧아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함.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풀이됨. 따라서 연금저축에 충분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령 및 연금저축 납입의사 등을 고려한, 가입자에 특화된 연금저축 세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연금저축 납입액, 적립금 및 수령 형태 등에 관한 현황이 발표되었음.¹⁾

- 발표 자료에는 연금저축 계약건수, 납입액, 적립금 수령 형태 및 금액 그리고 연금저축 총 적립금 규모 등이 수록·분석되어 있음.
- 납입자의 연평균 납입금액은 327만 원²⁾,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28만 원, 그리고 수령기간은 평균 6.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적은 수준의 월 수령액, 짧은 연금수령기간 등으로 인해 연금저축이 국민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수령 형태로는 확정기간 연금수령이 57.3%, 종신형이 33.9%, 기타 1.7%로 발표됨.
 -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 비중이 높고 평균 수령기간이 6.4년에 불과함.
-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금은 월평균 61만 원 수준이며, 이는 1인 기준 노후생활비 99만 원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10. 18),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 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2) 납입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납입금액이 0원인 자를 제외함.

■ 이처럼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기간이 짧고, 수령금액 수준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연금저축 적립금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연금수령자 대부분은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최소 기간인 5년³⁾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 3~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반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됨.
 - 가입자들은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지만 고율의 기타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5년 확정기간형 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연금저축 적립금액이 적으면 이를 긴 기간 동안 수령할 경우 월 수령액이 매우 작아짐.
 - 만약, 현재 적립금으로 5년간 매월 21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 이를 15년간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매월 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긴 기간 동안 수령할 유인이 적어짐.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적립금이 적을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현상은 퇴직연금의 수령방법 선택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됨.⁴⁾

■ 따라서 연금저축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납입의사 및 납입여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납입유인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은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⁵⁾ 가입자의 연령과 소득에 특화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40대와 50대는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노력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⁶⁾ 생애주기상 소득 역시 가장 높은 시기임.⁷⁾
 - 따라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금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2001년부터 5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Catch up plan을 도입하여, 해당 연령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kiri

3) 2013년 3월 이후 가입 전은 연금수령 인정을 위한 최소 수령기간이 10년이지만, 2013년 이후 가입자의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이므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 중 2013년 이후 가입자는 없음.

4) 정원석(2015), 「사적연금 세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연금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5) 정원석·강성호(2016), 「IRP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효과분석」, 『보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6) 보험연구원(2016),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7) 통계청(2016),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KOSIS 통계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평가와 과제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정부는 상품구조 개편, 인프라 정비,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특히, 단독형 의무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보험료 산출원리의 이해 부족에 따른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 침해를 주장하는 것임. 또한, 근본적인 비급여 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과잉진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함을 우려함.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시각차의 적극적인 해소와 함께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협업의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이 요구됨.

- 정부는 상품구조 개편¹⁾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 실손의료보험 인프라 정비,²⁾ 소비자 편익 제고³⁾ 등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마련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⁴⁾
-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상품구조 개편안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함.
 - 상품구조 개편은 도덕적 해이 방지, 계약자 형평성 강화, 보험업계 판매관행 시정 등을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의료기관,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 일부 언론에서 포괄적 보장구조에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기본·특약형 상품구조 개편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약한 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별도 분리·운영하여 과잉진료를 통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자는 취지이므로, 이로 인해 보험료가 더 높아질 개연성은 없음.

1)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비급여 MRI 특약형 분리, 무청구자 보험료 할인제도, 단독형 판매 의무화 등임.
 2) 비급여 표준화·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통계시스템 구축, 보상 자문기구 설치임.
 3) 기존·단체 가입자 전환 제도 마련, 온라인 채널 확대, 청구 간소화 등임.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2. 20); 2016년 5월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7개월간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 운영을 통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심층적 논의 과정 및 정책세미나(2016. 6. 16), 공청회(2016. 11. 28) 등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침.

- 다만, 현재와 같은 과잉진료가 계속될 경우 특약형 보험료는 특약형을 선택한 가입자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때 소비자는 보험료와 보장내역 간 비교 우위를 따져서 특약형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 또한, 그간 대부분 보험회사가 패키지 판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를 만회해 왔기 때문에, 단독으로만 판매할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실손의료보험은 위험손해율에 따라 조정되며, 동 손해율은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되고 있으므로, 판매 방식(특약형, 단독형)에 따라 손해율과 위험보험료가 달라질 이유가 없음.
 - 현재 판매 중인 실손의료보험의 특약형과 단독형 보험료는 동일함.⁵⁾
 - 더욱이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손해를 타 상품을 통해 만회해 왔다면, 이는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험의 수지상등 원칙⁶⁾에도 부합되지 않는 주장임.
 - 예로 암보험의 보험료는 암보험 가입자 간 수지상등 원칙에 따라 산출되어 적용되어야 하는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 만회를 위해 일부 손실이 암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었다면 이는 암-실손 가입자 간 형평성을 침해한 것임.
- 더욱이,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본형에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풍선 효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상품구조 개편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상품구조와 비급여 부분이 서로 결합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부분을 병행하여 개선해 나가야 제도 개선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별도 특약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등 상품구조에서 과잉진료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⁷⁾ 및 공개 확대,⁸⁾ 비급여 적정성 평가체계 등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상충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해소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 의료업계 및 공 · 사 간의 협업을 통한 실효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kiqi**

5) 실손의료보험 특약형/단독형 보험료 비교(남자 40세, 표준형): A생명 15,460원/15,460원, B화재 15,080원/15,080원.

6) 동일한 위험집단에 대해서 보험기간 동안의 수입(보험료 등) 현가와 지출(보험금 등) 현가가 가입시점에서 일치하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원칙을 말함.

7)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 · 명칭 ·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나갈 계획임.

8) 비급여 현황 조사 및 공개 대상을 현재 52개에서, 2016년 100개, 2017년 200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임.

4. 보험경영

- | | |
|---------------------------------------|---------|
| 1. 빅데이터 분석모형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전략 | 기승도 |
| 2. 자동차보험 CM상품 판매증가의 영향 및 시사점 | 기승도 |
| 3. 1인 가구 대상 보험상품 제공 방안 | 김세중 김유미 |
| 4. 최근 국내 재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 | 김석영 |
| 5. 중신보험가입자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전략 | 기승도 |
| 6.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보험산업의 미래 | 김석영 이선주 |
| 7. 1인 가구 증가가 보험수요 감소를 초래하는가? | 임태준 김세중 |
| 8.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발표와 시사점 | 박선영 |
| 9.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증가와 위험관리 | 전용식 이해은 |
| 10. MetLife의 SIFI 지정취소 소송 승소의 의미와 시사점 | 이승준 |
| 11. 알리안츠 한국법인 매각가격 논란 | 전용식 조재린 |
| 12.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보험회사의 진출 기회 | 전용식 채원영 |
| 13.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 | 조영현 이해은 |
| 14. 저성장기 생명보험 마케팅 전략 | 기승도 |
| 15. 금리인하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조용운 정인영 |
| 16.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 | 이기형 김혜란 |
| 17. 보험회사의 중금리 대출사업 관련 고려사항 | 전용식 이해은 |
| 18. P2P보험시장 동향과 시사점 | 김세중 김유미 |
| 19.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본질적 업무 위탁 필요성 | 김석영 이승준 |
| 20.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 | 송윤아 |
| 21. 건강보험의 행동적 해이 개념과 적용 | 오승연 |
| 22. 비급여 관리 관련 논쟁 | 정성희 |
| 23.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최창희 송윤아 |
| 24.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확대와 그 배경 | 조영현 |
| 25.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도입과 과제 | 김세중 |
| 26. 중국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평가 | 정성희 |
| 27.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 제고 필요 | 송윤아 최창희 |
| 28. 인공지능의 보험판매채널 진출 의미 | 김석영 이선주 |
| 2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 방안과 고려사항 | 정원석 |
| 30.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재보험 활용방안 | 김석영 황인창 |



빅데이터 분석모형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전략¹⁾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보험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통계기법(연관법칙분석)을 활용하여 도출한 판매방식을 기존 판매방식에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판매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동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10종류의 생명보험상품 중 재해중점보장보험·종신보험·연금보험과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이 서로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 것으로 분석됨. 이에 생명보험회사는 재해중점보장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질병중점보장보험을 추가로 권유하는 판매전략이나, 상기 보험상품 개발 시에 질병중점보장내용을 포함시키는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시장 포화, 성장동력 소진 등의 영향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요인이 낮아지고 있어, 상품 판매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9.7%²⁾에 달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보험료 규모를 의미하는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도 11.3%(세계 4위)³⁾로 보험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보다 높은 실정임.
- 생명보험회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립한 판매방식을 모집중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판매방식에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판매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호 간에 보완성이 존재하는 상품을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니즈에 맞는 상품조합을 통한 보장성 강화(또는 통합상품 가입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판매효율성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1) 본고는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보험연구원) 중 생명보험 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함.

2) 보험연구원(201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보고서 2015-5, p. 3.

3) Swiss Re(2015), “World insurance in 2014: back to life”, *Sigma* no.4/2015, p. 42.

■ 본고에서는 보험상품 판매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일종인 연관법칙분석(Association Rule Mining⁴⁾) 방법을 활용함.

- 이를 통하여 ‘생명보험상품 중에서 상호 연계성이 높은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상품 판매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함(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

■ 생명보험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을 그 상품의 수만큼이나 많은 이름으로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동 상품들은 종신보험, 질병치료중점보험, 재해중점보장보험, 연금보험 등 대략 10가지 정도로 범주화할 수 있음(〈표 1〉 참조).

〈표 1〉 생명보험 상품 종류

상품 종류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재해중점보장보험, 종신보험,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성저축),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교육보험, 치명적질병보험(CI),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종신보험

주: 동 상품 분류는 소비자가 쉽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도록 복잡한 상품분류를 단순하게 재분류한 것임. 자료: 보험연구원(201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보고서 2015-5, p. 33.

■ 연관법칙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10가지 생명보험 상품유형 중에서 재해중점보장보험,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을 추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표 2〉 참조).

- 재해중점보장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상품을 소개할 경우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을 추가로 구매할 확률이 재해중점보장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경우보다 약 36%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을 추가로 구입할 확률이 각각 16%, 9%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됨.

4) Chengqi Zhang, Shichao Zhang(2002), *Association Rule Mining*, Springer; Agrawal, R., Imieliński, T., Swami, A.(1993), “Mining association rules between sets of items in large databases”, *Proceedings of the 1993 ACM SIGMO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data - SIGMOD '93*, p. 207.

〈표 2〉 연관법칙분석 결과

구분	기존구매상품	추천상품	추천성공률
1	재해중점보장보험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35.98% (1,359790)
2	연금보험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16.10% (1,160991)
3	종신보험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8.79% (1,087907)

주: 1) 본 분석결과는 추천성공률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후 그 값이 1 이하인 경우는 제외시킨 것임.

2) 추천성공률이란 일반 소비자에게 추천상품을 권유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 대비 기존구매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천상품을 권유했을 때 그 상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의 비율임.

■ 위에서 밝혀낸 분석결과를 토대로, 생명보험회사는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 시 소비자들의 생명보험상품 선택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임.⁵⁾

- 생명보험회사는 재해중점보장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을 각각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질병중점보장보험을 추가로 권유하는 판매전략을 활용함으로써 판매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생명보험회사는 상기 보험상품 개발 시에 질병중점보장을 특약 등으로 포함시키는 상품개발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임. [kiri](#)

5) 본 자료는 연관법칙분석을 생명보험 마케팅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본 자료 작성에 활용된 자료는 마케팅 목적에 부합되게 설계된 설문지가 아닌 일반설문지로 수집한 것이며 통계량(1,200부)도 많지 않음. 따라서 생명보험회사가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 CM상품 판매증가의 영향 및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2016년에는 자동차보험 CM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임. CM상품은 가격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CM상품 판매 증가는 가격하락으로 손해율을 높이지만 동시에 사업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결국 전체 자동차보험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단, CM상품 가격인하로 인하여 대체상품별, 회사별 경쟁이 유발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손해율 악화가 경영수지악화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 수년간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약 1조 원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손해보험회사는 CM상품 개발취지에 부합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적절한 경영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5년 하반기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사이트가 오픈되면서 향후 손해보험회사들은 본격적으로 자동차보험 CM상품을 개발·판매할 것으로 예상됨.

- CM상품은 판매수수료 할인 상품으로서 손해보험회사가 기존에 판매하던 TM상품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품임.
-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3가지 유형상품(대면채널상품, TM상품, CM상품)¹⁾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치열하게 상품 및 가격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됨.

■ CM상품 판매는 자동차보험 가격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1) 기존 대면판매채널은 대리점 및 설계사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이고, TM상품은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이며, CM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임.

- 일부 언론에서도 CM상품 판매로 인한 자동차보험 산업의 손해율 상승이 보험회사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의 의견을 보도하기도 하였음.
-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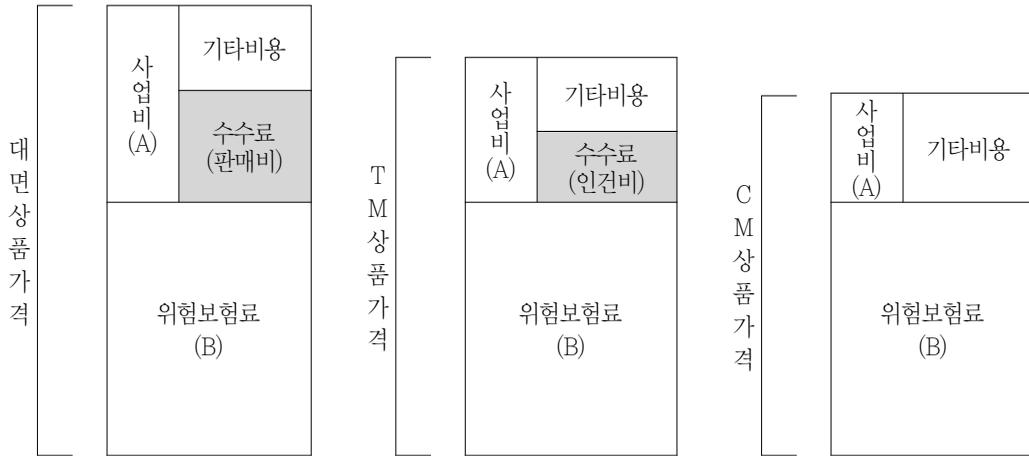
■ CM상품은 기존 자동차보험 상품과 비교할 때 가격을 제외하고는 그 보장내용, 요율구조 등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음.

- CM상품의 보험료는 낮은 사업비(특히, 판매비)때문에 대면채널상품, TM상품, CM상품의 3개 상품 중 가장 저렴함.
 -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대면채널상품, TM상품, CM상품의 순으로 비쌈.
 - 대면채널상품 가격에는 대리점 또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음.
 - TM상품은 판매수수료 중 텔레마케터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사용됨.
 - CM상품 가격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되므로 판매수수료가 거의 반영되지 않음.²⁾
 - 따라서 이들 3개 상품의 예정손해율³⁾은 CM상품, TM상품, 대면채널상품의 순서로 높음.
- 사업비 차이로 인하여 대면채널상품, TM상품 및 CM상품의 예정손해율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합산비율은 모두 “1”로 동일함.
 - 예정사업비율은 ‘사업비÷(사업비+위험보험료)’이므로 예정사업비율이 낮은 순서는 CM상품, TM상품, 대면채널상품 순임.
 - 합산비율은 ‘예정손해율+예정사업비율’로 계산되므로 3가지 상품의 합산비율은 모두 “1”로 동일하게 됨.

2) 실제 상품별 가격은 홍보비, 전산비 등 여러 비용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출되지만 본 자료에서는 3개 상품의 특징인 판매수수료 측면을 부각하여 단순화하여 설명함.

3) ‘예정손해율=위험보험료÷영업보험료’로 정의. CM상품도입이 영업수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제 손해율 지표보다 예정 손해율 지표가 보다 유용한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미래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임. 반면 미래가 아닌 과거 실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손해율이 보다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표 1〉 자동차보험 상품별 특징 및 가격차이



주: 수수료(판매비) > 수수료(인건비)

■ 따라서 CM상품의 판매 증가는 자동차보험 산업 전체 손해율을 높일 것이지만 합산비율은 이전과 동일하므로, 자동차보험 산업 전체의 영업수지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없음.

- CM상품의 판매가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손해율이 높은 상품(CM상품)의 구성비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영업수지의 기준이 되는 합산비율이 변한다는 의미는 아님.
- 즉, 예정손해율이 높은 CM상품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손해율만 증가할 뿐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한 “CM상품의 판매가 증가될수록 자동차보험 산업의 손해율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영업수지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산업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다만,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CM상품의 판매로 상품 간 또는 회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대면채널상품과 TM상품의 가격을 끌어내린다면 전체 자동차보험 산업의 영업수지를 악화시키는 손해율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장 저렴한 CM상품이 경쟁상품인 TM상품과 대면채널상품의 가격조정, 특히 손해율을 반영한 가격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CM상품, TM상품 및 대면채널상품 모두 동일한 상품내용에 가격차이만 있는 상품이므로 이들 3가지 상품은 가격경쟁 상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2000년 초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2001년 진입규제 완화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시장에 출현한 TM상품 때문에 대면채널상품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험이 있음.⁴⁾
- 또한 상품별 가입자 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이 조정될 경우 상품 간 가격경쟁으로 전체 영업수지가 악화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CM상품의 실적손해율이 가장 낮은 경우에는 CM상품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CM상품 가격경쟁력은 올라갈 것임.
 -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대면채널상품 및 TM상품의 손해율이 불변할 경우, 동 상품에 대해 가격인하 조정유인이 없지만 CM상품대비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음.
 - CM상품의 가격인하로 경쟁상품인 대면채널상품 및 TM상품의 가격도 동반하락하면 자동차보험 전체 시장에서 손해율 및 영업수지가 동시에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

■ 그러나 만일 CM상품 도입취지⁵⁾에 부합하게 가격 및 요율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상품 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시장 전체 손해율이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임.

- 예컨대, CM상품의 개발 취지에 맞게 판매수수료 절감형 상품으로 개발하고, 일정기간 경과 이후에도 사업비절감 방식으로 3개 상품이 서로 연동하여 요율을 조정할 경우가 이에 해당
- 상품별로 요율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보험회사 경영진이 상품가격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지 않고 원칙에 부합하게 상품별로 손해율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CM상품이 가격인하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가격정책 수립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시장의 영업수지 적자가 매년 약 1조 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세심한 가격정책이 요구됨.
- 과거 TM상품이 자동차보험료 가격인상을 억제하였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kiri

4) 당시는 TM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대면채널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나뉘어 회사별 경쟁을 했으므로, 저렴한 TM상품가격이 경쟁상품인 대면채널상품의 가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현재 상황은 모든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대면채널상품, TM상품, CM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으므로 당시기와 경쟁여건에 차이가 있음. 즉 2000년대 초 당시에는 회사 간 경쟁이었지만 현재는 회사 내 상품 간 경쟁으로 경쟁구도가 변함.

5) CM상품 및 TM상품은 대면채널상품에서 판매수수료를 절감한 상품임.



1인 가구 대상 보험상품 제공 방안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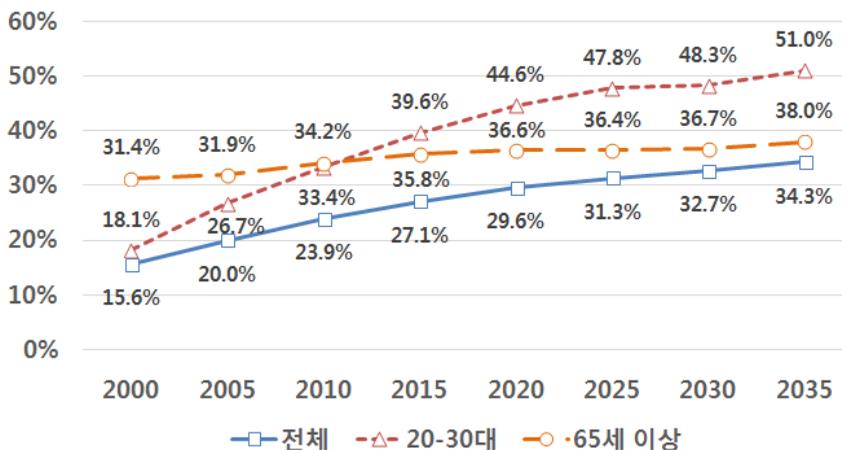
요약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20~30대 저연령 1인 가구는 은퇴 후 노후소득에, 고연령은 의료비 및 장기간병 등 예상치 못한 의료지출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 이들의 보험 구매력을 감안한 맞춤형 보험상품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이들에 특화된 보험상품의 개발도 필요함. 이에 보험회사는 확대되는 1인 가구의 보험니즈를 연령, 소득, 성별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적합한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보험상품 측면의 고려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비중은 27.1%로 2005년 20.0%보다 7.1%p 증가하였으며, 2035년에는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1/3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그림 1〉 참조).
- 연령별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연령과 20~30대의 저연령 모두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기준 30%대 후반이지만, 저연령 가구의 1인 가구비중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 가구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본고에서는 1인 가구 중 특히 저연령 1인 가구와 저소득 독거노인,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그림 1〉 1인 가구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

■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월세 위주의 주거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의식주 관련 필수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의료비 지출 발생 시 기초생활조차 어려울 수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9.5%가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는 62.3%, 30대는 48.4%로 젊은층의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¹⁾
- 가구유형별 소비구성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식료품 지출 비중이 14.0%로 가장 높은 반면, 1인 가구는 주거지출 비중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남.²⁾
 -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4년 기준 80.5%로 일반가구 73.6%에 비해 높음.
- 1인 가구의 경우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소득흐름이 단절되거나, 암과 같은 중대질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출이 발생할 경우 주거 안정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 기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저연령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지출 불확실성과 함께 은퇴 후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며, 고연령의 경우 의료비 및 장기간병 등 예상치 못한 의료지출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임.

1)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census.go.kr/>.

2) 통계청(2014),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

- 저연령 1인 가구의 경우 소득흐름을 상실했을 때 가계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클 것으로 보이며,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질병에 대비하여 소득상실을 담보할 수 있는 정액형 건강보험 수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은퇴 이후 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소득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연금 가입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연령 1인 가구의 경우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자 전용 건강보험 가입 수요가 클 것이며, 치매 등의 경우를 대비한 장기간병보험 수요도 있을 것임.

■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저연령 1인 가구에게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임.

- 현대경제연구원³⁾에 따르면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계층 분류상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⁴⁾은 45.1%로 전체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18.5%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경우 미래 소비를 위한 연금상품보다는 당장의 소득 및 지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 필요할 것임.
 - 대표적 소득상실 위험인 중대질병 및 상해 치료비와 함께 실직에 따른 생활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상품 제공이 필요함.
- 저소득 1인 가구의 보험구매력은 매우 낮을 것이나 기본적인 보장 수요는 존재할 것이므로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선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⁵⁾하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저연령 1인 가구의 온라인 소비 선호를 반영하여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고 저해약환급금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보험료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임.

■ 60대 이상 고연령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에(66.7%)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료가 저렴한 사후(死後)처리 관련 보험 개발도 고려될 수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에 특화된 보험상품도 개발될 수 있음.

- 저소득·고연령 1인 가구의 경우 고독사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독거노인의 사망 시 사후처리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집주인의 독거노인 입주 기피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3) 현대경제연구원(2015), “싱글족(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4) 저소득층은 균등화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의미함.
 5) 일본 AXA가 1인 여성가구를 타겟으로 개발한 “AXA소득보장암보험”을 예로 들 수 있음.

- 일본에서 판매 중인 고독사 보험은 독거노인을 세입자로 둔 집주인이나 독거노인 자신이 가입하며 본인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주택보수비용이나 사후처리비용 등을 보상함.⁶⁾
- 한편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나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귀중품 도난 등에 대한 보험니즈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니즈에 특화된 상해, 도난보험을 제공할 수 있음.

〈표 1〉 연령, 소득, 성별을 감안한 1인 가구 특화 보험상품

구분	중·고소득	저소득
저연령 1인 가구	정액형 건강보험, 개인연금보험	소득보상 중대질병보험
고연령 1인 가구	고령자 전용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사후처리 관련 보험
여성 1인 가구	상해, 도난보험	

■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은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므로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확대되는 1인 가구의 보험수요에 대응하여 1인 가구의 보험니즈를 연령, 소득, 성별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보험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재의 1인 가구 규모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에 뛰어들 만큼 큰 시장이 아닐 수 있고 이들에게 적합한 보험상품 또한 기존에 개발된 보험상품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들을 위한 사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kiri**

6) 이코노미리뷰(2015. 12. 9), “일본 ‘고독사보험’ 등장...‘고인 뒷수습·유품정리’ 월 3천 원대”.



최근 국내 재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

김석영 연구위원

요약

최근 국내 재보험산업은 연성시장(Soft Market)화,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의 변화, 신규진입 등으로 말미암아 경쟁이 가열될 것임. 국내 재보험회사들은 대형사고로 큰 손실을 입었으나 재보험시장이 세계적으로 연성시장화되어 효율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지금까지 재보험회사가 제공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사용하던 협의효율 사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회사 의존도가 줄어듦으로 전망됨. 한편 올해 안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재보험시장에 새로운 재보험회사가 각각 진입할 예정이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위험 인수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재보험회사의 실적이 회사별로 명암을 달리하면서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세계 재보험시장은 강한 연성시장(Soft Market)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재보험효율 인상도 쉽지 않음.

- 코리안리는 2015년 9월 말 현재 누적 당기순이익이 1,774억 원에 이르나, 뮌헨재보험과 스위스재보험은 각각 -29억 원, -79억 원의 손실을 기록함.
 - 최근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사고, 사우디 쿠라야 발전소 모래폭풍 사고, 중국 텐진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재보험회사들의 손실이 급증하였음.
- 생명보험 재보험시장은 시장경쟁으로 영업마진이 낮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고령자 대상 신상품 출시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세계적인 양적완화로 자본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자본조달가격이 하락하여 재보험회사들의 손해를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보험효율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10월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효율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회사 의존도가 줄어듦으로 전망됨.

- 보험회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비통계 자체 판단요율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보험회사의 도움 없이 요율 산출이 가능해지고 재보험 출재도 필요치 않게 되었음.
 - 지금까지 주로 재보험 출재를 전제로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의 협의요율이 사용되어 왔음.
 - 향후 손해보험회사는 자체판단요율 사용 계약에 대해 보유하거나 동 요율을 수용하는 국내외 재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재보험거래와 전혀 다른 시장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 그러나 협의요율 및 자체판단요율 등 일반손해보험 요율체계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미미할 수도 있음.
 - 개정안은 자체판단요율에 대해서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가액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협의요율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1일까지 적용을 연기함으로써 협의요율이 당분간 시장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올해 안에 새로운 시장참여자가 재보험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재보험회사들과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음.

- ACR(Asia Capital Reinsurance Group)과 Pacific Life Re는 그동안 국경 간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일반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시장에 각각 참여하여 왔으나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지점을 설립하고 영업을 할 예정임.¹⁾
- 또 다른 해외 글로벌 손해보험회사도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시장의 경쟁은 향후에 격화될 수 있음.

■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위험인수 검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재보험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서 사이버 리스크, 전염병 리스크 등과 같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리스크를 인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위험에 대한 경험과 요율이 부재한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재보험회사의 도움으로 동 위험을 인수할 수 있을 것임. **kiri**

1) 각사는 작년과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각각 받았음.



종신보험가입자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전략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시행 이후 생명보험 상품판매에 있어 소비자 특성(니즈)을 반영하는 마케팅전략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종신보험 가입자의 인구구조 및 경제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가장이 핵심경제활동연령(30~50대) 계층에 속하면서 가구의 연간소득과 저축률이 높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종신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가족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려는 니즈가 큰 소비자(가장)일수록 종신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러한 종신보험 가입자의 특성에 부합한 보험상품개발 및 채널접근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소비자 만족도는 더욱 제고될 것임.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6년 이후에는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생명보험 상품판매전략(또는 마케팅전략)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소비자 특성(가족구성원, 연령, 경제적 요인 등)과 종신보험 수요와의 실증적 관계를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규명하고자 함.
- 본고에서 종신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동 상품이 소비자 가계의 경제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며, 보험 태동의 원천(사고위험 헷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임.

■ 종신보험 가입성향을 분석¹⁾해 본 결과, 소득 및 저축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구성원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과 저축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장의 연령이 많을수록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표 1〉 참조).

1) 분석결과는 보험연구원의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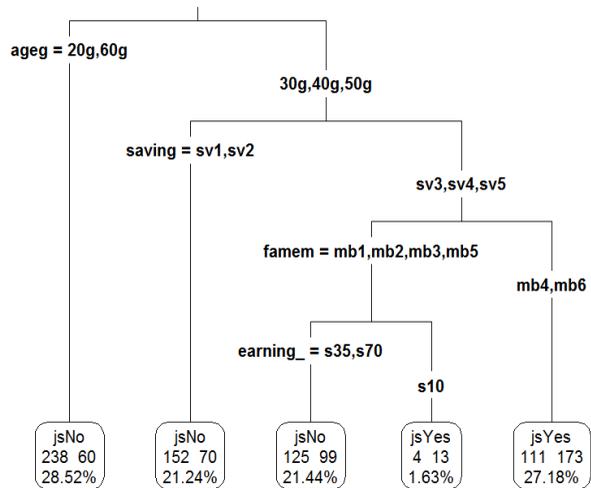
- 소득, 저축률, 가족구성원 수 및 연령별로 분석하면, 30·40·50대이면서 연간저축률이 3~5%인 계층과 가족구성원 수가 4명 및 6명인 계층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음(〈그림 1〉²⁾ 참조).
- 이상의 분석결과는 가장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구성원 수가 많은 조건 즉, 경제적 능력과 위험대비 필요성이 종신보험가입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줌.³⁾

〈표 1〉 종신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추정값(표준오차)
(절편)	-1.97400(0.44260)***
소득	0.00017(0.00004)***
가구원 수	0.25680(0.06959)***
연령	-0.01652(0.00628)**
수입가구원 수	-0.18930(0.11450).
저축률	0.33420(0.06451)***

주: 1) ***는 0.001, **는 0.01, *는 0.05, ‘.’는 0.1의 유의수준.
 2) 수입가구원 수는 월수입 200만 원 이상인 가족구성원 수를 의미함.
 3) 일반화선형모형(binomial(link=logit)).

〈그림 1〉 종신보험가입자 특성



주: “ageg”는 연령그룹, “saving”은 연간저축률, “famem”은 부양가족 수, “earning_”은 연간 가구소득, “jsYes”는 종신보험 가입, “jsNo”는 종신보험 미가입을 의미함.

따라서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 및 니즈(위험해지 필요)에 부합되는 종신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공급할 경우 소비자 만족도 및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 연간저축률이 3% 이상이고 4명 이상의 부양가족을 가진 30~50대 계층의 니즈에 부합한 종신보험상품이 공급될 필요가 있음.
- 상기 이외의 계층 또는 고가(高價) 종신보험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에는 정기보험이나 저해지 환급 종신보험 등 저렴한 종신보험상품의 공급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종신보험상품은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고, 채널 신뢰도가 중요한 상품이므로 대면채널의 설명능력(또는 신뢰성 있고 충분한 양의 정보제공 능력) 제고도 필요함. **kiqi**

2) 트리모형에 입각한 분석결과임.

3) 자녀가 독립하고 수입이 줄어드는 연령인 60대 이상에서는 종신보험에 덜 가입하는 것으로 보임.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보험산업의 미래

김석영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요약

최근 인공지능인 알파고(AlphaGo)가 세계 최정상 바둑프로기사인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에서 승리를 하여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미 체스경기와 퀴즈쇼 프로그램에서 인간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금융산업과 보험산업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장기적으로 빅데이터와 함께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이 보험요율 산출, 언더라이팅 그리고 판매채널에 도입될 경우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인공지능인 알파고(AlphaGo)가 세계 최정상 바둑프로기사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을 통하여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바둑은 거의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러한 예측이 무너짐으로써 인간의 지능 관련 두뇌활동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미 체스경기와 퀴즈쇼 프로그램에서 인간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음.
 - 1996년 IBM의 슈퍼컴퓨터 딥 블루(Deep Blue)는 세계 체스 챔피언과의 시간 제한이 있는 정식 체스 대국에서 승리함.
 - 2011년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은 미국의 제퍼디(Jeopardy) 퀴즈쇼에서 74회 연속 우승한 켄 제닝스(Ken Jennings)를 누르고 우승함.
 - 왓슨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하는 딥 블루와 달리 복잡한 영역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금융산업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보험산업에도 상품 판매 및 언더라이팅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 골드만삭스는 금융시장 분석을 위하여 금융분석 인공지능 프로그램 켄쇼(Kensho)를 도입하였음.

- 증권가에는 이미 로보어드바이저(Roadvisor)가 등장하여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매매하고 관리하고 있음.
 -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자산을 운영·관리해 주는 자산관리서비스로 핀테크의 일종임.
- 소비자가 보험 플랜을 요청하면 다수의 설계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 완료 후 컴퓨터 알고리즘이 보험상품을 분석하여 가장 좋은 플랜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가 현재 활동 중임.
- 국내의 한 보험회사는 부담보 동의서 출력, 구체적인 서류내용 안내, 언더라이팅 결과 제공 등의 업무를 자동처리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4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기존의 자동언더라이팅 시스템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청약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해서 자동으로 심사되고 나머지는 언더라이터가 직접 처리하였음.
 - 새로이 시작되는 자동언더라이팅 시스템은 보다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언더라이터의 손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음.

■ 장기적으로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회사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을 보험요율 산출, 언더라이팅, 그리고 판매채널 등에 도입할 것이며 이는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됨.

- 알파고나 켄쇼 같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보험계약자별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
-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및 언더라이팅 일관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자동언더라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
-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이 접목된 온라인 또는 앱 기반의 판매채널은 상품판매뿐만 아니라 보험요율 산출, 언더라이팅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
 - 왓슨처럼 사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 앱이 출시되어 설계사처럼 계약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할 것으로 예상
- 대규모 전속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시장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
 - 고비용 설계사 중심 판매채널에서 다양한 저비용 판매채널로 전환될 가능성 **kiri**



1인 가구 증가가 보험수요 감소를 초래하는가?

임태준 연구위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의 보험 가입 여력 부족으로 인해 보험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1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다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암시하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높은 보험가입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줌. 따라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보험수요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오히려 경제 전체의 저축 및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의 보험 가입 여력 부족으로 인해 보험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00년 15.6%에 불과하던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1%로 급증하였으며,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 34.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¹⁾
 - 특히, 20~30대의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8.1%에서 2015년 39.6%로 급증하였으며, 2035년에는 51.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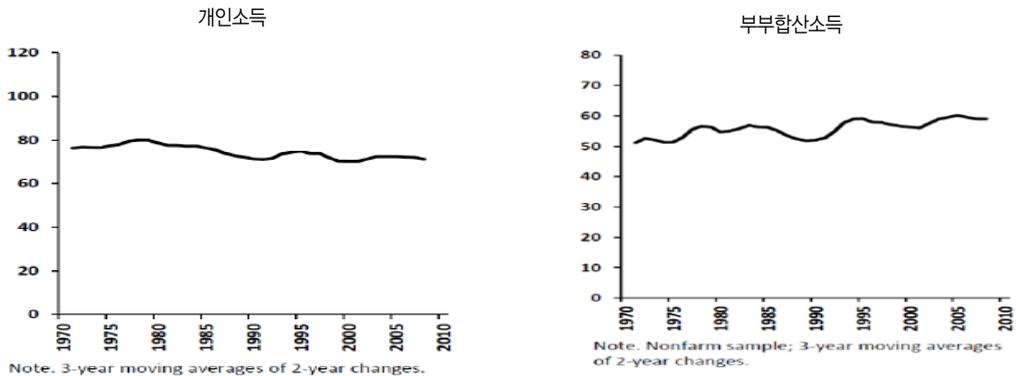
■ 이러한 우려는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1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다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암시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²⁾
- 다인 가구의 부부 간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풀링(pooling)하여 측정된 개인의 소득변동성은 다인 가구의 부부합산소득의 변동성에 비해 현저히 높음(〈그림 1〉 참조).

1) 김세중·김유미(2016, 2, 22), 「1인 가구 대상 보험상품 제공 방안」, 『KiRi Weekly』, 제372호, 보험연구원.

2) Ziliak, J.-P., B. Hardy, and C. Bollinger(2011), *Earnings Volatility in America: Evidence from Matched CPS*, working paper; Dynan, K., D. Elmendorf, and D. Sichel(2012), *The Evolution of Household Income Volatility*, working paper.

〈그림 1〉 소득변동성: 개인소득 vs. 부부합산소득



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소득변동성(연간소득변화율의 횡단면(cross-sectional) 표준편차로 측정)을 나타냄.
 자료: Dynan et al.(2012), The Evolution of Household Income Volatility, working paper.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변동성이 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향후의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높은 저축 및 보험가입동기를 가질 수 있음.

- 합리적인 개인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소비활동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바, 이를 소비의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라 함.
- 이에 따르면 소득 감소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1인 가구는 소득 감소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과 보험 가입의 유인이 높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보험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경제 전체의 저축 및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두 명의 남녀가 각각 1인 가구를 이루었을 경우와 동일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에 1인당 저축 및 보험수요를 비교한다면 전자가 더 높음.
-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득변동성이 높은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 전체의 저축 및 보험수요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 [kiri](#)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발표와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요약

정부의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입될 예정인 독립투자자문업(IFA)의 경우 엄격한 독립성 잣대를 적용해 중립적 위치에서 자문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판매와 연계된 부가서비스 형태의 자문 서비스는 관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존 판매채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영국, 호주 등의 해외사례를 보았을 때, 독립자문서비스가 정착하기까지 소비자의 추가비용 부담요인 해소 및 독립자문서비스의 질적 차별화 등의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최근 정부는 기존 투자자문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와 독립투자자문업(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¹⁾
 - 이는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 투자자문업의 진입장벽 완화로 기존 투자자문업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상품 자문업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기관투자가 중심의 투자자문업을 일반 소비자에게도 확대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함.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여 자본금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은행에 신설 투자자문업 겸영을 허용함.
- 신규 도입되는 독립투자자문업(IFA)의 경우에는 엄격한 독립성의 잣대를 적용해 중립적 위치에서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판매채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독립자문업자는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이고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3. 24),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자문서비스 제공업자를 지칭함.

- 독립자문업자는 보수수취방식, 경영·계열관계, 취급상품 범위 등에서 독립성 요건을 갖춰야 함.
 - 첫째, 자문의 대가는 고객으로부터만 수취하여야 하며 제조·판매회사로부터의 수취는 금지됨.
 - 둘째, 제조·판매업의 경영이 금지되고 제조·판매회사와 계열관계도 없어야 함.
 - 셋째, 특정 금융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행위는 금지되나 특정 상품의 종류나 특정목적에 집중한 제한자문은 허용됨.²⁾
- 현재 판매와 연계된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자문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해 “판매”로 간주할 예정이므로, 기존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쟁점사항은 소비자의 추가비용 부담 여부, 자문서비스 수요, 독립자문서비스의 차별화 등임.

- 첫째, 독립자문업자의 경우 자문수수료 지급의 주체가 소비자인 만큼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둘째, 독립자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자발적 자문수요가 전제되어야 함.
- 셋째, 기존 판매업자들이 제공하는 판매에 연계된 자문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독립자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독립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현저히 낮음.

■ 독립자문업 도입으로 판매와 연계된 부가적 자문서비스와는 달리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 시장 상황의 지속적 점검을 통한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이번 제도 개편안에 이어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을 포괄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포괄적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할 전망이다.
- 독립자문서비스가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채널로 자리잡기까지는 선진국의 모범사례와 제도개편에 따른 편익·비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함.
- 영국은 2012년 판매채널 개혁방안에 따라 독립자문업자에게 자문수수료만 수취하도록 조치한 후 투자자문업자들의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자문업자의 수는 1만 명 이상 감소했음.³⁾
 - 반면에 펀드상품이나 인터넷 플랫폼 관련 판매 리베이트가 사라지면서 수수료 개혁의 전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KiRi](#)

2) 영국식의 제한자문의 형태로 해석됨.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반면,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 상품 공급업자의 상품을 적합성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문서비스 형태임.

3) 박선영·이선주(2015, 11, 30), 「영국 RDR 시행 이후 자문시장 변화 및 시사점」, 『KiRi Weekly』, 제361호.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증가와 위험관리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들은 부동산 PF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이는 최근 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축소 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자산-부채 매칭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됨. 그러나 부동산 PF는 다양한 유형(대출형, 지분참여형)이 있고, 건설경기 악화 등 새로운 위험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요구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들은 저금리 극복방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늘리고 있 는 추세임(〈표 1〉 참조).

●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규모는 2012년 5.4조 원에서 2015년 3월 말 8.7조 원으로 크게 증가

〈표 1〉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대출채권 현황

구분	FY2008	FY2010	FY2011	FY2012	FY2015.03
생명보험	4.6 (6.98%)	3.9 (5.38%)	3.4 (4.21%)	3.1 (3.55%)	5.2 (4.89%)
손해보험	0.8 (5.96%)	1.5 (7.89%)	1.9 (8.26%)	1.8 (6.29%)	3.5 (8.02%)
은행	52.5 (5.72%)	38.7 (3.91%)	29.9 (2.80%)	23.4 (2.12%)	20.4 (1.60%)

주: 단위는 조 원이며, ()안은 총대출 대비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 부동산 PF는 자금조달별, 만기별, 자산 유형, 수익률 측면에서 일반 대출과 차이가 있음.

-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간에 따라 부동산 PF의 만기는 3개월 미만부터 길게는 20년까지임.

- 부동산 PF 관련 자산은 대출 및 대출채권, 그리고 이에 기초한 파생상품, 부동산 PF 관련 지분투자, 유동화증권 및 수익증권 등이 있음.
- 부동산 PF대출 금리는 시행사의 신용도와 사업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6~8% 내외임.

■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축소 공백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자산-부채 매칭 등을 들 수 있음.

- 은행의 부동산 PF 축소 공백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국내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PF대출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음.
 - 은행의 부동산 PF 규모는 2008년 52.5조 원에서 2015년 20.4조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보험회사들은 대신 동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부동산 PF는 과거 공격적으로 운영했던 저축은행의 브릿지론¹⁾에 비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금 규모가 크고 대출기간이 장기임.
 - 최근에는 사업 초기 공사비 확보 등을 위해 은행·보험업이 선순위 대출, 증권·캐피탈이 중·후순위대출, 시행사가 지분투자를 하는 구조화 금융이 확산되고 있음.
-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4% 초반으로 하락한 운용수익률 제고
- 자산-부채 매칭: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PF 발전소 등 기간산업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어 듀레이션 매칭을 목적으로 부동산 PF를 늘리고 있음.

■ 그러나 부동산 PF의 다양한 유형(대출형, 지분참여형)과 건설경기 악화 등 새로운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요구됨.

- 부동산 PF는 전통적 대출채권 관련 위험보다 높은 위험을 갖고 있어 많은 위험자본이 요구됨.
 - 부동산 PF 유형 가운데 지분형 부동산 PF에 보다 높은 위험계수를 부여함.²⁾
-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 개발에서 예상된 현금흐름이 창출되지 못하거나 시공사의 신용도가 악화될 경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보험회사들은 일반 대출채에 비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보수적 유형의 부동산 PF에 투자하고 있음. **kiri**

1) 브릿지론이란 착공단계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매입자금 및 시행사 운영비를 대출 받는 것인데,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인 토지 확보 및 사업인·허가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음.

2) 예컨대, 수익증권형 부동산 PF의 RBC 위험계수는 12%로 매우 높고, 동일 신용등급의 부동산 PF 위험계수(1.6%)는 전통형 대출채권의 경우(0.8%)에 비해 다소 높음.



MetLife의 SIFI 지정취소 소송 승소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미국 연방법원은 대마불사 금융기관(SIFI)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인 MetLife의 손을 들어줌. 판결의 주요 논거는 SIFI 지정 근거의 부적절성과 SIFI 지정과정의 투명성 결여를 들고 있음. 이번 판결은 향후 우리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규제를 도입하는 데 반면교사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¹⁾은 대형 보험그룹 MetLife Inc.(이하 'MetLife')에 대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이하 'FSOC'²⁾)의 대마불사 금융회사(이하 'SIFI'³⁾)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⁴⁾은 부실화로 인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은행 금융그룹을 SIFI로 지정하는 권한을 FSOC에 부여함.
- FSOC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MetLife 등 4개 비은행 금융그룹⁵⁾을 SIFIs로 지정한 바 있으며 MetLife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지정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음.
- 본고는 이번 소송의 쟁점을 크게 FSOC의 MetLife에 대한 SIFI 지정 근거와 지정과정의 정당성 관점으로 나누어 연방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고⁶⁾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함.

■ 미국 연방법원은 극단적 재무상황에서 보험그룹이 겪는 재무적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FSOC의 평가가 자의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보험업 사업모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FSOC의 SIFI 지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지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1) Federal District Court for District of Columbia, 미국 수도 워싱턴 지역 관할 지방법원.

2)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3)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4)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5) 현재 보험그룹은 MetLife, Prudential, AIG 등이, 비은행비보험 금융그룹은 GECC가 SIFIs로 지정되어 있음.

6) 이번 판결내용은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근거로 추론이 가능함.

- 보험은 장기에 걸쳐 있는 사업모형의 특성상 대규모 인출사태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낮아 전통적 보험영업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 MetLife는 이러한 은행과 보험의 사업모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험그룹에 대한 SIFI 지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2015년 1월 13일 소송을 제기하였음.
- FSOC는 사업모형 중 변액연금 등 비전통적 보험상품과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인 비보험 금융상품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으나⁷⁾ 결국 연방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함.

■ SIFI 지정 취소의 또 다른 근거로 MetLife는 FSOC의 SIFI 지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 FSOC가 SIFI 지정에 사용된 데이터 및 방법론에 대한 접근을 막아 MetLife는 법에 정해진 정당한 반론권을 자사의 SIFI 지정과정에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⁸⁾
 - 도드프랭크법은 FSOC가 SIFI를 지정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지정 대상이 되는 회사와 소통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반론 및 자료 제공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SIFI 지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FSOC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음.⁹⁾
- 지정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의 결여가 법원이 SIFI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주요 논거인 경우, SIFI로 지정된 다른 보험그룹이 SIFI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짐.¹⁰⁾

■ 미국 연방법원의 금번 SIFI 지정취소 판결은 시스템리스크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금융시스템에 주는 위협요인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일깨워줌.

- 또한 금융규제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용되고 그 과정은 규제당국과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시장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소송 등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KiRi](#)

7) 이승준(2016. 2. 22), 「MetLife 분사계획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 『KiRi Weekly』, 제372호, pp. 3~5.

8) Wall Street Journal(2015. 1. 13), “MetLife Takes on the Feds”.

9) FSOC(2015. 2. 4), “Supplemental Procedures Relating to Nonbank Financial Determinations”.

10) New York Times(2016. 3. 30), “MetLife Wins Battle to Remove ‘Too Big to Fail’ Label”.



알리안츠 한국법인 매각가격 논란

전용식 연구위원, 조재린 연구위원

요약

최근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 국내 현지법인을 인수하였는데, 인수가격이 동양생명 인수가격보다 상당히 낮아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 저금리로 인해 향후 발생할 이차손실 손실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결과 부채가치가 자산가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인수가격이 낮게 결정된 것임. 이러한 평가방식은 독일 알리안츠가 준용하는 솔벤시 II 기준이며 앞으로 도입될 IFRS4 Phase2 방식과 유사하나 현행 RBC비율 산정 시 보험부채 평가방식과는 다른 기준임. 따라서 이번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매각 가격은 매도자인 독일 알리안츠와 매수자인 중국 안방보험이 결정한 시장가격이며 보험회사의 가치평가 방식이 과거의 자산규모, 시장점유율 등 외형적인 지표들에 따른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최근 중국 안방보험이 한국 알리안츠 현지법인을 인수하였는데, 시장에서 예상된 인수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인수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총자산은 16조 6,510억 원으로 생명보험업계 11위의 규모이지만 중국 안방보험이 인수한 가격은 35억 원으로 알려짐.¹⁾

■ 예상 인수가격과 실제 인수가격 간의 차이는 알리안츠 한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손실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였기 때문임.

●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금리 확정형 보험상품 비중은 2015년 47.9%인 6조 1,261억 원이며, 이 중 고금리 상품비중이 높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²⁾

■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이차손실금액 평가는 독일 알리안츠가 적용하는 유럽의 솔벤시 II에 의한 것이며 이 기준에 의해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임.

1) 2016년 1월 28일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순자산가치는 1조 511억 원 수준임.

2) 머니투데이(2016. 4. 11) 보도 참조.

-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최근 2% 후반으로 하락함에 따라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격차가 커져서 이차역마진이 심화되고 있음.
- 이차역마진은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보험부채 가치가 자산 가치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임.
 - 독일 알리안츠가 한국 현지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향후 투자 지속 시에도 이차역마진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도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국내 RBC 비율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므로 향후 발생할 이자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RBC 비율이 180%로 산출됨.
 - 감독당국은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 또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할 계획임.

■ 알리안츠의 국내 철수는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 손실로 대만에 진출했던 유럽 보험사들이 철수했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대만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00년 5.25%에서 2009년 2.25%로 하락하였고, 1980~90년대에 6.5% 확정금리로 판매한 보험상품으로 이차역마진이 크게 확대됨.
 -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당시 대만 생명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 금액을 265억 달러로 추정함.
- 이차역마진을 완화하기 위해 대만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저금리 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금리 연동형 보험상품 판매를 확대하였으나 일부 유럽 보험회사들은 대만시장에서 철수함.
 - 1987년 대만에 진출한 네덜란드의 ING생명은 2008년 12월 대만의 푸본생명에 4억 4,700만 유로에 사업을 매각하였는데, 당시 2억 9,2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 1999년 대만의 치폰생명을 인수하며 대만에 진출한 영국의 푸르덴셜 역시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으로 8억 파운드의 부채 증가를 초래한다고 평가하여 대만사업에서 철수함.
- 대만에서의 철수는 유럽 보험회사들에게 일시적인 손실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솔벤시 II 적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

■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매각 가격인 35억 원은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책정된 시장가치이며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가치평가,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의 자산규모, 시장점유율 등 외형에 의한 가치평가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경영전략도 수정되어야 함.
- 향후 인수합병시장에 나온 국내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매각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KiRI](#)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보험회사의 진출 기회

전용식 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요약

이란에 대한 주요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과의 교역 및 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됨. 이란과의 교역 및 기업의 진출 확대는 교역과 관련된 기업성 보험 수요 증가와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이란 진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란 손해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손해보험회사의 진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나 높은 시장집중도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이란 진출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에게 성장기회일 수 있으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생산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고 담보할 수 있는 역량 배가가 필요함.

■ 주요국의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과의 교역 및 기업·금융기관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1월 17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따라 UN, 미국, EU, 우리나라 등 국제 사회가 부과했던 경제제재가 해제되었음.¹⁾

■ 이란과의 교역 증가는 교역 관련 기업성 보험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2014년 이란의 총수입 금액은 964억 달러이며 이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UAE(34.3%), 중국(28.5%), 인도(5.2%)에 이어 4번째임.
- 원유수입과 자동차 부품, 철강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환경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 적하보험, 책임보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²⁾

■ 이란 정부의 개발사업 투자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은 손해보험회사의 이란 등 중동 국가 진출 기회로 작용할 것임.

1) 국립 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13. 1. 2)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2006년 7월 UN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이란의 수출 제재와 이란과의 금융거래 제재에서 시작하였고 2010년 미국의 “포괄적 對 이란 추가제재법안”이 발효되면서 강화되었음.

2) 한국수출입은행(2015. 8), 「이란 핵협상 타결과 한-이란 경제관계 전망」, Vol. 2015-지역이슈-10.

- 이란 정부의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사업 투자 확대로 국내 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2020년까지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에 약 600억 달러, 석유화학 제품 생산처리 및 운송, 플랜트 부문에 약 9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POSCO와 국내 건설회사들은 이란의 SOC 투자와 관련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보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손해보험 회사들의 진출 및 사업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를 성장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고 인수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가해야 함.

- 2014년 이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67억 3,700만 달러로 세계 35위 수준³⁾이나 타임트릭(Timetric)은 2019년까지 연평균 2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⁴⁾
 - 손해보험 침투도는 1.7%로 세계 평균 2.7%에 비해 낮고 보험밀도는 86달러에 불과함.
- 이란은 우리나라 기업들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에게도 기회요인이기 때문에 이란 손해보험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임.
 - 상위 5개사⁵⁾의 시장점유율이 2014년 기준 70.6%로 집중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며 Allianz, Zurich Insurance 등 글로벌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들의 진출이 예상됨.
-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고 인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함.
 - Sompo Japan의 경우 이란 보험회사에 해양, 에너지 보험 부문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담보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가 국내 보험회사에 비해 다양하기 때문임.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금 조달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⁶⁾
 - 위험평가와 인수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 언더라이팅 전문 관리회사(Managing Agency)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⁷⁾ **kiri**

3) Swiss Re(2015, 6), 『World Insurance in 2014: Back to life』에 따르면 이란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7억 2,100만 달러(세계 66위)이며 이란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불과함.

4) Timetric(2015, 12), 『Non-Life Insurance in Iran, Key Trends and Opportunities to 2019』, <http://www.timetric.com>.

5) 상위 5개사는 Iran Insurance Company(40.7%), Asia Insurance Company(10.3%), Dana Insurance Company(7.3%), Alborz Insurance Company(6.9%), Parsian Insurance Company(5.4%)로 이란 국내 보험회사임.

6) 전용식·조영현·채원영(2014, 12),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7) 관리회사란 소재지 국가의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설립되며 전세계 보험회사(재보험사)로부터 제반 권한을 위탁받아 언더라이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있음.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함.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기대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파생상품 거래한도 완화는 이자율스왑을 이용한 금리리스크 관리 활성화 및 새로운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자산운용규제 완화는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전략 다양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규제당국은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운용역량 발전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험회사도 규제 완화에 맞맞추어 해외투자 및 파생상품에 대한 운용역량을 배양해야 함.

■ 지난 4월 25일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¹⁾ 중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²⁾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기대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외화자산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다양한 해외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대수익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반계정 외화유가증권 비중: 생명보험 4.7%(2013. 12) → 8.3%(2015. 12), 손해보험 6.5%(2013. 12) → 9.6%(2015. 12)

■ 파생상품 거래한도 완화³⁾는 이자율스왑을 이용한 금리리스크 관리 활성화 및 새로운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의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완화, 외화자산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 폐지 등임.

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가사 책정한 신용등급이 있는 외화증권 이외에도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가사가 투자적격 등급 이상을 지정한 외화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됨.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중앙청산기구)를 거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산출하고, 투자한도 예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열거식 방식이 아닌 명확한 정의로 규정함.

- 현재 중앙청산기구를 거친 장외파생상품은 원화이자율스왑이며, 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출 시 위탁 증거금을 이용할 경우 더욱 많은 거래가 가능
 - 보험회사의 이자율스왑 이용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거래한도 완화로 원화이자율스왑을 이용한 능동적인 금리리스크 관리 가능⁴⁾
- 파생거래 투자한도 예외가 인정되는 파생결합상품이 열거식에서 명확한 정의로 바뀔에 따라 향후 새로운 파생결합상품 출현 시 신속한 투자 가능

■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 폐지⁵⁾는 RBC제도 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규제 합리화로 보임.

- 현재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과 유동성비율이 자회사 소유 요건을 훨씬 상회하므로,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의사결정에 동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되지는 않음.
- 그러나 향후 RBC제도 강화로 많은 회사가 동 규제에 의한 제약으로 투자형 자회사 소유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한 것으로 판단됨.

■ 자산운용규제 완화는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전략 다양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규제당국은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운용역량 발전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총자산의 30%(일반계정)로 제한되어 있는 해외투자한도도 철폐 혹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해외투자 확대는 국내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운용전략이며, 이미 일부 보험회사는 외화유가증권 비중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20%를 초과한 상태임.
 - 대만 생명보험회사들도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자국 내 저금리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함(푸본생명의 해외운용자산 비중: 56.4%(2015. 9)).
- 아울러 보험회사도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해외투자와 파생상품에 대한 운용역량을 배양시켜야 함.
 - 특히, 대형사는 이자율파생상품을 이용한 금리리스크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kiri

4) 위험회피수단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율파생금융거래의 경우 거래한도 적용을 받지 않으나 요건 충족이 까다로움.

5) 벤처캐피탈,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소유 요건(출자액이 전액 부실화됐을 때도 RBC비율 150% 이상과 유동성비율 100% 이상을 충족)을 폐지해 자산운용 관련 중복규제 부담을 완화함.



저성장기 생명보험 마케팅 전략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소비자들은 우리나라가 저성장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저렴한 상품을 선호하는 등 저성장기의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음. 보험권에서도 보험해지 및 약관대출 증가, 저렴한 보험상품 선호와 같은 저성장기의 소비자 행동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저성장기의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저렴한 상품 개발 및 공급, 저성장기의 생명보험상품 활용방법 홍보 등 저성장기에 적합한 적극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경제성장률이 매년 낮아지는 현상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기 경제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임.

-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약 2.6%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정부는 3.1%¹⁾, 해외 IB는 2.6% 성장을 예측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에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도 저성장기 소비자 특성에 부합되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음.

■ 텍스트마이닝 기법²⁾으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소비행태를 파악해 본 결과,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을 소비선택의 중요 판단근거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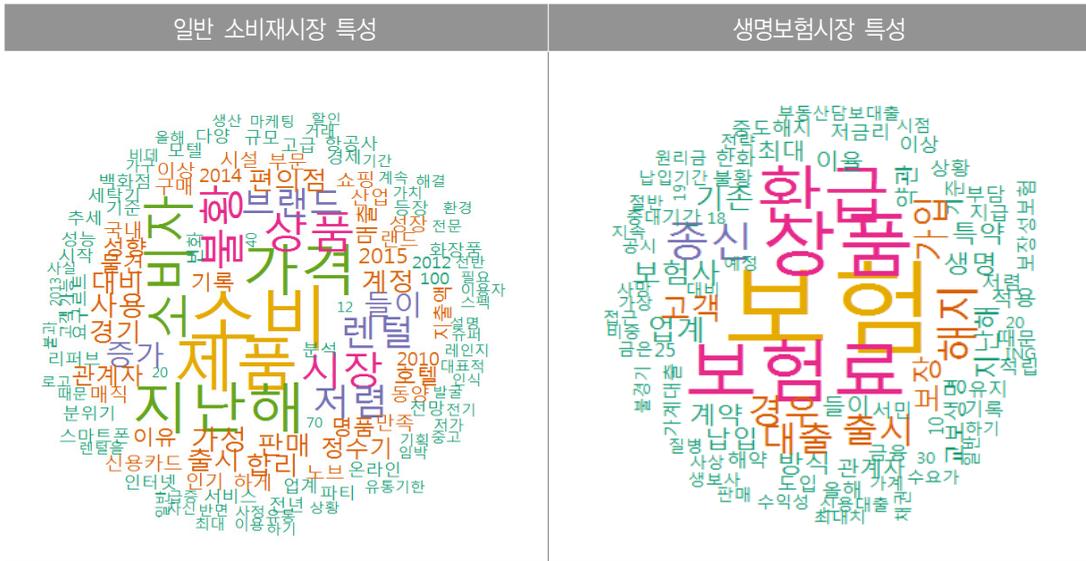
- 소비자들은 소비재 상품을 렌탈하거나, 저렴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전형적인 저성장기의 소비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 산업에서도 보험료 수준에 대한 예민한 반응, 환급,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 해지³⁾ 증가 순으로 그 특징이 보이는 등 저성장기의 보험소비자 특성이 나타남.

1) 한국은행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함(2016년 4월).

2)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은 물론, 카페나 웹게시판, 온라인 뉴스 등 웹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하나로 마케팅, 여론 분석, 감성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3) 해지란 계약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을 말함.

〈그림 1〉 저성장기의 소비자 행동특성



주: 1) 2016년 2~3월 사이의 한 달간 기사화된 신문내용을 Naver의 기사검색기능으로 찾아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임.
 2)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워드클라우드(위 그림)이라고 하며, 글씨크기가 큰 순서로 키워드가 분석자료에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함(예, 생명보험시장의 특성에서 보험, 보험료, 상품, 보험료 환급, 해지, 종신 등의 순서로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저성장기의 소비자 태도에 부합하도록 저렴한 상품의 개발 및 공급, 소비자의 충성도 제고, 저성장기의 생명보험상품 필요성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생명보험 산업의 주력상품인 사망보험의 경우, 저해지환급 종신보험과 같은 저렴한 종신보험상품 개발, 정기보험 공급 확대 등 저렴한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상품내용이 단순한 상품 위주로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판매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저성장기의 보험상품 유용성과 약관대출 활용 필요성 등 소비자에게 저성장기의 생명보험상품 활용방안을 소개할 필요가 있음. [kiri](#)



금리인하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용운 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2016년 6월 9일 기준금리가 1.50%에서 1.25%로 조정됨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금리 하락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계약 판매를 위축시키고, 금리역마진 확대에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킴. 또한 금리 하락은 금리역마진위험액 확대에 따른 요구자본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코코본드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 경영합리화, 그리고 새로운 투자수익처 발굴 등 다양한 경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6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개선이 부진함에 따라 올 4월 전망하였던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함.¹⁾
- 또한 올해 하반기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실물경제와 경제주체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을 실시하게 됨.

■ 금리인하는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금리인하로 인해 예정이율²⁾이 하락하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³⁾이 낮아질 경우 환급금이 감소하여 신계약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6.9.), “통화정책방향”.

2)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상품을 기획할 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로,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를 자산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함.

3)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은행 정기예금 이율, 국공채 및 회사채의 3년 만기 이율, 자산 수익률 등을 조합하여 산출함.

- 또한 채권⁴⁾ 투자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경우 금리하락은 금리역마진을 확대시키고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함.
 -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운용자산이익률 감소폭이 보험부채 부담이율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2015년 말 기준 금리역마진 갭은 0.76%p까지 확대된 상황임.⁵⁾
- 금리하락은 금리역마진위험액⁶⁾ 확대에 따른 요구자본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⁷⁾
 - 저금리 장기화로 금리역마진위험액은 2014년 1조 1,926억 원에서 2015년 2조 7,07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금리역마진위험액 비중은 5.86%에서 10.25%로 증가함.

■ 보험회사는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기조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금리하락에 대비해 자본확충, 경영합리화, 투자수익처 발굴 등 다양한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금리는 향후 대내외 충격요인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신종자본증권 세부인정 요건을 만족하는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발행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⁸⁾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임.
- 또한 금리하락으로 채권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중수익 투자편입비중 확대 등과 같은 수익률 개선 노력이 필요함. [kiri](#)

4) 기준금리인하 당일(2016.6.9.) 국채 3년물 지표금리는 전일대비 3.3bp 하락한 1.345%를 기록하였으며, 5년물과 10년물의 금리도 전일대비 각각 4.4bp, 3.7bp 하락한 1.425%와 1.660%를 기록함.

5)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보험부채부담이율은 각각 4.01%, 4.77%임(예금보험공사 2016).

6) 보험계약 적립이율이 시장이율을 초과하여 향후 1년간 발생할 예상손실로, 보험료적립금에 대한 부담이자와 시장금리로 측정된 운용자산수익의 간 차이의 50%로 산출함.

7) 단기적으로 금리하락은 자산평가이익의 증가에 따른 가용자본 증가폭이 금리역마진 위험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보다 크게 되어 RBC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면 금리하락이 자산평가손을 초래하게 되어 가용자본이 감소하게 됨. 따라서 장기적으로 금리하락은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대로 이어져 RBC 비율을 하락시키게 됨. 현 감독회계제도에서는 부채가 완전하게 시가평가되지 않아 금리인하가 자산평가이익으로만 반영되어 가용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RBC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8) 「은행법」 제33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제1항 참조.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영국의 Adrian Flux 보험중개사는 2016년 6월 초에 업계 최초로 AV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하여 Trinity Lane 보험회사에 제공하였음. 동 상품의 특징은 기존 담보에 자율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담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 신설된 부가담보로 운행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 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허가받은 자동차 내부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손해 등이 포함됨. 이러한 부가담보 제공으로 향후 AV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 AV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과 시험운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자율주행 관련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한 상품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 교통부¹⁾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AV)²⁾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2015년 7월 AV 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조성과 시험운행규정을 마련하여 AV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2030년이면 부분 AV가 전체 자동차의 75%, 완전 AV가 2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³⁾
- AV 사고 시 책임부담은 현재의 책임보험제도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동운전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제조자책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Adrian Flux 보험중개사는 2016년 6월 초 업계 최초로 AV 전용 자동차보험(driverless car policy)을 기존 자동차보험상품에 추가 담보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Trinity Lane 보험회사에 제공하였음.⁴⁾

- 동 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현행 손해배상책임법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자동차보험⁵⁾에 추가하

1)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transport>.

2) Autonomous Vehicles.

3) KPMG(2015),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The UK Economic Opportunity*, p. 9.

4) Adrian Flux, "Driverless Car Policy Document(<https://www.adrianflux.co.uk/pdfs/documents/driverless-car-insurance-policy-document.pdf>)".

5) 제3자 배상책임담보, 종합보험담보, 화재 및 도난손해 담보.

여 AV의 자율주행 리스크로 인한 사고와 장치 등⁶⁾에 대한 부가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운행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해킹(시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
- 자동차 운행시스템, 방화벽, 지도, 내비게이션의 업데이트 및 패치(patch)⁷⁾가 제조업체로부터 통보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내비게이션에 영향을 주는 위성 위치 추적 또는 통신 장애로 발생한 손해
- 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허가받은 자동차 내부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손해
-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적 결함이 생긴 경우 수동조작전환(manual override)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해

■ 동 상품은 AV 주행사고에 대해 최초로 개발된 상품이므로 향후 다양한 AV 전용 상품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제의 논의에 따라 보험약관조항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짐.

- 2017년 시판될 테슬라 모델에만 적용되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는 AV의 사고 걱정 없이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회사에게는 다양한 AV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
- 또한 AV 보험의 담보범위 등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 AV의 상용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2016년 2월 시험운행기준 마련을 통해 3월부터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험운행 자동차에 대해 운전자 요인에 의한 사고 외에 자율주행 시스템 등과 관련된 리스크를 분석하여 종합적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설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시험운행 차량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부분 AV는 2020년 이후 상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자율주행 리스크에 부합한 상품개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6) 표준 자동차보험에서처럼 차안의 엔터테인먼트 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손실 보상, 차량 도난 시 키·잠금장치·알람장치 교체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7) 패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빠르게 고치는 일을 말함.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베타판이나 시험 기간 중 또는 제품이 정식으로 발매된 이후에도 문제(흔히 버그라고 불림)는 반드시 발견됨. 패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즉각적인 해결책으로서, 소프트웨어 메이커의 웹 사이트 등으로부터 다운받을 수 있음(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보험회사의 중금리 대출사업 관련 고려사항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최근 중금리 대출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중금리 대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될 경우 중금리 대출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여신시장을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존의 고금리 이용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금리 대출시장은 긍정적이며, 중신용자 규모에 비추어 보면 중금리 대출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보험회사에게도 새로운 수익원일 수 있으나 중금리 대출수요자의 신용특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요구자본 부담, 추심과정에서의 평판리스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말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회사들도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중금리 대출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중금리 대출은 금리수준 10~15% 혹은 신용등급 4~7등급에 대한 신용대출임.
 - 은행의 경우 5~10%, 저축은행은 10~20%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음.
- 2015년 말부터 일부 은행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상품을 개발·출시하였으며, 지난 7월 5일 9개 은행이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¹⁾을 출시함.
- 보험회사들 가운데 지난 2월 말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한 회사도 있고 일부 회사들은 중금리 대출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음.

■ 여신시장을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존 고금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금리 대출시장은 긍정적이며, 중신용자 규모에 비추어 보면 향후 성장세가 전망됨.

- 중금리 대출시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중신용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로 가계의 이자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1) 주요 대출 대상은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이나 신용이 양호한 금융소비자, 그리고 사회초년생·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임. 1인당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연 이자율 6~10% 수준이고 거치 기간 없이 최장 60개월 안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야 함.

- 금리구간별 신용대출비중은 금리 5% 미만 42.0%(잔액기준, 73.9조 원), 5~10%는 24.9%(43.8조 원), 15% 이상 28.0%(49.3조 원)이나, 중금리 구간인 10~15%는 5.1%(9.1조 원)에 불과함.
- 중금리 대출 수요자로 예상되는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들은 2015년 말 기준 698만 명으로 전체 금융소비자 1,498만 명의 47%에 이름.²⁾

(표 1) 금리구간별 가계신용대출 잔액 분포(2015년 3/4분기 말)

(단위: %)

금리구간	~5%	5~10%	10~15%	15~20%	20~25%	25%~
비중	42.0	24.9	5.1	14.9	7.5	5.6

주: 은행은 금리구간별 대출잔액자료, 여타 업권은 업권별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상호금융조합은 5~10%, 보험회사는 10~15%, 신용카드회사는 15~20%, 캐피탈·저축은행은 20~25%, 대부업은 25% 이상 구간에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중금리 대출시장에의 진입 혹은 확대를 고려하는 보험회사는 중금리 대출수요자의 신용특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요구자본 부담, 추심과정에서의 평판리스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 잠재 고객들의 신용등급은 7등급 이하일 가능성이 큰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³⁾
 - 은행은 금리 10% 내외,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신용등급 6등급까지 대출을 확대함.
 - 대출부실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보증보험이 결합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임.
- 신용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으로 경쟁 금융회사들보다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이 큼.
 - 요구자본 산출 시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가 상향 조정되어 신용대출이 확대될 경우 요구자본 부담이 커질 것이고 보험회계제도 개정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도 있음.
-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부실대출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평판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보험회사가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용위험 평가 및 사후 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상품을 출시한 보험회사는 신용위험 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중금리 대출시장 진입으로 인한 기대수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키리**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 28),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3) 신용등급은 부채수준, 상환이력, 고금리상품 과다이용 여부, 거래기간 및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됨. 신용등급 7~8등급은 단기연체경험이 있어 단기적인 신용도 하락이 예상되며 주의가 요망되는 등급이고,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리가 필요한 등급임(서울신문(2014. 2. 10), “한국은행 경제교육 경제칼럼”에서 재인용).



P2P보험시장 동향과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최근 해외에서는 P2P금융상품의 하나로 P2P보험이 등장하고 있음. P2P보험은 동일한 위험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각출금을 적립한 후, 적립금의 일부를 사고발생 시 손실 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임. P2P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비용상 이점을 가짐. 우리나라의 경우 재물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 인식 부족, P2P보험 업체와 보험회사의 제휴 필요성 등으로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P2P(peer-to-peer)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P2P금융을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 P2P대출은 200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 서비스임.
- P2P보험은 동일한 위험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각출금을 적립한 후, 적립금의 일부를 사고발생 시 손실 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을 의미함.
 - 손실보전에 사용하기 위한 일부 적립금은 위험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시 고갈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음.
- P2P보험은 2010년 독일의 Friendsurance가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14년 영국의 Guevara, 2015년 프랑스의 insPeer, 미국의 Lemonade가 영업을 시작하였음.

■ P2P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Friendsurance는 주택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험 등에 대해 P2P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60여 개의 보험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음.

- Friendsurance는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공동 적립계좌에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각출금의 최대 40%까지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함.
 - Friendsurance는 보험의 중개기능과 공동계좌 관리기능만을 수행함.
- Friendsurance는 주택보험(home contents), 개인배상책임보험(private liability), 법률비용보험(legal expenses) 등의 소규모 위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Friendsurance는 60여 개의 보험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등 대상 보험종목도 확대할 예정임.

■ P2P보험 업체들은 Friendsurance와 유사한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각출금의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
 - 특히, 위험을 공유하는 그룹이 친구나 친척 등 지인들로 이루어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음.
- Friendsurance는 재물보험 고객의 80%가 평균적으로 각출금의 33%를 환급받았고 손해율도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비해 낮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나 P2P보험은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한 적립금으로 담보가 가능한 소규모 보험사고에 적합하며, 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시 고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함.

■ 우리나라는 재물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P2P보험 수요가 존재할 것이나 소비자 인식 부족, P2P보험 업체와 보험회사의 제휴 필요성 등으로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재물보험은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어 일부 담보만을 P2P형태로 판매할 경우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들을 그룹화해서 보험료를 낮추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우리나라 P2P금융시장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P2P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임.
- 또한 P2P보험 업체가 P2P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의 제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P2P보험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확보해야 함. [kiri](#)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본질적 업무 위탁 필요성

김석영 연구위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 등 인·허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보험회사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의 경우 본사의 영향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사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 일부 보험회사는 단순한 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화 과정에서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수 있음. 향후 핀테크가 활성화되는 경우 본질적 업무라도 업무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자회사 또는 제3자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금융업 인·허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의사결정 등 핵심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 보다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도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 금지됨.

- 업무위탁이란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¹⁾
- 동 규정상 보험의 본질적 업무는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 보험회사 공시, 보험계약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재보험 출·수재,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등임.

■ 금융당국이 본질적 업무에 대해 제3자에게 업무위탁을 금지하는 이유는 금융업의 인·허가 취지를 훼손하여 인·허가 행정행위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임.

- 금융업은 진입 시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본질적 업무의 제3자 위탁 허용은 금융업의 인·허가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금융업에 있어 인·허가 제도를 운영함.

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 그러나 보험회사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의 경우 본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사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

- 자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사업방법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탁 기준이나 방법을 충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당국은 현재 자회사 설립 시 신고·승인절차를 받으므로, 사전적으로 자회사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부 보험회사는 단순한 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함으로써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수지침이나 지급심사지침 등의 자동화과정에서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는 업무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보험금 청구서 접수와 같은 단순업무는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시스템으로 입력되는 등 거의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음.
 - 보험금 청구서 접수는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가 아니므로 위탁이 가능함.
- 그러나 보험금 청구 접수와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자회사에서 이루어질 경우 위탁금지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짐.
 - 금융당국은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권장하고 있으며, 소액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지급결정이 내려져서 24시간 안에 지급이 가능함.
 - 자동화 매뉴얼상 자회사의 업무처리 시 아무 이상 없이 바로 통과되어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게 됨.

■ 향후 핀테크가 활성화될 경우 본질적 업무라고 해도 자동화가 가능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경영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자회사 또는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

- 자동 언더라이팅, 인공지능에 의한 지급심사업무 등의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처럼 외부 위탁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보유 전문 수탁자 출현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
- 핀테크 시대 도래 및 업무효율화 추구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경직된 본질적 업무 위탁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재해석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업 인·허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의사결정 등 핵심적 사항을 제외하고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 보다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 위탁 업무라 해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최종책임은 보험회사가 지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kiri**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리콜사태에서 보듯이 리콜은 기업의 존폐 여부가 거론될 만큼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임. 더불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하고 있음. 리콜손실위험 증가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 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삼성전자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리콜손실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리콜(recall)사태가 발생하면서 리콜에 따른 손실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리콜비용이 최대 1조 9,4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됨.¹⁾
 - 동 수치는 250만 대를 진량 폐기처분할 경우에 드는 순비용임.
 - 수거물량을 재조립 후 할인 판매하거나 미개통 물량에 대해서는 수리 후 정상 판매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약 5,100억 원에서 8,7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됨.
- 폭스바겐은 연비와 배기가스 배출수치 조작으로 1,100만 대 리콜을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비용이 652억 달러(약 7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표 1〉 참조).

〈표 1〉 자동차 리콜 관련 손실액 사례

리콜 기업	리콜 사유	대수	리콜 비용
도요타	가속페달 결함 관련	1,200만 대	\$28억(3조 652억 원)
GM	동력조향장치 관련	2,600만 대	\$33억(3조 6,125억 원)
현대차 그룹	연비 과대표시 관련	120만 대	\$7억(7,663억 원)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수치 조작 관련	1,100만 대	\$652억(71조 3,744억 원)

주: 리콜 비용은 벌금, 소송비용, 규제포인트 삭감 환산금액 등을 포함함.
 자료: SK증권 분석보고서(2015. 10. 13), 「자동차: 폭스바겐의 무리수」.

1) IBK투자증권 Issue check(2016. 9. 5), 「삼성전자, 갤럭시7 배터리 게이트 리콜 영향 체크」.

■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리콜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리콜제도를 두고 있음.²⁾
 - 리콜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하거나(자진리콜), 행정기관 등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명령할 것을 규정함.
- 2015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1,586건으로 2014년(1,752건) 대비 166건(9.5%)이 감소함(<그림 1> 참조).
 - 이는 2014년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대규모 리콜명령으로³⁾ 대폭 증가했던 의약품 리콜이 예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일 뿐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유지함.
 - 근거 법률별로 살펴보면, 13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약사법」·「자동차관리법」의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83.7%에 달함.
 - 리콜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한 가운데, 자진리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3년 263건→2014년 339건→2015년 536건).
-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이 강력해 리콜이 활성화되어 있음.
 - 자동차 리콜은 지난 30년 동안 증가추세에 있으며,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차량대수 대비 리콜차량대수의 비율은 28~115%에 이를 정도로 높음(<그림 2> 참조).⁴⁾

■ 이러한 리콜손실위험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 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리콜 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이란 제품불량의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임.⁵⁾
 -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 보험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함.

2) 1991년 2월,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리콜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2년 9월에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리콜제도(「자동차관리법」), 1996년 12월에는 식품 리콜제도(「식품위생법」)가 각각 도입됨. 그리고 1996년 4월부터는 당시 「소비자보호법」에 모든 물품(소비재) 및 용역을 대상으로 리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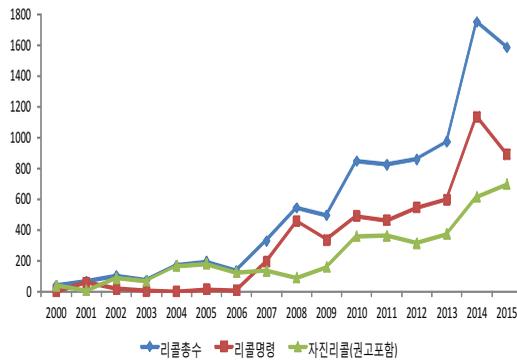
3) 5개 제조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여 한약재를 제조한 정황을 발견하고 전 품목(561건)을 리콜하도록 명령함.

4) <http://www.forbes.com/sites/jimgorzelay/2014/03/26/automakers-with-the-lowest-and-highest-recall-rates/# 571a69920085>.

5) 예를 들어, 리콜 사실을 알리는 광고비용 및 통신비용, 제품 수리 및 대체 비용, 수송비용,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회수에 사용된 창고비용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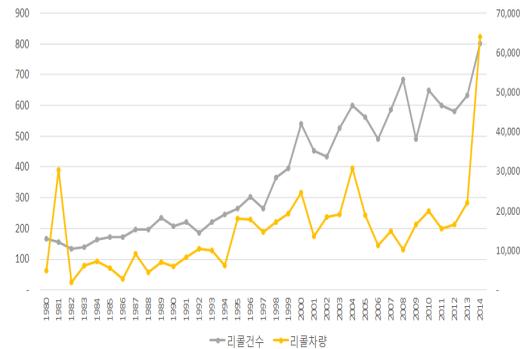
-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리콜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국내 기업이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리콜에 따른 손실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⁶⁾
 - 반면, 제조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그 필요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리콜건수 추이(2000~2015년)
(단위: 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림 2〉 미국 자동차 리콜실적(1980~2014년)
(단위: 건, 천대)



자료: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삼성전자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리콜손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kiri](#)

6)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소비자 및 언론의 부정적 인식(82.5%)과 소비자 불신에 따른 매출 감소(62.9%), 소비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58.8%) 등으로 인해 리콜에 소극적임; 최은실(2012), 『리콜제도 현황 및 의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의 행동적 해이 개념과 적용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건강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행태인 소위 행동적 해이(behavioral hazard) 현상이 주목 받고 있음. 행동적 해이는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를 과다이용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와 차별되지만, 둘 다 의료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유사성이 있음.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존 건강보험 정책은 본인부담액을 높여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집중해 왔음. 하지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의료소비자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다이용하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낮추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임.
 - 본인부담액 제도는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용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임.
- 그러나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건강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도록 하는 소위 “행동적 해이(behavioral hazard)¹⁾” 현상이 주목받고 있음.
 - 행동적 해이는 의료이용자의 잘못된 심리적 편향으로 인한 실수나 행동편향(behavioral bias)에서 비롯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들을 말함.
 - 과소이용의 대표적인 경우가 의약품 복용에서 나타나는데,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임에도 과소이용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 예컨대, 당(glucose) 수치를 낮추는 약은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지 않음.²⁾

1) Baicker et. al(2012), “Behavioral Hazard in Health Insurance”, *NBER working paper*, No. 18468.

2) Rubin(2005), “Adherence to Pharmacologic Therapy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118(5).

- 행동적 해이는 도덕적 해이와 마찬가지로 의료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 행동적 해이를 일으키는 원인인 심리적 편향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음.

- 관심(attention): 치료를 받는 것은 증상이 얼마나 두드러지냐에 달려 있는데, 보통 심각한 질병들은 두드러진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됨.
- 시점(timing):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초래될 미래의 고통보다 당장의 치료비용, 처방전을 받는 것, 또는 검진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느끼는 성향
- 기억(memory): 약 복용이나 처방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 믿음(belief): 다른 치료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무시하는 성향

■ 행동적 해이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의료이용자가 심리적 편향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과소이용하게 됨.

- 의료서비스 과소이용은 본인부담액이 높을 때 즉, 의료이용으로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액 비용이 의료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발생함.

■ 행동적 해이는 도덕적 해이와는 달리 본인부담액을 낮출 때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을 줄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져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할 것임.
- 행동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을 줄이면 필요한 의료를 과소이용하고 있던 의료소비자가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생을 높이게 됨.

■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존의 건강보험 정책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만 집중해 왔으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함.

-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과소이용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의료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각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치료효과와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가치가 큰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액을 낮춰 소비자의 과소이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반면, 가치가 낮은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액을 높여 불필요한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소비자의 수요가 가격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일수록 본인부담액을 낮추는 데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클 것임. **kiri**



비급여 관리 관련 논쟁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국정감사 실시로 국회의원들은 비급여 진료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비급여 정보 공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상기 논의를 종합해 보면, 첫째,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이 생성되거나 진료량이 확대되지 않도록 비급여 관리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둘째, 의원급을 비급여 관리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셋째,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서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실시간 공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정감사 실시와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현행 비급여 진료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표 1) 참조).

〈표 1〉 비급여 관리 관련 최근 논쟁의 주요 사항

구분	제안	핵심 사항
국정감사	김승희 의원	보장률 제고를 위해 비급여 확대 방지 대책 마련
	천정배 의원	비급여 관리 전담 기구 신설, 의원급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비급여 관리 계획 마련
법안발의	남인순 의원	의원급까지 비급여 정보 공개, 의료기관 자료제출 의무화
	전혜숙 의원	비급여 정보 실시간 공개,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주: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으로 구분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음.

■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풍선 효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함(2016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3%의 정체 상황인 바, 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임.

-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63.2%로 2008년 대비 0.4%p 상승한 데 반해,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 17.1%로 2008년 대비 1.6%p(보장률 상승폭 대비 4배) 상승함.
- 비급여 증가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 풍선 효과¹⁾를 지적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개선되었으나, 보장성 강화 대상이 아닌 질환의 경우 보장률이 감소함.

■ 천정배 의원은 현재 비급여 문제는 의원급에 집중되어 있고 비급여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2016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비중²⁾이 매우 높고, 특히 고령층의 진료이용이 많아 의료안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비급여 관리의 사각지대³⁾에 방치되어 있음.
- 신 의료기술 도입 등의 이유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로 비급여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박인숙 의원은 신 의료기술 증가 및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증가로 국민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3.4%에서 2014년 17.1%로 상승하였다고 언급함.
-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비급여 자료 수집 및 코드 표준화, 엄격한 심사를 통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제시함.
 - 김상희 의원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에서 의원급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남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조사·분석 및 공개 대상을 의원급까지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9. 2).

-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⁴⁾되어 있으나 이를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조사의 효율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임.

1)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일정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기관이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창출하거나 기존 비급여의 진료량을 확대하는 효과.

2) 의료기관 종별로 비급여 청구가 높은 상위 5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금 비급여 비중을 비교한 결과, 의원·병원이 87~100%로 종합·상급종합병원(28~8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김승희 의원, “A보험회사 2016년 상반기 실손보험금 청구자료”).

3) 의료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및 공개 대상에서 의원급은 제외됨.

4)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통해 점진적인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발표함.

- 이에 대해 의료업계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 상태, 진료 방식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강제화한다면 이는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시킬 우려가 있음을 표명함.⁵⁾
 -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⁶⁾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조사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피력함.

■ 전혜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 공개하고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7. 8).

-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시기를 연 1회(매년 4월 1일)로 정하고 있어 최신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점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이 생성되거나 진료량이 확대되지 않도록 비급여 관리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 둘째, 의원급을 비급여 관리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 셋째,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서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실시간 공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kiri](#)

5)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의원이 한차례 발의했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됨.

6) 발의된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불응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최창희 연구위원,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구매자(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신용보험은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이 최소한의 리스크로 신용(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함. 구매자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은 창·폐업률이 높고 업력이 짧은 경우가 많아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없이 기업의 신용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강화로 보험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제한되어 보험자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과 신용거래가 많은 기업에 신용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졌음. 정부당국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신용거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취급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험은 신용거래에서 채권자(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 또는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신용거래상 리스크를 줄여 신용거래 활성화에 기여함.

- 신용보험의 보험계약자¹⁾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채권자) 자신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자신을 위한 보험’임.
 -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경제주체들은 신용보험을 활용해 신용거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현재 일부 공공기관 및 공제조합이 각각의 특별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증보험(공제)·신용보험(공제)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에서는 서울보증보험만이 보증보험·신용보험을 취급하고 있음.²⁾
 - 서울보증보험은 2015년 기준 17개의 신용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신용보험 총가입금액은 2015년 기준 약 55억 원에 이룸.

1) 편의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고 가정하였음. 신용보험의 경우 대부분 계약자가 피보험자임.

2) 공공기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제사업자: 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 등.

-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은 2015년 기준 인수총액(보험가입매출채권) 16조 2,764억 원, 보험료 374억 원인 시장임.³⁾
- 현재 판매 중인 신용보험에는 매출채권 신용보험, 상업 신용보험, 임대관리임차료 신용보험, 개인금융 신용보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등이 있음.

■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없이 이들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기업신용정보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험자가 기업의 신용정보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은 창·폐업이 잦고 업력이 짧은 경우가 많아⁴⁾ 기업신용정보를 토대로 이들의 실제 신용도를 정확히 가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법 개정 이전에 보험자들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해왔음.

■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강화로 보험자의 개인정보 수집⁵⁾과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어려워졌음.

- 최근까지 보험자들은 구매자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왔으나,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로 보험자의 개인정보 취급이 어려워졌음.
 - 먼저, 보험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⁶⁾
 -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의 정보가 개인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최근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을 개인정보로 구분해 보험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들 정보를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⁷⁾
- 먼저, 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3) 매출채권보험은 정부가 사업의 결손을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사업으로 2004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사업을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음. 외상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채권이 부도날 경우 협력업체들까지 연쇄부도가 날 가능성이 큰데, 매출채권보험이 부도 채권의 최대 80%를 보상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

4) 2015년 현재 국내에서 93,768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음. 동 통계는 대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창·폐업 수가 많지 않아 이들 중 대다수가 중소·개인기업임;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http://stat2.smba.go.kr/index.jsp>) 참조.

5)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판매자)로부터 구매자의 개인 정보를 받는 행위.

6)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참조.

7) 정부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중소기업 대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개인 정보로 구분됨; 정부관계부처(201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p. 53 참조.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⁸⁾

-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함.⁹⁾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보험자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보험자들이 구매자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의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잃어, 이들과 신용거래가 많은 판매기업에 신용보험을 제공할 수 없게 됨.

- 보험자들은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개인기업)들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에 대한 신용보험 인수를 제한하고 있어, 판매자가 외상판매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신용거래가 위축될 여지가 있음.
 - 특히, 영세 개인기업(구매자)의 경우, 외상 매입기반 축소 및 현금거래 전환 등으로 인해 자금 경색을 겪을 수 있음.
- 서울보증보험은 가입률이 저조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보험 문제를 신용보험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짐.
 -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건설도급자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보험¹⁰⁾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도급자의 보증보험 가입률이 낮음.¹¹⁾
 - 이 경우 하도급자가 신용보험에 가입해 공사대금 미지급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법 개정으로 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면책조항이 사라져 하도급자가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짐.

■ 신용정보법 강화로 한국의 신용거래 환경이 악화된 반면, 미국은 원활한 신용거래 환경 조성 및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다음 주체들은 타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¹²⁾
 - 개인이 채무자로서 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채권자, 개인과 이미 신용거래를 한 채권자,

8)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까지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제공·조회 동의가 이루어졌음. 2009년 신용정보법 전면개정 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가 추가되었고, 2015년 개정에 따라 제공 시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음.

9)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10)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대납하는 보험임.

11) 2015년 현재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의 지급보증서 교부율이 각각 71.9%와 42.9%임;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6), 『2015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참조.

12) 미연방준비은행(<https://www.federalreserve.gov/creditreports/>) 참조.

-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회사·핸드폰회사·전기회사·수도회사 등, 개인이 동의한 경우의 (잠재)고용주, 정부기관, 은행·부동산 임대인 등 개인과 합법적 거래를 하는 주체
- 미국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³⁾
 -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계좌 개설 심사를 하는 경우, 채용 목적 신용 조회, 신용정보주체가 관련된 보험의 인수 심사, 법에 따른 면허 또는 정부 보조 심사, 잠재적 투자자·서비스 제공자·현 보험자 등이 신용정보주체의 채무 지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와 사업관계에 있거나 신용정보 주체가 계약 이행이 가능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정부당국은 신용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신용보험에 가입해 신용거래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당국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또는 타 법률¹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보험자가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신용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자가 신용보험 제공을 위해 개인·중소 구매기업 대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허용
 - 보험자가 신용보험의 인수 및 유지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자가 구매자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 **kiqi**

13)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b 참조.

14) 「보험업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타 법에서 정해진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과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신용정보법 제32조).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확대와 그 배경¹⁾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대만 생명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증하였음. 이들의 해외투자 확대는 기본적으로 자국 내 저금리 환경에 대응한 전략이지만, 시장 및 규제 환경도 해외투자에 우호적이었기에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최근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저금리 환경에의 대응을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변동성이 높아 환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환경임. 국내 보험회사는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해외투자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금융당국도 보험회사의 자율적 환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만 생명보험회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함.

-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해외투자 비중이 2000년에 4.6%였으나, 2005년 30.5%, 2016년 7월 60.7%까지 급증함.²⁾

■ 이러한 해외투자 확대는 기본적으로 자국 내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

- 대만 생명보험회사들은 1980~1990년대에 금리확정형 저축성 상품 판매를 촉진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대만의 저금리 정책으로 금리역마진에 처함.
 - 2000년 12월 4.625%였던 대만의 정책금리는 2003년 6월 1.375%까지 인하됨.

1) 본고의 전반부는 보험연구원과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주최한 제9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2016. 10. 19)에서 린 볼송(Lin Bole Song) 푸본생명보험 투자부문 상무가 발표한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하여 정리하였음. 필자는 일부 사실을 추가·보완 및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을 밝힘.

2) 대만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Indicators of Insurance* 참조.

■ 이 외에도 해외투자 급증 배경으로 다음의 네 가지 규제 및 시장 환경 요인을 들 수 있음.

- 첫째, 대만은 국내 채권시장 규모가 작아서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필요성이 높음.
 - GDP 대비 채권시장 규모는 대만이 61%인 반면, 일본, 미국 및 한국은 각각 265%, 193%, 104%임.
- 둘째, 대만 금융당국의 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 조치가 있었음.
 - 대만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는 2003년에 20%에서 35%로, 다시 2007년에 45%까지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대만 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International 및 Formosa Bond)에 대해 한도 적용의 예외로 함.
- 셋째, 대만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재무상태표에 외환충당금 계정(FX volatility reserve)을 허용하여 외환 오픈포지션에 의한 손익변동을 완화시켜 줌.
 - 환차손익의 일부를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처리하여 전체 손익의 변동성을 완화시킴.
 - 외환충당금 계정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헤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넷째, 대만은 변동관리 환율제로 환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대만 생명보험회사는 해외투자 비중 확대와 더불어 자율적인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로 양호한 투자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 대만 생명보험회사들은 헤지 만기와 헤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해외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 푸본생명의 경우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최적의 헤지 전략을 수립하며, 헤지 비율을 70~80% 수준에서 조정하고, 헤지 만기는 주로 1년 미만으로 함으로써 헤지 비용을 낮춤.
- 푸본생명은 달러표시, 장기, 우량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함으로써 안정적 해외투자를 실행함.
- 대형 3사의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약 4.2%에 이름.³⁾
 - 동 기간 대만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0.75~1.80%였음.

■ 해외투자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손실 발생시키기도 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만 생명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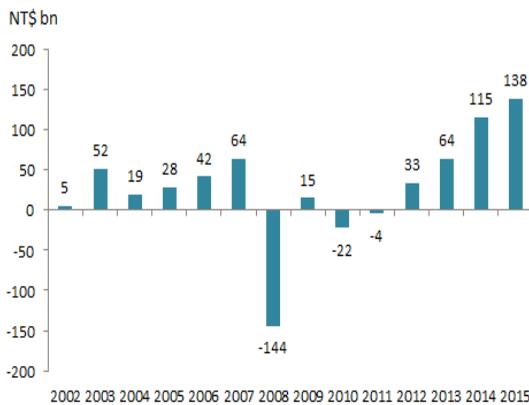
-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440억 대만달러(약 -5조 2

3) 케세이, 푸본, 신공 생명보험회사의 평균수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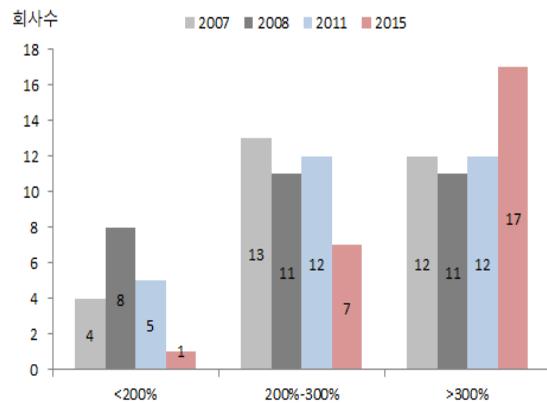
천억 원)의 세전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오히려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됨.

- 2008년 당시 대만통화의 가치 상승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상품의 대규모 투자손실 발생⁴⁾
- 2008년 RBC비율이 200% 미만⁵⁾인 생명보험회사가 8개로 늘었으나, 2015년에는 1개로 감소함.
- 단, 최근 대만 생명보험회사들이 선진국 국공채 이외에 회사채나 신흥국 국채 등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존재함.⁶⁾

〈그림 1〉 대만 생명보험산업 세전 순이익



〈그림 2〉 대만 생명보험회사 RBC비율 분포



자료: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China, *Financial Stability Report*.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국내 저금리 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근 해외투자 비중을 급증시키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해외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2016년 3월 기준으로 운용자산 중 외화유가증권의 비중이 생명보험회사는 9.0%, 손해보험회사는 10.7%에 이룸.
 - 대출채권 및 부동산 형태의 해외투자도 있으므로 실제 해외투자 비중은 이보다 높음.

■ 우리나라는 환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투자 확대 시 더욱 높은 수준의 환리스크 관리 역량이 필요함.

- 대만 보험회사들과 같이 환율 전망을 바탕으로 헤지 비율과 헤지 만기를 조절함으로써 수익률 제

4)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China(2008, 12), *Financial Stability Report*.

5) RBC비율 200%는 최소 요건임.

6) Timetric(2016, 1, 21), "Fitch: Rising interest rates to ease Taiwanese life insurers' negative spreads".

고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진국 국공채 및 우량채 중심으로 해외투자함으로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환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융당국도 보험회사의 자율적 환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금리리스크 산정 시 만기 1년 이상의 헤지 수단으로 헤지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래의 듀레이션(달러기준 듀레이션)을 인정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가 채권에 대해 1년 만기 이상의 헤지 수단을 이용하여 거의 100% 헤지하는 것은 이 규제의 영향이 큼.
 - 최근 1년 만기 이상의 스왑 레이트(swap rate)가 음(-)으로 전환하여 만기 1년 이상의 선물환으로 환헤지할 때 비용이 발생함.
 - 대만 보험회사들은 헤지 만기를 주로 1년 미만으로 하여 헤지 비용을 최소화함. [kiri](#)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도입과 과제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금융위원회는 2016년부터 판매되어 온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에 대해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함. 이는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의 불안전 판매 가능성 때문임. 그러나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로 소비자가 기존의 원금 보장 변액연금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와 병행하여 기존 원금 보장 변액연금상품의 개선도 필요할 것임. 보험회사는 원금 보장 수수료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모집수수료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원금 보장 변액연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10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가능한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에 대해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함.¹⁾

- 적합성 보고서는 금융회사가 상품 구매권유 시, 구매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며, 동 보고서는 금융상품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교부해야 함.
- 적합성 보고서 작성 대상은 주식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상품과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이고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은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상품이 위험도가 높은 투자상품으로 인식됨을 의미함.

■ 과거 변액연금상품은 투자성고가 좋지 않더라도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원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옵션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상품도 판매됨.

- 과거 변액연금상품은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0. 12),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하여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여 불안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겠습니다.”.

을 필수적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보험료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GMAB 수수료가 과도하여 변액연금 수익률도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원금 보장 변액연금과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번 판매규제 강화는 이에 대응한 것임.

- 일부 변액연금 소비자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GMAB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을 선택할 수 있음.
- 그러나 변액연금 판매과정에서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의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이 가능함.
- 따라서 이번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가질 수 있음.

■ 그러나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로 소비자가 기존 원금 보장 변액연금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폭 확대와 병행하여 원금 보장 변액연금상품의 개선도 필요할 것임.

- 판매규율 강화로 판매채널은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상품 판매에 소극적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기존의 원금 보장 변액연금을 선호할 수 있음.
- 소비자 선택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 변액연금이 주로 판매될 경우 또다시 GMAB 수수료의 적정성 논란과 낮은 변액연금 수익률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비자 선택폭 확대와 병행하여 기존 원금 보장 변액연금상품의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보험회사는 GMAB 수수료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모집수수료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원금 보장 변액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GMAB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수수료 수준을 평가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임.

-
- GMAB 수수료의 적정성 논란이 궁극적으로 변액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집수수료 후취형 변액연금상품 등 수수료 구조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상품이 투자형 상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타 업권의 투자형 상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타 업권과 유사한 수수료 구조 적용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kiri](#)



중국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평가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최근 중국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한 신 수익모델 창출이 독자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이는 중국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을 포용하고 다양한 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결과로서, 그 배경에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와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규제 개혁이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도 보험회사의 적극적 건강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미국 등 선진국이 글로벌 헬스케어서비스¹⁾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 보험회사들의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중국 중안보험(众安保险²⁾)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상태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탕샤오베이(糖小贝)’를 출시하는 한편, 타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영역의 확대를 추진함.
 - 중국 인터넷기업인 텐센트(Tencent)와 협업하여 개발한 ‘탕샤오베이’는 가입자에게 혈당측정 단말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송되는 혈당데이터를 분석하여 혈당치 호전 여부에 따라 갱신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식임.
 - 가입자의 질병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가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음.
 - 중안보험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고 인터넷기업,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³⁾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1) 개인의 질병·상해·심신 상실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함.

2) 평안보험(平安保險)의 자회사로 인터넷 전문 보험회사임. 주요 주주는 평안보험, 알리바바(인터넷 판매사), 텐센트(포털업체), 슈칭(여행사이트) 등으로 이들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함. 2015년 ‘세계 핀테크 톱100’에서 핀테크 강국인 미국, 영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함(KPMG).

3) 단순한 핀테크 영역을 넘어 의료기기, 빅데이터,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산업을 연결하여 통합·확산된 비즈니스 개념의 의

■ 중국 알리안츠는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KAISHI’를 통해 건강보험시장에 진출함 (<표 1> 참고).

- ‘KAISHI’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협업하여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태아 건강·발달 모니터링, 실시간 의료상담서비스, 임신부 영양·활동 관리 등 임신부와 태아 건강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알리안츠는 ‘KAISHI’가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 기반 확보에 노력함.

<표 1> 중국 알리안츠의 ‘KAISHI’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사례

서비스 내용	핵심 요구역량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기반 역량 확보 내용
디지털 디바이스 기반 태아 건강·발달 모니터링	디지털 디바이스 기반 태아 상태 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 심장박동 기기업체 인수 ● 블루투스 등 글로벌 전자업체와 기술 제휴 추진
	수집된 정보 기반 건강 발달·정보 분석 (데이터 검색·분석 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태아 전문 헬스케어업체 제휴, 태아 건강·발달 정보 분석 알고리즘 확보
실시간 의료상담	전문 의료지식 및 의료 네트워크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산부인과 제휴, 진료기록관리·원격의료자문 서비스 개발
임산부 영양·활동 모니터링 및 개선 플랜	고객섭생활동(영양, 운동) 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사진 기반 영양소 분석 기술 제휴 확보 ● 보행 수 로그 트래킹 기술 제휴 확보
	맞춤형 식단·영양제·운동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케어 업체 제휴, 영양·활동 정보에 근거한 식단·활동 플랜 제공
	연계용품 증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및 소매업 연계 상품·서비스 판매 증개

자료: BCG(2016년), 『서경금융전략포럼』, 발표자료 재구성.

■ 최근 중국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을 통한 신 수익모델 창출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혁신과 협업의 결과로, 그 배경에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와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규제 개혁이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신생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기업⁴⁾도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의료부문의 자원 부족과 낮은 접근성⁵⁾에 대한 대안으로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을 적

료·헬스 O2O(Online to Offline) 개념임.

4) 텐센트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예약 플랫폼 중 하나인 Gauhao.com에 투자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의사 검색 및 진료 플랫폼인 Haodaifu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출시함. 바이두(Baidu)는 데이터 수집을 주 목적으로 체중계, 혈압 모니터, 손목 밴드 등 제3자 웨어러블 기기와의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인 Dulife를 출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의사가 결과를 판독하여 조언을 제공하게 됨.
5) 중국 최상급 공립병원인 전체 병원 중 7%에 불과하지만, 총 병상 수의 36%, 외래 환자의 45%, 입원환자의 39%를 차지하

극적으로 장려해 왔으며, 이를 위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우호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옴.

- 의료업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 지원, 국가 디지털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수립, 원격의료 가이드라인 도입 및 원격진단·처방 시범 운영, 온라인 약국 등록 용이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장벽 제거 등 실시
- 중국은 민간자본이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 방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⁶⁾하고 있어, 자본력을 갖춘 대형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사업에 진출

〈그림 1〉 중국 헬스케어서비스의 신사업 모델과 보험회사 진출 현황



자료: BCG(2015), “China’s Digital Health-Care Revolution” 재구성.

■ 우리나라도 고령사회 진입⁷⁾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적극적 건강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국내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업환경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가 차원에서 헬스케어 인프라에 대한 육성 정책의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관련 규제⁸⁾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가 요구됨.
 - 현행 민간사업자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료행위⁹⁾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유사 의료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함. [kiri](#)

는 등 대형 공립병원이 의료자원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짐.

6) 중국 국무원은 2014년 8월 의료 공급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회사 등 민간자본이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 방식을 통해 의료기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소양(2016), 「중국 건강보험시장의 최근 동향과 전망」, 『KiRi Weekly』, 제371호.
 7)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8)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헬스케어산업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뒤떨어지는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9)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의하면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사·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정의됨.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 제고 필요

송윤아 연구위원,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규모는 2015년 기준 367만 대로, 신차 거래량의 2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지만,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만연함.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판매자가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허위 고지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을 보증하도록 함. 그러나 판매자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구매자가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에 오류·허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에 대한 구속력과 접근성이 미흡함. 이에 보험제도를 통해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규모는 2015년 기준 367만 대로, 신차 거래량의 2배에 달하는 큰 시장임.

- 중고차 평균 판매가격을 8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¹⁾ 금액기준 시장규모는 약 29조 원으로, 중고차시장은 소매유통시장(2015년 기준 약 300조 원)의 10%를 차지하는 시장임(〈그림 1〉 참조).
 - 다만, 상기 중고차 거래대수는 이전거래(당사자 매매와 업체 매매)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다소 과대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²⁾

■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 판매자 또는 매매 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음(〈그림 2〉 참조).
 - 다음으로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의 순이었고, 기타 명의

1) 공식적인 가격은 없지만 중고차시장에서는 대략 800~900만 원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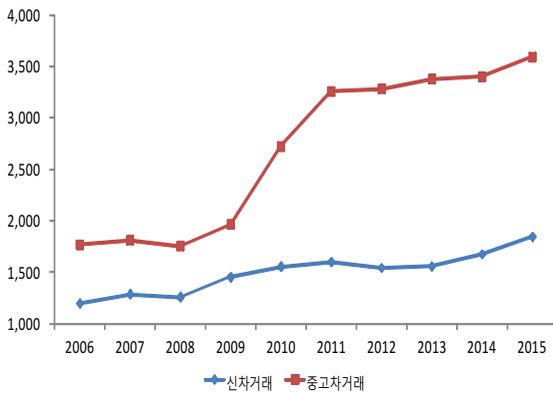
2) 중고차 매매의 경우 중간에 매매업체가 명의이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고차 한 대의 거래에 2개 이상의 판매대수가 포함될 수 있음.

이전 지연,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 협박 등이 있음.

-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로 가장 많았음.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불일치한다는 민원이 80건(23.5%),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한 경우가 44건(12.9%),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가 35건(10.3%)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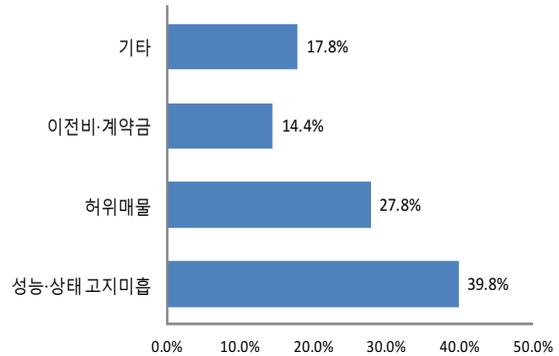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신차 및 중고차 거래량 추이

(단위: 천 대)



주: 중고차 매매는 당사자 매매와 업자 매매를 포함함.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 중고차 민원 현황(2014. 1~2015. 10)



주: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가권익위원회.

■ **현행법에서는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판매자가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허위 고지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을 보증하도록 함.**

- 판매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³⁾
 - 판매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0만 원(법인이 아닌 경우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함.
 - 이 경우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한 때에는 판매자는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 판매자는 매매알선이 완성된 경우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및 공탁기관, 보장기간 등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 및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함.

3)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
- 또한 판매자는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을 보증하여야 함.⁴⁾

■ 그러나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책임의 경우 중고차 구매자가 차량의 성능·상태점검에 오류·허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판매자가 보증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간 또는 주행거리 2,000km를 채울 때까지는 자동차 성능을 보증해야 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간 충돌이 빈번함.
 - 중고차 매매업체가 개인 판매자 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거나⁵⁾,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보험제도를 통해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증책임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판매자가 수리비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수리비보상보험은 자동차 인도 후 주행거리가 2,000km를 초과하지 않거나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고장에 대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함.
- 다만, 판매자의 수리비보상보험 가입의무화는 구매자를 보호함으로써 중고차시장을 보다 활성화하는 반면, 판매자의 보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차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동 제도 도입 시 ‘보증책임 이행 및 거래의 안전성 제고’와 ‘차량가격 인상’ 간 상충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5) 10월 28일 함진규 의원은 중고차의 성능·상태 관련 분쟁 발생 시 판매자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등 보증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의 배상주체를 성능·상태점검자로 규정하는 법안(「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인공지능의 보험판매채널 진출 의미

김석영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이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기존 온라인 판매채널이 가진 단방향 소통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설계사채널과 유사한 수준의 판매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 인공지능 판매채널의 등장은 보험회사 시장점유율 변동, 상품서비스 경쟁 본격화, 불완전판매 감소, 상품가격 하락 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보험산업 진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이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라이나 생명은 카카오톡을 통해 AI로부터 보험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챗봇(채팅로봇)서비스를 시작함.
 -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과 가입상품 안내 등을 챗봇이 수행함.
- 인공지능은 이미 튜링테스트(Turing Test)를 통과하면서¹⁾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보험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튜링테스트란 기계(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 판별하는 실험으로, 1950년 영국의 앨런 튜링이 제안하였으며²⁾ 인간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임.
 - 2016년 11월 17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엑소브레인(Exobrain)도 EBS 장학퀴즈에 출현하여 600점 만점에 510점을 받아 우승하였음.
 - 엑소브레인은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기 위해 도서 12만 권 분량의 백과사전, 어학사전, 일반상식을 저장하고 있으나, 보험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정보만으로도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것임.

1) 2014년 러시아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유진 구스트만(Eugene Goostman)이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튜링테스트를 통과함.

2) 출처: 두산백과.

■ 인공지능이 앱의 형태로 개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되어 고객에게 보험상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곧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 앱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광고모델이나 캐릭터가 고객에게 설명할 경우, 실제 설계사와 화상통화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임.
 - 앱에서 24시간 항상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객의 질문에 친절히 답변할 것임.

■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기존의 온라인 판매채널이 가진 단방향 소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설계사채널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 판매채널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저렴한 판매비용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소비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기대보다 성장하지 못하였음.
 - 고객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은 설계사에게 물어본 후 설계사에게 상품을 구매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채널(C/M)의 판매비용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공지능 판매채널이 설계사처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대면모집채널과 유사한 수준의 판매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표 1〉 모집방법별(초회) 비중

(단위: %)

구분	대면모집	T/M	홈쇼핑	C/M
FY2008	96.42	3.52	0.63	0.06
FY2009	97.34	2.61	0.45	0.05
FY2010	98.01	1.94	0.20	0.05
FY2011	98.19	1.79	0.16	0.02
FY2012	99.26	0.73	0.05	0.01
FY2013	98.34	1.65	0.16	0.01
FY2014	98.92	1.04	0.14	0.04
FY2015	98.89	1.05	0.13	0.06

■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전속설계사 수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보험산업의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대형사들은 대규모 전속설계사 조직 운영을 통해서 시장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며, 중소형사들은 쉽게 전속설계사 조직을 양성하지 못하였음.
 - 전속설계사 조직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독립대리점(GA)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중소형사들도 인공지능 판매채널을 보유하게 되면, 대형사 중심의 상품판매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는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경쟁하게 되고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임.
- 한편,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설계사 수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완전판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설계사 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향후 발생할 설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³⁾
 - 전속설계사 수는 2012년 말 기준 생명보험 11만 6,457명, 손해보험 9만 5,017명이었으나, 2015년 말 기준 생명보험 10만 2,148명, 손해보험 8만 1,148명으로 감소하였음.⁴⁾
 - 인공지능에 상품판매와 관련된 기본적 설명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일정한 설명과 고객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 구매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설정함.
-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지비용은 기존의 설계사채널에 비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설계사 판매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보험료는 감소하게 될 것임.
 - 사업비 축소는 초기 해약환급금의 환급률을 높여서 해약환급금 관련 소비자 민원을 감소시킬 것임.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보험산업 진출로 보험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는 인공지능 판매채널과 기존 판매채널의 믹스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상품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금융당국은 인공지능 판매채널의 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모집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 그리고 해킹 또는 인공지능의 오작동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3) 설계사 부족문제를 인공지능 판매채널이 해결하는 것은 독일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스트리 4.0을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임.

4) 김석영(2016. 7. 18), 「전속설계사 채널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KiRi Weekly』, 제393호, 보험연구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 방안과 고려사항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김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기간 연장, 현재 200만 원인 비과세 혜택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 그리고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ISA 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고소득층 및 자산가의 ISA 가입 유인을 강화하여 이들 계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ISA 도입 목적이 전 국민의 재산증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가입대상 확대의 초점을 중산층으로 전환하여 동 계층에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확대를 위해 60세 이상은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¹⁾

- 개정안은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²⁾되어 있는 ISA의 가입요건에 이러한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ISA 가입을 허용하였음.
- 또한, 개정안은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가입기간을 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과세 혜택한도 역시 현재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김종석 의원 등 13인 발의(2016. 12.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04089호.

2) ISA의 도입취지가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증여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자를 한정함. 또한 ISA가 부유층의 제테크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역시 ISA 가입을 제한함.

〈표 1〉 ISA 관련 조특법 기존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기존	개정안
가입 자격	소득 기준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단, 60세 이상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가입가능)
	자산 기준	- 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 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가입기간		- 5년	- 기본 5년, 조건에 따라 연장가능
비과세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주: 가입자격은 소득 및 자산 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함.

■ ISA 대상자 및 세제혜택 확대 추진의 배경은 ISA의 신규가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6년 3월 120만 명이던 ISA 신규 가입자 수는 9월 현재 5,886명으로 급감하였고 신규가입액 역시 같은 기간 동안 6,605억 원에서 1,691억 원으로 급감하였음.³⁾
 - 반면, ISA 도입 1개월 차에 약 5,000계좌에 불과했던 해지 계좌 수는 점차 증가하여 5개월 차에는 3만 6,000계좌로 급증하였음.⁴⁾

■ ISA 확대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효과는 대상자 증가와 세제혜택 강화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입기간 확대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세제혜택 강화는 고소득층 및 자산가 계층에 추가적인 가입 및 납입유인이 주어지는 효과가 있음.
 - 현재 ISA의 수익률⁵⁾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을 통해 연간 1,000만 원 이상씩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짐.
 - 이는 ISA 평균 가입액 117만 원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⁶⁾
- 60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고령층 중 자산가를 중심으로 ISA 가입이 확대될 것임.
 - 60대 이상 연령 계층은 자산 및 소득 수준의 그룹 내 이질성이 크므로 고령층 내에서도 제도변화의 효과가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

3)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4) 김종석 의원실 발표자료(2016. 12. 2).

5) 2016년 10월 31일 현재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 공개된 193개 “대표 일임형 ISA” 수익률의 단순평균은 1.52%임.

6)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 우리나라 고령층은 자산가 계층과 빈곤층이 혼재되어 빈부격차가 심한 집단임.

- 60세 이상 가구주의 전체 자산에 대한 점유율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음.
 - 반면, 평균소득은 전체 연령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노인빈곤율이 49.6%로 집계하고 있는 OECD 통계와 상통하는 결과임.⁷⁾
- 따라서 고령층 내에서 빈부격차가 매우 크며, 자산이 많은 고령층은 ISA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빈곤층 고령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음.

〈표 2〉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자산

(단위: 만 원, %)

구분	소득		자산	
	평균소득	점유율	평균자산	점유율
30세 미만	3,407	1.7	7,492	6.0
30~39세	5,079	17.7	18,684	11.1
40~49세	5,674	30.7	26,072	24.0
50~59세	5,964	31.9	34,363	31.2
60세 이상	2,884	18.0	31,257	33.1
전체	4,767	100	28,065	100

자료: 통계청(2015), 가계금융 복지조사 재구성.

■ 현재 연령별 ISA 가입자 수 및 가입액을 살펴봐도 60세 이상 가입자 수는 많지 않으나 금액 점유율 및 인당 가입액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서 언급한 자산이 많은 고령자가 ISA 등의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할 수 있음.
 - 전체 ISA 가입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8%에 불과하지만 가입액 비율은 18%로 가입자 수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인당 가입액은 278만 원으로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60세 이상자로 가입자격 확대 시 지금까지 소득이 없어 ISA에 가입하지 못했던 고령층 자산가의 ISA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7) OECD(2016), Statistics, <http://stats.oecd.org/>.

〈표 3〉 연령별 ISA 가입자 수 및 가입액

연령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총계
가입자	인수(명)	5,884	298,787	590,613	634,485	448,812	163,336	1,994,917
	비율	0%	14%	28%	30%	21%	8%	100%
가입액	금액(억 원)	33	2,270	3,897	6,800	7,578	4,552	25,130
	비율	0%	9%	16%	27%	30%	18%	100%
인당 가입액(만 원)		56.1	76.0	66.0	107.2	168.8	278.7	117.3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http://isa.kofia.or.kr/), 신탁형 ISA 9월 말 기준 통계.

■ ISA 도입 목적이 국민의 재산증식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는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⁸⁾에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취지와 세제혜택을 통한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 형성과정에 있는 중산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중산층에 대한 금융투자 및 저축유도 방법으로는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이 ISA에 가입하여 장기간 금융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ki ri

8) 정원석·강성호(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pp. 113~142.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재보험 활용방안

김석영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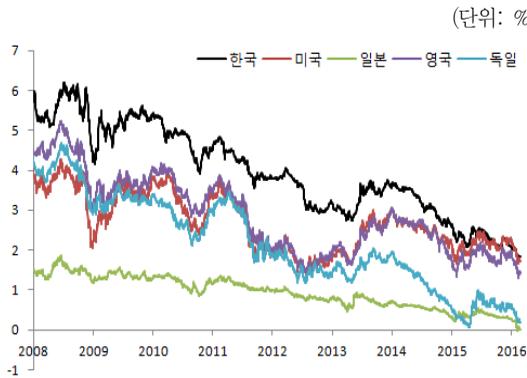
향후 보험회사는 자본 감소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사업을 위한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 현재 재보험을 위험전가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보험 활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과 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변화에 보험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IFRS17 제도 도입 시¹⁾ 보험회사(특히, 생명보험)의 재무회계 자본 및 가용자본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저금리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음.
- 금리 하락 시 국내 보험회사(특히, 생명보험)는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장기 상품과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부채 증가로 인해 이차역마진이 확대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미래 예상 손실이 재무회계 자본 및 가용자본 감소로 이어짐.

1) 향후 보험산업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제도(IFRS17, 2021년 시행 예정) 및 지급여력제도(신지급여력제도, 시행시기 미정)를 도입할 것으로 보임.

〈그림 1〉 주요국의 국제 금리(만기 10년)



자료: 연합인포맥스.

〈표 1〉 생명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성 현황

구분	금액	비중
금리연동형	2,956,553	60.9
최저보증이율 적용대상	692,720	14.3
금리확정형 특약 등	254,141	5.2
금리확정형	1,899,659	39.1
합계	4,856,213	100.0

주: 2016년 3월 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 향후 보험회사의 자본 감소는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사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

-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지급여력 비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신사업분야에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는 재보험 활용을 통하여 요구자본 또는 가용자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미래이익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할 수도 있음.

■ 재보험은 전통적인 위험전가와 더불어 요구자본, 가용자본, 자본 비용의 변화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음.

- 전통적인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여 원수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산시킴.
- 또한, 재보험은 다양한 재보험 출재방식과 재보험 현금흐름의 조합을 통하여 원수보험회사의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위험자본 감소 등의 형태로 재무상태를 개선시켜 줌.
 - 예를 들어, 공동재보험을 통하여 준비금을 이전함으로써 부채를 감소시키고 이차역마진 부담을 축소할 수 있음.
- 재보험회사는 미래에 발생할 이익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형식으로 원수보험사에게 계약 첫해에 초기이익수수료로 현금을 제공할 수도 있음.

- 초기이익수수료는 현행 재무회계(IFRS4 1단계)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부채로 인식되며, 현행 RBC 제도에서도 가용자본 산출 시 재무회계 자본을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용자본으로는 인정되지 못함.
- 향후 IFRS17 도입 시 미래 발생할 이익의 현가는 계약자서비스마진(CSM)으로 부채이기 때문에 재보험에 의한 초기이익수수료는 부채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됨.
- 재보험거래는 회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거래와 달리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
 - 자본시장을 통한 거래(유상증자, 채권발행 등)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함.

■ 해외에서는 위험전가와 손실가능성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의 다양한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금융재보험을 별도로 규정하기도 함.

-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나 상당한 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며 위험전가가 없을 경우 재보험으로 인한 예치금으로 회계 처리함.
- 금융재보험이란 일반적으로 위험전가와 함께 재무적인 목적을 위한 재보험을 말하며 일본은 금융재보험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재보험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수수료 지급, 재보험 계약기간, 청산절차, 합병 절차 등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재보험은 금융재보험으로 분류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보험을 위험전가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보험 활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재보험거래가 주로 위험보험료 출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보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재보험거래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
 - 금융당국은 재보험 원칙에 입각한 위험전가는 허용한다는 방침임.
- 보험위험과 다른 위험이 함께 출재되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경우 금리리스크가 변하게 되지만 현행 RBC 제도에서는 금리리스크 변화가 재무건전성 비율에 반영되지 않음.
 - 재보험으로 보험리스크가 이전될 경우 RBC 비율에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리리스크 산출 시에는 재보험에 의한 금리리스크 감소를 반영하는 규정이 없음.
 - 새로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재보험으로 인한 금리리스크 전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

■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과 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변화에 보험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재보험을 통한 위험이전이 지급여력비율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사업비용 조달 등을 위하여 다양한 재보험 기법 활용이 필요함.
 -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험업계의 재보험 활용에 대한 감독 불확실성의 해소가 필요함.
- 보험회사는 다양한 재보험 기법을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재무건전성 개선 및 신규 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재보험 활용이 필요함. **ki**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모음집 2016

발행일 | 2017년 2월

발행인 | 한 기 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